



Hong Kong

# 해외세정전문가 양성교육 연구보고서

2017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Hong Kong

# 해외세정전문가 양성교육 연구보고서

2017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본 안내서는 홍콩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홍콩세법 등을 2017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참고자료일 뿐,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적용 시에는 반드시 홍콩세법 및 조세 조약의 관련조문 등을 확인하시고,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세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I. 홍콩 최신 세무 동향 ..... 1
  - 1. 한국 - 홍콩 조세조약의 발효 ..... 2
  - 2. 한국 - 홍콩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 4
  - 3. 홍콩 최신 세무 동향 ..... 5
  
- II.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 9
  - 1. 외국인의 홍콩투자 ..... 10
  - 2. CEPA협정의 이해와 활용방안 ..... 16
  - 3. 진출 형태별 설립절차 ..... 27
  - 4. 홍콩 지주회사 설립과 조세전략 ..... 53
  - 5. 홍콩의 금융제도 ..... 55
  - 6. 홍콩의 관세제도 ..... 60
  - 7. 기타 사업관련 정보 ..... 66
  
- III. 홍콩의 조세제도 ..... 73
  - 1. 조세체계 ..... 74
  - 2. 사업소득세 ..... 77
  - 3. 급여소득세 ..... 89
  - 4. 재산세 ..... 98
  - 5. 홍콩의 세무조사제도 ..... 105
  - 6. 홍콩의 조세범 처벌 규정 ..... 110
  - 7. 홍콩의 조세회피방지규정 ..... 113



IV. 홍콩의 국제조세 .....	117
1. 이전가격 관련규정 .....	118
2. 홍콩 이전가격세제 심층연구 .....	119
3. 홍콩 이전가격세제 대응책 .....	133
4.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	134
5. 한국-홍콩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	160
V. 홍콩 개황 .....	175
1. 홍콩 개황 .....	176
2. 중국과 홍콩, 한국과의 관계 .....	191
3. 홍콩의 정치 현황 .....	194
VI. 부록 .....	197
1. 홍콩 주요 웹사이트, 참고문헌(웹사이트) .....	198
참고문헌(웹사이트) .....	201

# 홍콩 최신 세무 동향

# I

1. 한국 - 홍콩 조세조약의 발효 / 2
2. 한국 - 홍콩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 4
3. 홍콩 최신 세무 동향 / 5





# 1 - 한국 - 홍콩 조세조약의 발효

## □ 홍콩의 조세조약 체결 역사

- 홍콩은 2003년 벨기에와 처음으로 조세조약을 체결한 이래 2017년 10월말 현재 파키스탄, 벨로루시 등 38개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3개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음

조세조약 체결국가	협상 진행국가
벨기에, 태국, 중국, 룩셈브루크, 베트남, 브루나이,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헝가리, 쿠웨이트, 오스트리아, 영국,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체코, 스위스, 말타, 저지,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이탈리아, 대한민국, 아랍에미레이트, 사우스아프리카, 카타르, 건지, 루마니아, 라트비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벨로루시	인도, 바레인, 방글라데시, 핀란드, 마카오, 사이프러스, 터키 등

- 2010년 국세청법 개정안 3호가 통과되어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국제표준안을 받아들임

## □ 한-홍콩의 조세조약 추진경과





○ 발효(조세조약 제27조, 2016.9.27.)

가.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칩 번째 역년의 4월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나. 한국의 경우

-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4월1일 또는 그 후에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 2)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 한국-홍콩의 조세조약 발효에 따른 영향 요약

- 對홍콩 투자 납세자의 이중과세 해소에 따른 세부담 감소
-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 판정을 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 문제 해소
- 정보교환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사실 적발 가능
- 홍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외환거래 미신고한 경우 국가간 정보교환에  
따라 적발 가능

## 2 - 한국 - 홍콩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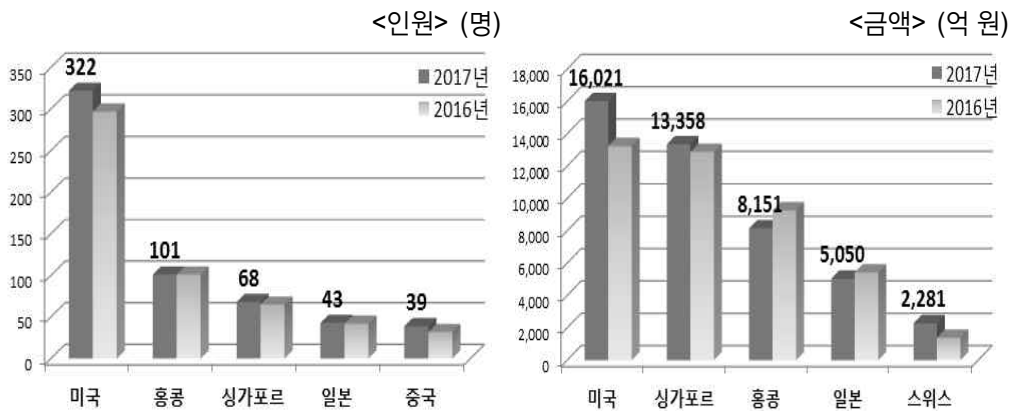
### □ '17년 1월 23일 홍콩 국세청에서 「한국 - 홍콩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함

\* 홍콩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CRS)이 아닌 양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체결을 통해 금융정보자동교환 추진중

-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등과 관련된 주요 금융정보를 2019년부터 매년 교환
-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조세조약을 보완하는 효과
- 교환대상 : 식별정보(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등), 계좌정보(계좌번호, 금융기관명 등) 및 금융정보(계좌잔액, 이자·배당 소득유형 등) 등

\* 201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홍콩은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2위, 금액 기준으로 3위

#### <참고\_해외금융계좌 신고 개인의 국가별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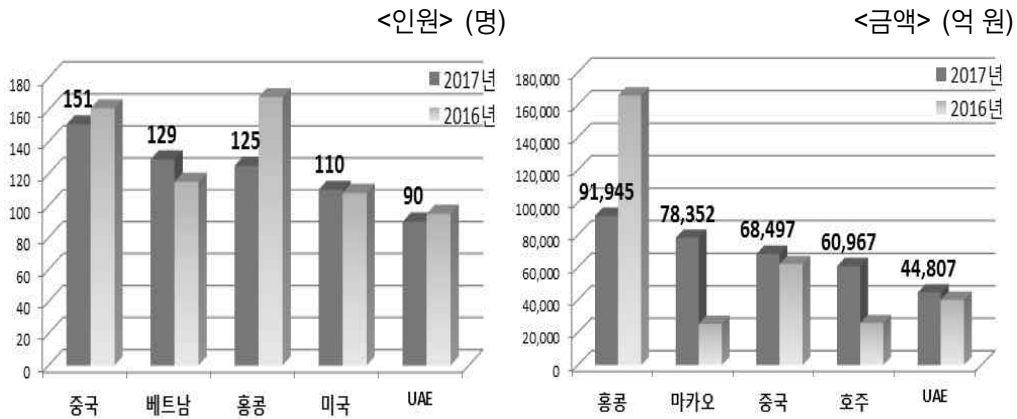


※ 1명이 여러 국가에 계좌가 있을 경우 인원수는 각 국가마다 계산

\* 201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홍콩은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3위, 금액 기준으로 1위



<참고\_해외금융계좌 신고 법인의 국가별 분포 현황>



※ 1명이 여러 국가에 계좌가 있을 경우 인원수는 각 국가마다 계산

### 3 - 홍콩 최신 세무 동향 -

□ BEPS 최소요구기준에 따른 세법 개정안 발표(\*17.10.6.)

- 홍콩 국세청은 2016.3월 OECD BEPS 프로젝트의 최소요구기준과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2017.10월 BEPS의 최소요구기준에 따라 국내세법을 개정할 것임을 밝힘
- 속지주의(territorial tax)를 중심으로 한 간소한 과세체계가 홍콩의 장기성장과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향후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국제적인 흐름에 참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BEPS 프로젝트의 최소요구 기준을 채택하기로 결정함





- OECD 최소요구기준에 맞게 홍콩 국내법의 이전가격규정, 상호합의절차,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개정하고 국가별보고서를 포함한 이전가격문서화 제도 등을 도입함
  
- BEPS 프로젝트에서 권고한 내용은 아니지만, 상호합의 절차나 APA로 해결할 수 없는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 국내법과 조세조약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조세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법에 반영
  -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기간을 6년으로 연장

#### □ 홍콩 금융정보자동교환 시스템 개설 및 금융정보협정국 확대

- 홍콩 국세청은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국을 확대하고 자동 정보교환 시스템을 개설함
  -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 CRS)에 따른 보고대상 국가가 2개국(영국, 일본)에서 75개국으로 확대됨
  - 자동정보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 AEOI)을 위해 7월 3일 발효된 내국세법(Cap §112)의 501(1)호에 따라 AEOI포털을 개설함



<참고\_AEOI 포털>

※ 자동정보 교환 협정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  
 - 자동정보 교환협정은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 방지와 각 국간 조세정보교환을 위해 OECD 에서 진행중인 협정으로, OECD 재정위원회에서 2014년 2월에 마련한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 교환 표준모델에 따라 협정서명국이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됨

\* 우리나라 역시 AEOI 파트너에 포함되어 있어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소득세 주요 개정 사항('17.2.22.)

- 홍콩 재무장관은 '17.2.22. 2017/2018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민생안정을 목표로 소득세 개정 사항을 발표함
  - 2017/2018 과세연도 개인소득세 면세점 기준을 4만 HKD에서 4만5천 HKD로 인상하여, 납세자 130만명의 소득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인적공제 중 형제자매공제(dependent brother or dependent sister allowance), 장애 인적공제(disabled dependent allowance) 금액을 인상하고, 본인교육비 (self-education expenses) 특별공제를 인상함
    - 형제자매공제 : 현행 3만3천 HKD에서 3만 7,500 HKD로 인상



- 장애인공제 : 현행 6만6천 HKD에서 7만5천 HKD로 인상
  - 본인교육비공제 : 현행 8만 HKD에서 10만 HKD로 인상
- 적격 대출기관의 주택자금대출이자(home interest deduction)에 대한 소득 공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확대
- 연간 공제한도는 10만 홍콩달러로 현행 유지
- 한시적으로 2만 HKD(약 29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 납부세액의 75%를 감면하며 약 18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 기업그룹 재무센터(Corporate Treasury Center, CTC)에 대한 경감세율 및 이자 비용 제도 신설('16.4.1.이후 적용)
- '16.4.1.이후부터 홍콩 내 기업그룹 전체의 재무센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경감세율 8.25%(일반 16.5%) 적용
- CTC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 ✓ 홍콩 내에서 관리되며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써,
    - ✓ 홍콩에서 자체적으로 기업의 재무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재무활동은
      - 1) 그룹 내부의 financing사업을 수행하거나 2) 기업에 재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3) 기업 재무거래에 관여해야 함
    - ✓ 금융기관을 통한 활동은 제외함
    - ✓ 非기업재무활동을 하지 않는 독립된 기업
- \* 재무활동 판단 기준
- 1) 사업이익 테스트 : 재무활동이익이 전체 이익의 75%이상
  - 2) 자산 테스트 : 재무활동에 쓰이는 자산이 전체 자산의 75%이상

#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 II

- 1. 외국인의 홍콩투자 / 10
- 2. CEPA협정의 이해와 활용방안 / 16
- 3. 진출 형태별 설립절차 / 27
- 4. 홍콩 지주회사 설립과 조세전략 / 53
- 5. 홍콩의 금융제도 / 55
- 6. 홍콩의 관세제도 / 60
- 7. 기타 사업관련 정보 / 66





## 1 - 외국인인의 홍콩투자



### □ 최근 투자유치 정책 동향

- 철저한 자유경쟁원칙 고수
  - 홍콩은 철저한 자유경쟁원칙에 의거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함. 홍콩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 법규를 적용하고 있어,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부지 제공, 임대료 인하 같은 인센티브도 없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법도 없음
- 세계적인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
  - 외국기업들에게 전략적 요충지로 각광받는 이유는 홍콩의 투자환경이 인센티브를 주는 국가들보다 더 우수하기 때문임. 제도적으로 규제 프리 지역으로 회사 설립까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으며, 조세제도도 매우 단순함
- 홍콩 경유 중국 투자 증가
  - ‘Gate to China’로서의 역할이 점점 부각되면서 홍콩을 거점으로 활용해 중국에 진출하려는 다국적기업들이 증가함. 홍콩에 설립한 다국적기업의 80% 이상은 중국 비즈니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사업 추진시 제품소싱, 재무관계 처리, 물류 등을 홍콩에서 처리하고 있음
  - 홍콩 정부는 홍콩만을 위한 투자유치 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세계의 공장 중국 주장 삼각주와 접목한 투자유치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 R&D 투자유치 주력
  - 홍콩은 최근 사업고도화를 지향하며 고도기술집약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홍콩 정부는 IT산업의 전략적 클러스터 건설을 위해 20억 달러를 투입해 홍콩섬 남부에 Cyberport를 건설했으며, 이 곳에 100여 개의 IT 관련 기업과 1만명의 전문인력이 거주하고 있음



## □ 외국인의 홍콩투자

### ○ 동향

- 홍콩 내 외국계기업의 회사설립은 증가추세이며 이는 CEPA 협정(홍콩과 중국 간 긴밀한 경제협정체결)의 역할이 큰 때문으로 CEPA 협정 하에서 외국기업이 홍콩기업으로 인정될 경우 중국시장 진출에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임
- 한편 중국 회사들의 홍콩 투자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데, 이는 홍콩을 전초기지로 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것이며 중국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던 각종 인허가권이 지방정부에 이양되면서 중국 기업의 홍콩 투자가 쉬워졌기 때문임
- 2016년 기준 홍콩에서 운영중인 외국기업은 7,986개사이며, 이 중 지역 본부는 1,379개사, 지사 2,352개사, 지역사무소 4,255개사임

### <홍콩 내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72,319	96,211	70,841	74,546	114,054	174,892

자료원 : UNCTAD(2016)

### <홍콩 내 외국기업 진출 현황>

(단위 : 개사, %)

기업 형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 수 (15~16)	증감률 (15~16)
지역본부	1,285	1,340	1,367	1,379	1,389	1,401	1,379	-22	-1.5
지 사	2,353	2,412	2,516	2,456	2,395	2,397	2,352	-45	-1.8
지역사무소	2,923	3,196	3,367	3,614	3,801	4,106	4,255	+149	+3.6
총 계	6,561	6,948	7,250	7,449	7,585	7,904	7,986	+82	+1.0

자료원 : Invest HK(2016)

○ 외국인 홍콩진출 사유

- 외국인투자 정책의 기초는 ‘철저한 자유경제원칙에 입각한 무차별 정책’으로 외국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홍콩 자체의 비즈니스 환경을 세계 최상위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외국계 기업들은 홍콩을 지역본부 혹은 지역사무소로 선택한 이유로 홍콩의 간단한 세금 체계와 저세율(68%), 정보 유통의 자유(63%), 지리적 위치(59%), 자유항 지위(59%), 통신/운수 기반 시설(55%), 정부의 투명성(54%), 사법체제의 독립성(52%), 중국 내 비즈니스 기회(51%) 등의 이유를 꼽음
- 특히, 홍콩의 강점은 낮은 세율 및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시스템 (미국 Heritage Foundation 발표 세계경제자유도 순위 22년 연속 1위)으로서 다국적기업들의 전략적 진출지로 자리 잡음

※ 외국인 투자 유치 전담 : 홍콩투자청(Invest HK)

- 투자관련 정보제공(구체적인 컨설팅을 위해서는 관련 업체를 연결), 법인등록, 사업허가, 무역허가증, 상표등록, 채용, 사무실 선정 도움, 상공회 등과 연결제공,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홍콩 이주 전후 관리 등의 업무 수행
- 모든 기업에 공평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되, 지원대상 기업은 대형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임

□ 한국기업 투자동향

○ 활발한 對홍콩투자 진출 진행

- 우리나라의 對홍콩 투자는 활발한 편으로 2015년, 2016년 신규법인 설립 수는 각각 106개, 144개이며 투자금액은 각각 1,927백만달러, 1,507백만달러가 투자된 것으로 확인됨
- 가장 많은 투자 진출 업종은 건수기준으로 도매 및 소매업(34.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0.3%) 순이고 투자금액기준으로 도매 및 소매업(31.2%), 제조업(22.6%) 순임



○ 홍콩 투자진출 특징

- 통계상 제조업 투자가 많으나 홍콩에 제조업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해야만 중국 내 재투자시 공장설립 내지는 제조업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홍콩 내에 생산기반은 없을 수 있음
- 도·소매업, 서비스업 투자의 경우 단순 트레이딩 목적 외에도 중국에 재투자를 하지 않아도 중국 거래업체와의 대금결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금결제가 홍콩 투자의 주요 이유임
- 최근 몇 년간 한국 화장품이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주요 화장품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홍콩 시장에 진출했으며 제품 판매가 증가세임

○ 홍콩 투자진출 사유

- 중국과의 지역적 접근성(Gate of China, 중국비즈니스 홍콩 경제 50% 점유)
- 낮은 법인세(법인세 16.5%, 단순한 조세구조)
- 투명한 정부(부패지수 세계 최저, 규정과 시스템에 의한 운영)
- 세계 최고의 자유경제(22년간 세계경제자유도 1위, 세계에서 가장 무역하기 편한 도시)
- 대금결제의 편리함(세계 금융 허브, 비밀유지, 신속)
- 자유로운 정보 공유(40여 개 신문과 700여 개의 간행물)

□ 투자환경 단점

○ 높은 부동산 임차료

- 부동산 임차료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기업의 진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코즈웨이베이 같은 최우수상권 임차료는 수직 상승하고 있어 다수의 브랜드가 상점을 옮기는 일이 비일비재함





- 현지 시장 협소 및 경쟁사 대거 진출로 이익 창출 어려움
  - 홍콩 인구는 700만 명으로 시장 규모가 매우 협소하며 홍콩 자체 시장에서 판매되는 한국 제품의 경우 대기업인 삼성과 LG 이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1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음
- 고급 인력 부족
  - 홍콩은 대학이 9개밖에 없어 인력이 충분한 상태는 아니므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음. 이들의 임금은 홍콩 사무직의 평균임금보다 3배 이상 많아 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최근 전문인력을 중국에서 유치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주요 투자 인센티브 요약

- 조세감면

인센티브명	주요내용	내·외국인 동등적용 여부
The Inland Revenue (Amendment) (No.2) Ordinance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홍콩소재 글로벌 그룹 전체의 재무 담당센터(Corporate Treasury Centre)에 이자 관련 공제를 신설하고, 재무 담당센터가 수행하는 특정 활동에 대해 50% 경감세율 (8.25%) 적용</li> </ul>	○



○ 현금지원

인센티브명	주요내용	내·외국인 동등적용 여부
사이버포트 창업지원 프로그램 (Cyberport Incubation Program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18개월 내로 서비스 출시가 가능한 디지털 기업</li> <li>- 해당 프로그램 선정 후 1년간 회사 운영 가능 펀드 보유 또는 투자유치 계획 보유 기업으로 홍콩 내 등록 기업</li> </ul> </li> <li>· 선정기준 : 사이버포트(Cyberport)*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 홍콩정부 지원을 받아 설립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이자 정보통신기술 산업단지</li> </ul> </li> <li>- 팀 운영 능력(20%), 시장성(30%), 프로젝트 창의력 및 혁신성(30%), 홍콩 디지털 산업 기여(10%), 6개월 프로젝트 실행 계획(20%)</li> <li>· 지원내용 및 규모 : 잠재력이 큰 디지털 기술 창업 프로그램으로 최대 33만 홍콩달러 지원</li> <li>· 지원방법 : Cyberport에 지원서 제출</li> <li>· 재원(financial resources) : 홍콩 정부, 사이버포트</li> <li>· 인센티브 지급 관할기관 : 사이버포트</li> </ul>	○

○ 입지지원

인센티브명	주요내용	내·외국인 동등적용 여부
사이언스 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 (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Park Corporation (HKSTPC) Incubation Program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 이내 홍콩 법인 설립 신생 스타트업</li> <li>- 창의성, 혁신성, 기술집약 산업 관련 스타트업</li> </ul> </li> <li>· 선정기준 : 가치창출성 및 홍콩경제 영향력을 심사</li> <li>· 지원내용 및 규모 : Science Park내 입주</li> <li>· 지원방법 : Science Park 입주 양식 제출</li> <li>· 재원(financial resources) : 홍콩 정부, Science Park</li> <li>· 인센티브 지급 관할기관 : Science Park</li> </ul>	○



## 2 - CEPA협정의 이해와 활용방안



### □ 중국-홍콩 CEPA협정이란

- 중국과 홍콩이 2003년 6월 29일 기본 합의서(main text) 및 6개 부속서(annexes)에 서명한 중국-홍콩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 2003년 체결 당시 홍콩이 사스 여파로 어려워지자 ‘하나의 국가’라는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진행됨
  - 일반적으로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개념이지만 홍콩이 단일 주권국가가 아니라 중국과 홍콩간에는 ‘1국 2체제’가 적용되므로 CEPA라는 용어를 씀
  - 이는 홍콩-중국 쌍방 간 최초로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며 국제자유무역도시인 홍콩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자유무역협정이기도 함
  - 중국-홍콩 양측은 CEPA의 자유화 범위와 강도를 높여나가기로 약속한 CEPA 3조 조항에 따라 매년 보충협정 체결을 통해 무관세 혜택 및 자유화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중임
  
- 주된 내용은 홍콩산 상품이 중국으로 수출될 때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홍콩 서비스업이 중국에 우선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선 개방 조치를 취한다는 것임
  
- 중-홍콩 CEPA 3대 구성
  - 상품 무역 : CEPA를 통한 상품무역의 경우 2006년부터 CEPA 원산지 리스트에 포함된 1,800개의 홍콩 내 제조 제품은 무관세로 대중국 수출이 가능함



- 서비스 무역 : 홍콩 서비스제공자에게 중국 서비스시장을 WTO양허안 보다 조기에 폭넓게 개방
  - 무역투자 간소화 : 다수의 무역, 투자촉진을 위한 협력강화로 비즈니스 환경 개선
- 홍콩 - 중국 전체 간 협정사항이나 일부 시범적 개방조치는 광동성에 제한됨

## □ 현황

- 중 - 홍콩 CEPA는 2001년 12월 등지앤화 홍콩 행정장관의 공식제안 이후 2002년 1월 25일 북경에서 협정을 위한 세부 협의를 시작하여 2003년 6월 29일 1차 협정이 체결(2004.1.1. 발효)되었으며 매년 보충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지난 6월 28일 투자 및 경제기술 관련 CEPA 추가 협의가 결실을 맺었으며 경제기술 협의는 즉시 발효, 투자협이는 2018년 1월 1일 정식 발효될 예정임
  - 개정된 중국 - 홍콩 CEPA는 그동안 중국이 체결한 대외 FTA 협정 중에서 최초로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양허표 명시사항 이외 모두 개방)과 내국민 대우가 명시된 투자협이가 적용됨
  - 이에 따라 홍콩기업은 부칙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정유, 천연가스, 조선, 항공기 제조, 한약 제조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투자가 가능하며 중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도 누리게 됨. 다른 외국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별화되고 개방적인 진출 여건이 조성된 것임
  - 그동안 외국기업의 중국진출이 증가하면서 이와 비례하여 많은 법적 다툼이 있어 왔는데, 이번 CEPA 투자협이는 투자가 보호와 분쟁 해결 방안이 있어서도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것임
  - 각종 분쟁 해결을 위한 대표적인 기구로 <투자 위원회(Committee on Investment)>가 신설되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임

- 이번 투자협약 체결을 계기로 중국에 투자하는 홍콩 법인은 중국기업과 동일한 내국민 대우 향유는 물론, 비서비스 분야에서도 보호를 받게 됨. 이전의 CEPA 자유화조치는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 국한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가협약 체결을 계기로 투자자 권익보호와 개방도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커다란 진전을 이룬 것임
- 2년 후 한-중 FTA 서비스·투자협정이 최종 타결되더라도 중국-홍콩 CEPA 수준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 기업들은 CEPA를 통해 홍콩을 교두보로 삼아 중국 서비스시장에 우회 진출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CEPA를 통한 상품무역

- 중국과 홍콩간 상품 교역의 경우 중국이 현재까지 체결한 그 어떤 FTA 보다도 시장개방 정도가 높음
- CEPA 3차 협정에 의해 2006년부터 모든 홍콩산 제품(CEPA 원산지 리스트에 포함된 1,891개 제품에 한함)을 중국에 수출시 중국에서 수입관세를 면제함(영세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홍콩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원산지 규정을 적용받아 관세 혜택을 누리기란 쉽지 않은 실정
- 홍콩에서 중국본토로 수출되는 상품은 무관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CEPA ROOs를 준수해야 함.
  - 중국으로 수출되는 각각의 탁송상품은 TID(Trade & Industry Department) 또는 관련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CO(CEPA), Certificate of HK Origin-CEPA)가 동반되어야 함. CO(CEPA)를 신청하기 전에 홍콩제조 업체는 수출할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TID에 공장등록(FR, Factory registration)을 해야 함



- ① 대중국 수출 품목 여부를 확인
- ②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확인
  - 홍콩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 공장등록을 완료함
  - 적어도 30% 이상의 부가가치가 홍콩에서 발생
  - 품목에 따라 중국산 원료 및 부품 가치는 부가가치의 15%까지 포함
- ③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
  - 제품 수출 전 수출업체와 제조업체는 생산제품이 CEPA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수출시 매번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서에 제품수량, 패키지 수량, FOB 가격등 정보를 제출해야 함

- 역외가공방식을 통해 홍콩 밖 자회사 또는 역외에서 상품을 마무리 하는 것은 가능하나, 외부 공정을 한 제품의 경우에 원산지 증명을 신청하기 전, 완제품이 홍콩에 들어와 있어야 함. 만약 반제품 경우에는 무관세 수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함

○ 원산지 규정(ROO, Rules of Origin)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원칙은 ;

- 홍콩에서 완전히 생산된 상품(the goods are wholly obtained in Hong Kong) 또는 홍콩에서 실질적인 변형과정을 거친 상품(the goods have undergone substantial transformation in Hong Kong.)
- “홍콩에서 완전히 생산된 상품”은, 홍콩지역에서 잡힌 어류, 양식 등 수산물, 홍콩에서 채굴된 광물, 홍콩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재생한 상품, 홍콩에서 태어나서 길러진 동식물 등과 같이, 원료의 원천이 홍콩인 상품을 의미함
- “홍콩에서 실질적인 변형과정을 거친 상품”은, 상품의 생산 및 처리과정, 원료로부터 상품이 되는 과정에서 HS Code변화 정도, 부가가치 구성 등을 기준으로 원산지 여부를 판단함
  - 부가가치 구성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FOB가격 기준으로, 부가가치 창출 가치가 FOB가격의 30%이상인 홍콩에서 창출되어야 함



- 제품개발비용 또는 본토에서 구입한 원료비용을 부가가치 구성에서 포함시키기를 원하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제공해야 함
- 처리과정이 단순희석(simple diluting), 혼합(mixing), 포장(packaging) 보틀링(bottling), 건조(drying assembling), 분류(sorting) 또는 장식(decorating) 등은 실질적인 변형과정이 아님

- 부가가치 계산법

$$[(\text{원료비용} + \text{제품부품비용} + \text{인건비} + \text{상품개발비용}) / \text{상품의 FOB가격}] \times 100\%$$

○ 원산지증명 (CO(CEPA), Certification Origin)

-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함
  - 각 CO(CEPA)는 중국본토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1회만 사용됨
  - 수출 대상상품은 CEPA Tariff Code가 있어야 하며, 만약 없다면 CEPA Tariff Code를 우선 추가 신청해야 함
  - 하나의 CO(CEPA)는 각각의 관세코드가 있는 5가지 제품을 포함할 수 있고, 5가지 제품은 물론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함
  - 하나의 Tariff Code에 해당하는 제품이 분리되어 운송된다면 각각의 운송제품단위에 대해 다음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포장단위 및 수량, 수량단위 및 수량, FOB 가격.
  - CO(CEPA)에 표시된 도착항은 수입업자가 무관세혜택을 신청 할 세관항구라야 함
  - CO는 발행일로부터 120일간 유효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CO는 무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음

○ CO발행기관

-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 The Hong Kong General Chamber of Commerce
- Federation of Hong Kong Industries



- The Chines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Hong Kong
- The Chinese General Chamber of Commerce and the Indian Chamber of Commerce, Hong Kong

## □ CEPA를 통한 서비스산업 진출

- WTO의 GATS규정(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규정에 따라 홍콩에 있는 외국 기업들도 홍콩기업으로 인정되어 CEPA협정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음(요건 충족 필요)
- 법인자격으로 CEP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홍콩 서비스 제공자 (HKSS; Hong Kong Service Supplier) 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후 중국 CEPA 관련 부서에 CEPA 서비스 제공 신청을 한 뒤 CEPA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도 작성 가능하며 각종 관련 양식을 아래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http://www.tid.gov.hk/english/aboutus/form/publicform/cepa/cepa.html>
- 자연인은 HKSS 자격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업태에 따라 관련 중국 사무국에 영주권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됨. 홍콩이 아닌 중국 국적자의 경우, HVP(Home Visit Permit) 혹은 홍콩 여권을 추가로 제출한다. 한국인의 경우 홍콩에서 Permanent ID를 받은 영주권자만 해당됨
- 소요비용 : 신청서류에 따라 다름
  - HKSS 증명서 : 1,550홍콩달러
  - HKSS 갱신 : 305홍콩달러
  - HKSS 교체 : 305홍콩달러/부
  - HKSS CTC(Certifies True Copy) : 300홍콩달러/부





- 신청자는 비용 지불 청구서를 지참하고 무역산업부의 대금지불사무실 (Collection Office, Room 104,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Tower, 700 Nathan Road, Kowloon)에 비용을 지불함. 지불 후 받은 영수증과 문서를 지참해 HKSS 부서를 방문하면 홍콩 서비스 제공사 자격증(HKSS Certificate)을 받아올 수 있음

※ HKSS(Hong Kong Service Suppliers) 판정기준

1. “법인”은 HKSAR정부의 회사 조례 또는 관련법에 설립되어야 하고, 유효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해야 한다. 만약 법적으로 요구되면, “법인”은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Permit or Licence)을 보유해야 하며,
2. 홍콩에서 실질적인 사업경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결정의 범위는:
  - 사업의 특성 및 범위 (nature and scope of business)  
본토에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는 HKSS가 홍콩에서 공급하는 서비스의 특성 및 범위는 규정된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본토의 법률, 규정 및 행정규정에서 외국투자기업 사업의 특성 및 범위에 어떤 제한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도 있음.  
홍콩에 등록되어 있는 역외회사, 대표처, 연락사무소, “우편함 사무소” 및 본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는 HKSS가 아님
  - 사업연도 요구조건 (Years of operation required)  
HKSS는 홍콩에 설립되어야 하고 3년 또는 그 이상, 실질적인 사업운영활동을 해야 함. 특정분야의 요구조건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 ✓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최소 5년
    - ✓ 부동산서비스 : 제한 없음
    - ✓ 보험, 국제해운대리 서비스 : 법인 형태로 5년 이상
    - ✓ 은행 : 홍콩 통화청에서 라이선스 취득 후 5년 이상 사업운영 또는 지점 2년 및 현지법인 3년 이상 운영
  - 소득세(Profits tax) : 홍콩에서 실질적인 사업운영 활동을 하는 동안, HKSS는 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사업장 부지(Business premises) : 실질적인 사업운영 활동을 위해 HKSS는 홍콩에서 사업장을 소유 또는 임대해야 함
  - 직원고용 : 홍콩 지점 내 직원 50% 이상이 홍콩인일 것

- HKSS 증명서 신청방법
  - 홍콩 무역산업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처리기간 14일내)



- 법인설립등록증 및 사업등록증명서
- 3년 이내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보고서
- 3년 이내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 3년 이내 소득신고서, 세금고지서
- HKSS 신청서
- 법정선언서
- 이사결의안

○ HKSS 증명서 승인 후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절차

- 사전 검토 및 회사 이름 승인
- 기업에 사전 부여된 코드 확인
- 공식문서 검토 및 프로젝트 개시 승인
- 환경보호 및 화재 보호 문서 작성
- 상업 및 산업 단체 등록
- 사인(Company seals)준비
- 기업 코드 카드 발급
- 세무 등록
- 외환 라이선스 취득
- 세관 등록

\* 환경보호 승인기준 : 시행하게 될 프로젝트가 국가 및 지방법률 및 정책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위치 및 계획이 도시계획에 부합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지, 산업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는지, 주요 오염물질 관리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환경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 유의사항

- HKSS 신청시 요건 충족에 대한 사전 확인이 매우 중요함. 각 조항별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살펴보기 때문에 사전에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면밀히 살펴보는게 필요(실제 HKSS 요건 취득을 실패하여 중국 진출 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음)
- HKSS 인증을 받아 CEPA 혜택을 받고 중국으로 진출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중국의 어느 지역으로 진출할 것인지를 정하는 부분임. 중국은 넓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각 성에 따라 외국계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상이하기도 하며, CEPA 대비 혜택이 더 큰 부분이 있을 수 있음



- 특히 1선 도시(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의 경우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음. 투자 유치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2, 3선 도시의 경우 CEPA를 활용 하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또한 중국이 HKSS를 취득한 해외기업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주는가도 중요한 고려 사항임. 한 한국 기업은 정해진 절차를 밟아 CEPA를 통해 중국에 진출했음에도 지방정부의 담당자들은 종종 “그래도 홍콩기업이 아니라 한국기업이지 않느냐”며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함
- CEPA를 이용한다면 중국 진출은 분명한 기회이지만 그에 따른 위험도 동반되며 경험이 풍부한 자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함

#### □ 중국 - 홍콩 CEPA 분야별 개요 요약

분 야	현황 및 전망
상 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에서 제조되었으며 CEPA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모든 상품은 중국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누림</li> <li>- 2017년 6월 30일 현재 누계기준 총 15만1000건의 CEPA 홍콩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었으며, 상위 3개 품목은 식품·음료, 플라스틱·원료, 섬유·의류제품임</li> </ul>
서 비 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KSS(Hong Kong Service Suppliers) 자격을 갖춘 기업은 중국진출 시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ATIS(the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가 시행된 2017년 6월 이후 중국은 WTO 기준 160개 서비스 분야 중 153개 분야(전체의 96%)를 개방함</li> <li>- 전문 서비스분야에 있어서는 홍콩과 중국의 상호 자격 인정을 통해 전문직인력이 중국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li> </ul>
투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EPA 개방범위가 비서비스까지 확대되고 상호 투자촉진과 투자가 보호를 위한 제반 신조치가 시행됨으로써, 홍콩 - 중국 간 투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li> </ul>
경제·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경제기술 협력 협의&gt;는 CEPA와 ‘일대일로(一帶一路)’ 추진에 따른 여러 경제·기술 협력활동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 임</li> </ul>



□ CEPA를 통한 중국 서비스 산업 진출과 직접진출 비교

CEPA를 통한 중국 진출	산업 분야	중국 시장 직접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 시 총 자산 60억 달러</li> <li>- 전액 출자 은행 또는 지점 설립 시 1년간 대표 사무소 운영</li> <li>- 위안화 비즈니스 신청 전 1) 2년 이상 경영, 2) 1년간 우수한 수익 성과</li> <li>- 뮤추얼 펀드 판매 가능</li> <li>- 중국 내 어느 지역이나 분점 설립 가능</li> <li>- 홍콩은행이 설립한 중국 금융 기관의 경우 뮤추얼 펀드 판매 가능</li> </ul>	<p>금 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사 설립시 총자산 200억 달러 이상</li> <li>- 지점 설립지역에 2년이상 대표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운영 경험</li> <li>- 위안화 비즈니스 신청전 1) 3년 이상 경영, 2) 2년 이상 우수한 수익 성과</li> <li>- 뮤추얼 펀드 판매 불가</li> <li>- 외국은행은 지사를 운영하는 도시 내에만 분점을 설립할 수 있음</li> <li>- 외국은행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선박관리, 컨테이너 보관, 홍콩에 등록된 선박 검사서비스, 국제 해양 컨테이너 임대 및 매매 서비스, 선박 유지 및 수리 서비스 등을 위한 회사 전액 출자(100%) 설립 가능</li> <li>- 화물 핸들링서비스와 컨테이너 보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 서비스 제공업체를 소유 가능</li> <li>- 중국-홍콩-마카오 구간 선박 에이전시 전액 출자 설립 가능</li> <li>- 중국 본토 회사와 합작해 (지분의 51%까지 소유 가능) 제3국 국제 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li> </ul>	<p>해상운송 서비스 부 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기업은 지분의 49%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합작투자가 가능</li> <li>- 외국기업 불가</li> <li>- 외국기업 전액 출자회사 설립 불가</li> <li>- 외국기업 불가</li> </ul>



CEPA를 통한 중국 진출	산업 분야	중국 시장 직접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데이터 처리 및 트랜잭션 처리 서비스(전자 상거래 비즈니스 웹 사이트만 해당), 중국 내 다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콜센터, 인터넷 접속 서비스, 앱스토어 콘텐츠 서비스 제공기업 100% 출자 또는 합작 설립 가능</li> <li>- 합작의 경우 지분 소유 가능 제한 없음</li> </ul>	<p>통 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작기업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 항공사가 티켓이나 호텔 패키지를 중국 판매 에이전트를 거치지 않고 중국 내 자사 오피스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 가능 하도록 함.</li> <li>- 보안과 관련된 사업을 제외하고, 항공 운송을 위한 지상 서비스 제공기업 전액 출자 가능</li> </ul>	<p>운 송 교 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 및 호텔 패키지는 중국 에이전트를 통해야만 판매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디오 및 음향 제작 서비스 (영화제품 포함) 기업은 본토에서 전액 출자한 기업을 설립 가능</li> <li>- 관련 중국 규정 및 검토 요구 사항에 부합할 경우 비디오 및 음성 녹음제품 배포 서비스 (영화 제품 포함) 제공기업 전액 출자 가능</li> <li>- 중국 당국의 승인을 얻은 후 중국에서 제작한 영화를 배포 하기 위해 시범으로 전액 출자 회사 설립 가능</li> </ul>	<p>시 청 각 제 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기업과 합작형태로 비디오, 음향 녹음제품의 제작 및 배포가 허용</li> </ul>



CEPA를 통한 중국 진출	산업 분야	중국 시장 직접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에서 제작한 중국어로 된 영화는 연간 수입 쿼터 없음</li> <li>- 홍콩의 영화 제작사는 영화 저작권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즉, 주요 제작자여야 하고 영화 투자 예산의 50% 이상을 기여해야 함)</li> <li>- 홍콩에서 제작 한 영화는 만다린 자막 제공 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서 원본 광동어 사운드 트랙을 스크리닝 할 수 있음</li> </ul>	수입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D, Imax 영화를 포함해 340개 외국영화의 연간 수입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액 출자 기업 설립 가능하며 하나 이상의 영화관을 오픈 및 운영 가능하며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사업 운영 가능</li> </ul>	영화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기업은 적은 지분을 소유한 합작형태로 중국 내 영화관을 오픈, 개조 및 운영할 수 있음</li> <li>-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시안, 우한, 난징과 같은 7개 시범도시에서 해외기업은 합작회사의 지분을 75%까지 보유 가능</li> </ul>

자료원 : TID, HKTDC

### 3 - 진출 형태별 설립절차

#### □ 투자 진출형태

##### ○ 기업의 종류

- 법인, 개인, 파트너십(합자/합명회사), 연락사무소, 지사



## ○ 법인

- 법인은 유한회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주주의 책임이 유한함 (한국의 주식회사에 해당)

### - 신규법인 설립 특징

- 상호는 중·영문 혼합시 등기가 불가능, 회사명 끝은 Limited 또는 有限會社로 기재해야 함
- 등기이사는 최소 1인 이상(18세 이상, 국적제한 없음)
- 주주는 최소 1인 이상(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가능
- 최소한의 자본은 주주 당 1홍콩달러(납입의무 없음)
- 기존회사명 사용불가(중복불가), 홍콩주소지 필요
- 법인설립시 간사지정
- 설립시 필요서류 : 최소 1인이상 주주(이사) 여권사본, 영문주소지 증명서, 주식배분율, 원하는 회사명, 자본금, 업종/업태

### - 기등록 법인 인수 특징

- 홍콩 내 회계법인 또는 에이전트가 기 등록해 놓은 회사를 인수하는 형태로 사업자등록 발급이 3일 이내로 즉시 업무 개시가 가능

## ○ 개인회사

- 자본금, 주식발행이 불가능하며 회사 대표가 무한 책임을 짐

### - 개인회사 특징

- 회사명 중복가능, 영문과 중문 혼합 불가
- 사업자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므로 회사설립이 신속하고 간단
- 개인회사는 해외 투자에 참여불가하며 자회사 설립도 불가능
- 세무규정은 법인과 동일하며 회계감사 의무가 없음
- 당기 매출이 HKD200만불 이상시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함
- 홍콩직원고용과 홍콩 거주자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실제 사업계획 등을 세무서에서 검토하고 허가를 내줌
- 설립시 필요서류 : 대표자 여권 사본 및 입·출국 관련 기록사본, 거주지 증명서, 사업계획서 및 회사조직도,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홍콩 내 은행계좌 정보(은행명, 계좌번호, 개설일 등)



○ 파트너십(합자/합명회사)

- 개인회사이며 합자회사일 경우 대표자는 1인 이상 등록이 가능
- 개인사업자 및 합자회사 모두 설립 절차는 동일하며, 홍콩 세무서에 합자회사 신청서를 접수하면 영업활동 시작이 가능함

○ 연락사무소

- 간단한 사업자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
- 수익창출 행위가 금지되므로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사 또는 현지법인(법인 설립과 동일한 절차 이행) 형태로 변경해야 함
- 시장조사나 거래처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수익 창출 행위가 금지되므로 회계보고, 결산 등이 불필요함
- 설립시 신청자 여권 사본, 회사명(모회사 이름과동일해야 함), 회사 설립 신청서, 공증된 본사 사업자등록증 영문 사본 등이 필요함

○ 지사(Branch Office)

- 자본금 설정이 필요 없고, 본사의 이사와 감사가 그대로 지사의 이사와 감사로 임명됨(실제 자본금 납입의무가 없어 설립빈도가 낮음)
- 유한회사 설립과 비교하여 이점이 없어 유한 회사 설립이 진출시 편리함
- 설립시 본사의 정관 영문번역 공증, 본사의 법인등기등본 영문번역 공증, 본사의 감사보고서 영문 번역공증, 본사 이사 및 감사의 개인 정보가 필요함

- 현지법인

- 현지 법인체가 모든 법적책임을 짐, 사업개시 한 달 이내에 사업등록 필요, 과세표준은 홍콩에서 영업발생 이익

- 현지 지사

- 법적 분쟁시 본사(모회사)가 모든 법적, 금전적 책임을 짐
- 과세표준은 지점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과 본사의 전체이익을 홍콩 지점의 매출액으로 안분한 금액 중 택일
- 본사의 영문 상호가 그대로 사용되며 본사의 이사진이 등기
- 본사의 임원진 변동이나 주소시 변경, 자본금 변동 등 본사의 모든 변경사항을 홍콩정부에 보고해야 함



○ 공장설립

- 공장 등록 후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회 1회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함

<설립 조건>

-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은 회사
- 자가 및 임대에 대한 증명 서류
- 해당 물품 생산할 기계설비 구축
- 직원 채용 근거, 공장 유지를 위한 기본 서류 구비

<등록절차>

- 공업무역서에 공장 등록 서류 접수(등록비 HK\$ 3,003)
- 공업무역서에서 인터뷰 실시
- 홍콩세관에서 공장검사
- 공장 실사시 문제가 없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장등록 번호를 공업무역서에서 발급해 줌
- 공장등록 완료 후 공업무역서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요청

○ 홍콩 법인 설립시 유리한 점

- ①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CEPA)에 따라 상호간 무관세수출입에 따른 각종 혜택이 있어 외국기업보다 유리한 입장으로 중국시장에 진출(원산지가 홍콩인 제품이 중국에 수출될 경우 면세 혜택)
- ② 경영범위에 대하여 제한이 적어 거의 모든 산업에 대하여 투자를 허가
- ③ 국적에 상관없이 회사설립이 가능하며, 회사설립 절차 또는 서류작성이 편리함
  - 중국에 투자시 투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시 모든 서류를 중문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야 하나, 홍콩에 법인 설립후 홍콩 법인이 투자하는 경우 중국 공증을 받아야 하나 외국어 중국 공증보다는 비용, 시간 면에서 절약 가능
- ④ 자본금 납입 의무가 없고, 법인세도 16.5%로 아시아 최저
  - 제3국간 수출시 홍콩법인을 활용하여 무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국법인을 이용하는 것보다 세금을 절약
    - 중국은 직접 수출입시 가격조정이 불가능하고 매건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함



- 홍콩은 수출입시 관세, 법인세를 절약할 수 있으며 1년 기준으로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만 세금을 납부하고 서류상 경비처리 가능 방법이 많아 절세가 가능함
- ⑤ 중국과 근접한 위치에 있어 활발한 교역 및 이동이 편리하고 홍콩법인을 통한 중국진출의 경우 홍콩기업이 투자한 형식이므로 같은 중국기업으로서 유리한 대우를 받음
- ⑥ 홍콩은 외환관리법이 없어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며 또한 국제신용과 신용대금을 쉽게 받을 수 있어 국제간 비즈니스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저렴하게 해외법인 운영이 가능
  - 중국은 회사 계좌로 자금 입금시 현금화하기 힘들며, 모든 거래시 회사 수표를 발행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자금 활용의 융통성이 떨어지며 불편함

## □ 형태별 설립절차

### ○ 신규법인(단계)

- 상호명을 확인함(무료, 홍콩 기업등록국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가능), 기업등록국 사이트에서 설립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FORM NNC1)하여 작성
- 홍콩법인 설립 신청서를 홍콩기업 등록국에 등록함
  - 접수 후 4~6 영업일 이후 발급, 회사 등록 비용은 HK\$1,720, 인지세는 수권자본금의 0.1%로 최대 HKD30,000

#### <필요서류>

회사정관, 등기이사, 주주의 여권사본 및 영문 거주지 증명서, 한국 본사의 현지 법인일 경우 영문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함

- 홍콩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국세청에 신청함
  - 기업등록국에 설립신청서를 제출하면 연계되어 자동으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됨(연 단위 HKD 250(또는 3년 단위 HKD 3,950) 갱신 등록증 비용이 발생하며 매년 홍콩 정부의 재정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인사업자, 연락사무소는 별도로 국세청에 신청해야 함



○ 기 등록 법인 인수

- 기등록된 상호명을 결정함(에이전트마다 차등 수수료가 부과되며 실시간으로 판매가 됨)
- 홍콩기업 등록국에서 신규등기이사로 변경 작업을 함
  - 무료이며 1일 정도 소요됨

<필요서류>

등기이사 여권 사본 및 영문 거주지 증명지가 필요함

- 국세청에 주주 변경 신청함

- 1일 정도 소요되며 신고비용(HKD 15)과 주식 양수도 금액의 0.1%의 인지세(양수자/양도자 모두 부담)가 있음

<필요서류>

신규 주주의 여권 사본 및 영문 거주지 증명지가 필요함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함

- 홍콩기업등록국에서 발행된 법인설립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되고 직접 방문시에는 바로 발급(우편접수시 2일)되며 연 단위 HKD 250 (또는 3년 단위 HKD 866) 갱신 등록증 비용이 발생함
- 매년 기업등록국에는 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해야 함(사업자등록증은 은행, 편의점 등에서 갱신 가능함)
- 연보고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음(홈페이지에서 NAR1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다음 기업등록국에 제출하거나 e-Registry에서 회사 ID를 만든 다음 회사명으로 연보고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음)

○ 개인회사&합자회사 설립

- 홍콩국세청에 대표자의 여권사본 및 영문 거주지 증명지 첨부하여 신청서 접수하면 사업자 등록증 즉시 발급가능(우편접수 경우 제2영업일)하며 연 단위 HKD 250(또는 3년 단위 HKD 3,950)갱신 등록증 비용이 발생함



○ 지사 등록

- 상호명을 확인함

- 홍콩기업등록국 홈페이지에서 본사 영문명이 기등록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비용은 무료), 기업등록국 사이트에서 설립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N1)하여 작성

- 홍콩지사등록신청서를 홍콩기업등록국에 접수함

- 지사 등록 서류 접수 후 22~30영업일 이후 홍콩기업등록국에서 지사 등록 인증서 및 사업자등록증 일괄 발급

**<필요서류>**

본사의 정관 영문 번역공증, 본사의 등기부 등본 영문 번역공증, 본사의 등기이사 리스트 및 개인정보, 본사의 영문 회계 감사보고서(한글일 경우 영문번역 공증), 홍콩지사의 대표자 정보

- 국세청에 홍콩지사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함

- 기업등록국에 설립신청서를 제출하면 연계되어 자동으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되며, 년 단위(또는 3년 단위)갱신 등록증 비용이 발생함
- 1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발급 받아야 함
- 매년 기업등록국에는 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갱신해야 함(사업자등록증은 은행, 편의점 등에서 갱신 가능함)
- 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본사의 회계 감사보고서 영문본을 같이 제출해야 함(단, 본사가 해당 설립국의 기준에 따라서 감사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면제 신청이 가능)

○ 연락 사무소 설립

- 대표자의 여권사본, 영문 거주지 증명지, 본사 법인 등기부등본, (영문) 변호사 공증 1부 첨부하여 홍콩국세청에 제출하면 신청 즉시 발급 가능



## □ 청산(폐업)절차

### ○ 회사 청산 및 절차

#### ① 법인

- 폐업관련 이사 또는 주주 결의서 필요
- Form IR 1263작성하여 홍콩국세청에 제출(HKD 270 비용)
- 세무서에서 심사(채무 또는 체납세금 등, 1~ 2개월 소요 )
- 홍콩 국세청에서 승인통지문 받고 3개월 이내 홍콩기업등록국에 서류 제출(HKD 420 비용)
- 관고 게재 후 3개월 동안 채권자 혹은 이해 관계자의 반대가 없을 경우 폐업 승인
- 전체적으로 6개월~1년의 시간이 소요됨

#### ② 개인회사 & 합자회사

- 폐업 1개월 이내 홍콩 국세청에 통보(무료, 1영업일 소요)

#### ③ 연락사무소

- 폐업 1개월 이내 홍콩 국세청에 통보(무료, 1영업일 소요)

#### ③ 지사

- 홍콩기업 등록국에 회사 폐업 바로 통보해야 함(본사의 청산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는 한국 본사 청산 통보받은 후 7일 이내 통지)
- 폐업이후 향후 3년간 법정 대리인 유지해야 함
- 1영업일 소요

## □ 간사회사(Secretary 회사)제도

### ○ 정의

- 법인설립 대행, 관계기관 서류제출 등 행정업무 및 비서업무 수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하며,
  - 홍콩에서는 법인 설립시 ‘홍콩인 혹은 홍콩법인의 간사’가 반드시 선임되어야 하므로, 대부분의 한국인이 간사회사를 통하여 법인을 설립함
- \* 홍콩인을 고용하여 개인간사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법인 설립 가능



○ 업무영역

구 분	업무 내용	비 고
홍콩 법인설립	홍콩내 법인설립 대행	-
세무·회계업무 대행	세무관련 상담 및 회계업무 대행	대부분 외부전문가(회계사)에게 위탁
행정업무 대행	비자접수, 은행계좌개설 등	-
Virtual Office (가상사무실)	사무실 주소 대여 및 전화응대	-
물류서비스	한국 및 국외 운송대행	일부업체만 수행

○ 간사회사의 선택

- 홍콩인이 운영하는 간사회사와 한국인 등 외국인이 운영하는 간사회사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홍콩계 간사회사가 비용측면에서 저렴함 (한국계의 1/2 수준)
  - 그러나 신규 진출기업 입장에서는 간사회사 대행비용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초기에 홍콩 진출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 경험이 많고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한국계 간사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함
- \* 한국계 간사회사는 포털사이트에서 '홍콩 법인 설립' 등의 검색어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음



□ 법인 설립 신고 서식(예시)



公司註冊處  
Companies Registry

法團成立表格  
(股份有限公司)  
Incorporation Form  
(Company Limited by Shares)

Specimen

Notes:   
✦ All the particulars filled in this specimen form are fictitious. Any resemblance to individuals or companies is entirely coincidental.   
✦ Please deliver a complete form (i.e. pages 1-7 including pages with inapplicable items) except unused continuation sheets.   
✦ Please read the Notes for Completion before completing this form.

表格 Form **NNC1**

註 Note

8 1 建議採用的公司名稱 Proposed Company Name

建議採用的公司英文名稱 Proposed English Company Name

GREAT RICH SUCCESS LIMITED

建議採用的公司中文名稱 Proposed Chinese Company Name

大展鴻圖有限公司

The company names must be the same as those stated in the name clause of the company's Articles of Association (AA).

9 2 公司類別 Type of Company

請在適用的空格內加上 ✓ 號 Please tick the relevant box

私人 Private

公眾 Public

'Private company' is a company which has included in its AA the restrictions under section 11 of the Companies Ordinance (Cap. 622).

10 3 公司在香港的註冊辦事處的建議地址

Proposed Address of the Company's Registered Office in Hong Kong

Room 8801-8803, 88/F

Happy Commercial Building

1 Queensway

香港 / HONG KONG

(本處不接納「轉交」地址或郵政信箱號碼 'Care of' addresses or post office box numbers are not acceptable)

11 4 電郵地址 Email Address

greatrichsuccess@abc.com

4 提交人資料 Presenter's Reference

姓名 Name: QualiSec Services Limited  
地址 Address: Room 708, 7/F,  
Lucky Commercial Building,  
2 Nathan Road, Kowloon,  
Hong Kong

電話 Tel: 1234 5678 傳真 Fax: 8765 4321  
電郵 Email: qss@abc.com  
權號 Reference: qss/grs-NNC1

請勿填寫本欄 For Official Use

Please fill in the Presenter's Reference section. The Companies Registry (CR) will notify the presenter by fax to collect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and th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in person. A written authorisation will be required if the presenter sends a representative to collect the certificates. To facilitate communication, please provide the fax number and telephone number in Hong Kong.



表格 Form **NNC1**

Note: A company may have one founder member who must take up at least one share of the company. The following is an example of four founder members taking up a total of 10,000 ordinary shares, of total amount HKD 20,000, and all amount to be paid up.

**12 5 公司組成時的股本及最初的股份持有情況**  
Share Capital and Initial Shareholdings on the Company's Formation

股份的類別 (如普通股/優先股等) Class of Shares (e.g. Ordinary/ Preference etc.)	建議發行的 股份總數 Total Number of Shares Proposed to be Issued	貨幣 Currency	創辦成員認購的 股本總額 Total Amount of Share Capital to be Subscribed by Founder Members	建議發行的股份的 將要繳付或視為 已繳付的總款額 Total Amount to be Paid Up or to be Regarded as Paid Up on the Shares Proposed to be Issued	建議發行的股份的 尚未繳付或視為 尚未繳付的總款額 Total Amount to Remain Unpaid or to be Regarded as Unpaid on the Shares Proposed to be Issued
			(a)	(b)	(a) - (b)
Ordinary	10,000	HKD	20,000	20,000	0
The share capital must be the same as that stated in the capital clause of the AA.					
總值 Total	10,000	HKD	20,000	20,000	0
Equals to the total of A, B, C and D marked in Section 6 and Continuation Sheet A.					

**13 5A 股份所附帶的權利的詳情 Particulars of Rights Attached to Shares**  
(只適用於發行超過一類股份的公司 Only applicable to company issuing more than 1 class of shares)

股份的類別 (如普通股/ 優先股等) Class of Shares (e.g. Ordinary/ Preference etc.)	附帶的權利的詳情 (包括表決權：在分派股息時參與該項分派的權利； 在分派股本時參與該項分派的權利；該類別股份是否屬可贖回股份等) Particulars of Rights Attached (Including voting rights; rights to participate in a distribution as respects dividends; rights to participate in a distribution as respects capital; whether the shares are redeemable etc.)





表格 Form **NNC1**

14 6 創辦成員 Founder Members

(如超過兩名創辦成員，請用續頁 A 填報 Use Continuation Sheet A if more than 2 founder members)

1 中文姓名／名稱  
Name in Chinese

高鼓植

英文姓名／名稱  
Name in English

Ko Goo Jik Jackie

地址  
Address

Flat A, 18/F, Fortune Mansion

1 Cheung Sha Wan Road

Kowloon

國家／地區  
Country / Region

HONG KONG

認購的股本 Share Capital to be Subscribed	股份的類別 (如普通股／優先股等) Class of Shares (e.g. Ordinary/Preference etc.)	建議向該成員發行的股份數目 Shares Proposed to be Issued to the Member		
		總數 Total Number	貨幣 Currency	總款額 Total Amount
	Ordinary	3,000	HKD	6,000
			A	
	<b>總值 Total</b>	3,000	HKD	6,000

2 中文姓名／名稱  
Name in Chinese

一本萬利有限公司

英文姓名／名稱  
Name in English

Thousandfold Profits Limited

地址  
Address

Room 2808-2810, 28/F

Happy Commercial Building

1 Queensway

國家／地區  
Country / Region

HONG KONG

認購的股本 Share Capital to be Subscribed	股份的類別 (如普通股／優先股等) Class of Shares (e.g. Ordinary/Preference etc.)	建議向該成員發行的股份數目 Shares Proposed to be Issued to the Member		
		總數 Total Number	貨幣 Currency	總款額 Total Amount
	Ordinary	2,000	HKD	4,000
			B	
	<b>總值 Total</b>	2,000	HKD	4,000



表格 Form **NNC1**

Note: A company may have only one company secretary who can be a natural person or a body corporate. The following is an example of two company secretaries.

**16 7 首任公司秘書 First Company Secretary**  
(如超過一名公司秘書屬自然人或法人團體，請用續頁 B 填報 Use Continuation Sheet B if more than 1 company secretary is a natural person or a body corporate)

**A. 公司秘書(自然人) Company Secretary (Natural Person)**

中文姓名 Name in Chinese

英文姓名 Name in English

姓氏 Surname  For company secretary who is a natural person, his / her correspondence address in Hong Kong should be given. Non-Hong Kong addresses and post office box numbers are not acceptable.

名字 Other Names

前用姓名 Previous Names

中文 Chinese  英文 English

別名 Alias

中文 Chinese  英文 English

**16** 香港通訊地址 Hong Kong Correspondence Address

Please provide the Hong Kong Identity Card number or the passport number and issuing country (as appropriate). If the company secretary does not have a Hong Kong Identity Card or a passport of any country, please state 'NIL' in the boxes provided.

(本處不接納郵政信箱號碼 Post office box numbers are not acceptable)

**17** 電郵地址 Email Address

**18** 身分證明 Identification

(a) 香港身分證號碼 Hong Kong Identity Card Number

(b) 護照 Passport

簽發國家 Issuing Country 號碼 Number

**20 B. 公司秘書(法人團體) Company Secretary (Body Corporate)**

中文名稱 Name in Chinese  If the company secretary is a firm, please state the name of the firm in these boxes.

英文名稱 Name in English

**19** 香港地址 Hong Kong Address

For company secretary which is a body corporate, the address of its registered or principal office in Hong Kong should be given. Non-Hong Kong addresses, 'care of' addresses and post office box numbers are not acceptable.

(本處不接納「轉交」地址或郵政信箱號碼 'Care of' addresses or post office box numbers are not acceptable)

**17** 電郵地址 Email Address

公司編號 Company Number

Please fill in the Company Number registered in the CR.



表格 Form **NNC1**

Note: A 'private company' may have one or more directors and at least one of them must be a natural person. A 'public company' must have at least two directors and all directors must be natural persons.

5 8 首任董事 First Directors

A. 董事(自然人) Director (Natural Person)

(如超過一名董事屬自然人，請用續頁 C 填報 Use Continuation Sheet C if more than 1 director is a natural person)

中文姓名 Name in Chinese 高鼓植

英文姓名 Name in English 姓氏 Surname Ko

名字 Other Names Goo Jik Jackie

前用姓名 Previous Names Nil Nil

別名 Alias Nil Jack Ko

21 住址 Residential Address Flat A, 18/F, Fortune Mansion, 1 Cheung Sha Wan Road, Kowloon, HONG KONG

22 電郵地址 Email Address jackko@abc.com

23 身分證明 Identification (a) 香港身分證號碼 Hong Kong Identity Card Number A B 8 8 8 8 8 8 (8) (b) 護照 Passport

25 提示 Advisory Note 所有公司董事均應閱讀公司註冊處編製的《董事責任指引》，並熟悉該指引所概述的董事一般責任。 All directors of the company are advised to read 'A Guide on Directors' Duties' published by the Companies Registry and acquaint themselves with the general duties of directors outlined in the Guide.

26 出任董事職位同意書 Consent to Act as Director

請在適用的空格內加上 ✓ 號 Please tick the relevant box

本人同意在公司成立為法團時擔任其董事，並確認本人已年滿 18 歲。 I consent to be a director of the company on its incorporation and confirm that I have attained the age of 18 years.

簽署 Signed Jackie Ko

出任董事職位同意書會於公司成立為法團的日期後 15 日內交付登記。 The Consent to Act as Director will be delivered for registration not later than 15 days after the date of incorporation of the company.



表格 Form **NNC1**

Note: A 'private company' may have one or more directors and at least one of them must be a natural person. A 'public company' must have at least two directors and all directors must be natural persons.

8 首任董事 First Directors (續上頁 cont'd)

B. 董事(法人團體) Director (Body Corporate)

(如超過一名董事屬法人團體，請用續頁D填報 Use Continuation Sheet D if more than 1 director is a body corporate)

中文名稱  
Name in Chinese

一本萬利有限公司

英文名稱  
Name in English

Thousandfold Profits Limited

24 地址  
Address

Room 2808-2810, 28/F  
Happy Commercial Building  
1 Queensway

國家/地區  
Country/Region

HONG KONG

(本處不接納「轉交」地址或郵政信箱號碼 'Care of' addresses or post office box numbers are not acceptable)

If a non-Hong Kong address is given, please state the name of the country / region.

22 電郵地址  
Email Address

thousandfold@abc.com

公司編號 Company Number  
(只適用於在香港註冊的法人團體 Only applicable to body corporate registered in Hong Kong)

6999999

25 提示 Advisory Note

所有公司董事均應閱讀公司註冊處編製的《董事責任指引》，並熟悉該指引所概述的董事一般責任。  
All directors of the company are advised to read 'A Guide on Directors' Duties' published by the Companies Registry and acquaint themselves with the general duties of directors outlined in the Guide.

26 出任董事職位同意書 Consent to Act as Director  
請在適用的空格內加上 ✓ 號 Please tick the relevant box

本人獲上述法人團體授權確認上述法人團體同意在公司成立為法團時擔任其董事。  
I, being authorized by the above body corporate, confirm that the body corporate consents to be a director of this company on its incorporation.

If the director chooses to deliver Form NNC3 after incorporation of the company, the founder member who signs this form must check this box to state that the Form NNC3 will be delivered for registration within 15 days after the date of incorporation of the company.

簽署 Signed \_\_\_\_\_  
法人團體的董事/公司秘書/獲授權人士\*  
Director/Company Secretary/Authorized Person of the Body Corporate\*

出任董事職位同意書會於公司成立為法團的日期後 15 日內交付登記。  
The Consent to Act as Director will be delivered for registration not later than 15 days after the date of incorporation of the company.

\*請刪去不適用者 Delete whichever does not apply



表格 Form **NNC1**

Please read the statement carefully before signing this form.

**7 9 創辦成員陳述書 Statement of Founder Member**

本人現核證 I certify that :

- (a) 本人為公司的創辦成員或獲其授權人士(如創辦成員為法人團體)並獲其他創辦成員(如有的話)授權簽署本表格。  
I am a founder member of this company or an authorized person of a founder member, which is a body corporate (if applicable) and am authorized by the other founder members (if any) to sign this incorporation form.
- (b) 名列本表格內的每一名屬自然人的公司秘書通常居於香港。  
Each of the company secretaries named in this form who is a natural person ordinarily resides in Hong Kong.
- (c) 名列本表格內但未簽署「出任董事職位同意書」的每一名董事已同意在公司成立為法團時擔任其董事，每一名屬自然人的董事並且已年滿 18 歲。  
Each of the directors named in this form who has not signed the 'Consent to Act as Director' has consented to be a director of this company on its incorporation and each director who is a natural person has attained the age of 18 years.
- (d) 所有創辦成員已為《公司條例》第 67(1)(a) 條的目的而簽署公司的章程細則，並確認連同本表格交付的公司章程細則的文本的內容，與由所有創辦成員簽署的該等章程細則的內容相同。  
The company's articles have been signed by all founder members for the purposes of section 67(1)(a) of the Companies Ordinance. The contents of the copy of the company's articles delivered together with this form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articles signed by all founder members.
- (e) 本表格所載的資料、陳述及詳情均屬準確，並與公司的章程細則內的資料、陳述及詳情相符。  
The information, statements and particulars contained in this form are accurate and consistent with those contained in the company's articles.
- (f) 公司已遵守《公司條例》中就有關公司註冊的所有規定。  
All the requirements of the Companies Ordinance in respect of the registration of the company have been complied with.

本表格包括下列續頁 This Form includes the following Continuation Sheet(s)

續頁 Continuation Sheet(s)	A	B	C	D
頁數 Number of pages	1	0	1	1

This form must be signed by a founder member. If the founder member is a body corporate, this form must be signed by a director or the company secretary of the body corporate or an authorised person acting on its behalf. Please state both the name of the signatory and the name of the body corporate.

**7 簽署 Signed:**

*Jackie Ko*

姓名 Name : Ko Goo Jik Jackie 日期 Date : 03/03/2014  
創辦成員 Founder Member 日 DD / 月 MM / 年 YYYY



表格 Form **NNC1**

續頁 A Continuation Sheet A

14 創辦成員詳情 (第 6 項) Details of Founder Members (Section 6)

1 中文姓名／名稱  
Name in Chinese

利豐盈

英文姓名／名稱  
Name in English

Lee Fung Ying

地址  
Address

G/F

45 Green Lane

New York

國家／地區  
Country/Region

U.S.A.

認購的股本 Share Capital to be Subscribed	股份的類別 (如普通股／優先股等) Class of Shares (e.g. Ordinary/Preference etc.)	建議向該成員發行的股份數目 Shares Proposed to be Issued to the Member		
		總數 Total Number	貨幣 Currency	總款額 Total Amount
	Ordinary	2,500	HKD	5,000
			C	
	總值 Total	2,500	HKD	5,000

2 中文姓名／名稱  
Name in Chinese

周年旺

英文姓名／名稱  
Name in English

Zhou Nian Wang

地址  
Address

Room 8, 3/F

I Fu Yu Road

Kowloon Tong

國家／地區  
Country/Region

HONG KONG

認購的股本 Share Capital to be Subscribed	股份的類別 (如普通股／優先股等) Class of Shares (e.g. Ordinary/Preference etc.)	建議向該成員發行的股份數目 Shares Proposed to be Issued to the Member		
		總數 Total Number	貨幣 Currency	總款額 Total Amount
	Ordinary	2,500	HKD	5,000
			D	
	總值 Total	2,500	HKD	5,000



表格 Form **NNC1**

續頁 B Continuation Sheet B

Unused Continuation Sheet need not be delivered to the CR.

**15** 首任公司秘書詳情 (第 7 項) Details of First Company Secretary (Section 7)

A. 公司秘書(自然人) Company Secretary (Natural Person)

中文姓名 Name in Chinese

英文姓名 Name in English

姓氏 Surname

名字 Other Names

前用姓名 Previous Names

中文 Chinese

英文 English

別名 Alias

中文 Chinese

英文 English

**16** 香港通訊地址 Hong Kong Correspondence Address   
  
  
香港 / HONG KONG

(本處不接納郵政信箱號碼 Post office box numbers are not acceptable)

**17** 電郵地址 Email Address

**18** 身分證明 Identification

(a) 香港身分證號碼 Hong Kong Identity Card Number

(b) 護照 Passport

簽發國家 Issuing Country

號碼 Number

**20** B. 公司秘書(法人團體) Company Secretary (Body Corporate)

中文名稱 Name in Chinese

英文名稱 Name in English

**19** 香港地址 Hong Kong Address   
  
  
香港 / HONG KONG

(本處不接納「轉交」地址或郵政信箱號碼 Care of addresses or post office box numbers are not acceptable)

**17** 電郵地址 Email Address

公司編號 Company Number









Notes for Completion should be read but need not be delivered to the CR.

《公司條例》(香港法例第 622 章)  
第 67(1)(b)條規定交付的

法團成立表格  
(股份有限公司)

填表須知 — 表格 NNC1

附註

引言

1. 本表格是用以向公司註冊處處長(「處長」)申請成立一間具法團地位的股份有限公司，並**必須連同公司的章程細則的文本一併交付**。
2. 根據《商業登記條例》(香港法例第 310 章) 第 5A(1) 及 5D(2) 條的規定，提出成立法團的申請人須把「致商業登記署通知書」(IRBR1)和訂明的商業登記費及徵費連同本表格一併交付，否則公司註冊處不會接納其申請。
3. 請劃一以中文或英文填報各項所需資料。如以中文填報，請用繁體字。以手寫方式填寫的表格或不會被公司註冊處接納。
4. 請提供提交人資料。除非有特別事項需要公司註冊處注意，否則無須另加附函。公司註冊處會以傳真方式通知提交人親身領取「公司註冊證書」及「商業登記證」。如提交人委託他人代領，需簽署授權書。
5. 你可郵寄本表格到「香港金鐘道 66 號金鐘道政府合署 14 樓公司註冊處」，或親身到上址交付。如以郵寄方式交付表格而處長並沒有收到該表格的話，則該表格不會視作曾為遵從《公司條例》中有關條文的規定而交付處長。

費用

6. 本表格必須連同正確的註冊費用一併交付，否則公司註冊處不會接納。有關所需費用的詳情，請參閱《主要服務收費表》資料小冊子及《商業登記費及徵費收費表》。如以港幣劃線支票繳付費用，抬頭請註明「公司註冊處」。請勿郵寄現金。

簽署

7. 本表格必須由一名名列本表格內的創辦成員簽署**並核證第 9 項「創辦成員陳述書」內的各項陳述**。如創辦成員屬法人團體，本表格必須由該法人團體的董事、公司秘書或獲該法人團體授權的人士簽署。公司註冊處不接納未簽妥的表格。

建議採用的公司名稱 (第 1 項)

8. (a) 公司名稱可用英文或中文註冊。公司亦可同時註冊一個英文名稱和一個中文名稱。有關擬訂公司名稱須注意的事項，請參閱《香港公司名稱註冊指引》。
- (b) 在本項填報的建議採用的公司名稱，必須與《公司條例》第 81 條所規定的公司章程細則的**名稱條款**所述的公司名稱相同。如建議採用的公司名稱有任何錯誤，公司註冊處可拒絕該註冊成立公司的申請，而所繳交的存放文件費用亦不會獲得退還。

公司類別 (第 2 項)

9. 如公司的章程細則限制成員轉讓股份的權利、將成員最高人數限於 50 人及禁止邀請公眾人士認購該公司的任何股份或債權證；而公司亦不屬擔保有限公司，該公司即屬「私人公司」。如公司既不屬私人公司亦不屬擔保有限公司，則公司即屬「公眾公司」。如有需要，請就選擇合適的公司類別尋求獨立的法律意見。

公司在香港的註冊辦事處的建議地址 (第 3 項)

10. 請在本項填報公司在香港的註冊辦事處的建議地址的詳細地址。本處不接納非香港地址、「轉交」地址或郵政信箱號碼。建議的地址須自公司成立為法團的日期起，作為其註冊辦事處地址，直至公司根據《公司條例》第 658(3)條向處長交付有關該地址的更改通知書(表格 NR1)為止。



**電郵地址 (第 4 項)**

11. 請提供公司的電郵地址(如有的話)以方便聯絡。如電郵地址其後有任何更改，請以表格 NR1 通知公司註冊處。

**公司組成時的股本及最初的股份持有情況 (第 5 項)**

12. 股份有限公司必須填報其組成時的股本及最初的股份持有情況。以下例子只供參考。

例： 甲乙丙有限公司建議在組成時發行 10,000 股普通股，而創辦成員將會認購的股本總額為 20,000 元，將會繳付或視為已繳付的款額為 10,000 元。

股份的類別 (如普通股／優先股等) Class of Shares (e.g. Ordinary/ Preference etc.)	建議發行的 股份總數 Total Number of Shares Proposed to be Issued	貨幣 Currency	創辦成員認購的 股本總額 Total Amount of Share Capital to be Subscribed by Founder Members	建議發行的股份的 將要繳付或視為 已繳付的總款額 Total Amount to be Paid Up or to be Regarded as Paid Up on the Shares Proposed to be Issued	建議發行的股份的 尚未繳付或視為 尚未繳付的總款額 Total Amount to Remain Unpaid or to be Regarded as Unpaid on the Shares Proposed to be Issued
			(a)	(b)	(a) - (b)
普通股	10,000	港元	20,000	10,000	10,000
總值 Total	10,000	港元	20,000	10,000	10,000

**股份所附帶的權利的詳情 (第 5A 項)**

13. 如公司的股本分為不同類別的股份，請就每一類股份述明該類別股份—
- (a) 所附帶的表決權的詳情，包括只在某些情況下產生的權利；
  - (b) 所附帶的、在分派股息時參與該項分派的權利的詳情；
  - (c) 所附帶的、在分派股本時(包括清盤時進行的分派)參與該項分派的權利的詳情；及
  - (d) 是否屬可贖回股份。

**創辦成員 (第 6 項)**

14. 請填報每名創辦成員的資料、公司建議在其組成時向該成員發行的股份數目，及該成員將會在該公司組成時認購的股本總額。

**首任公司秘書及董事 (第 7 及 8 項)**

15. (a) 公司的首任公司秘書及董事的詳情，必須在本表格第 7 及 8 項填報。
- (b) 每間在香港成立為法團的私人公司必須有一家公司秘書及最少一名屬自然人的董事，公司秘書職位 **不得** 同時由公司的唯一董事兼任。只有一名董事的私人公司 **不得** 委任一個以該董事為唯一董事的法人團體作為公司秘書。
- (c) 每間在香港成立為法團的公眾公司必須有一家公司秘書及最少兩名董事，公司秘書職位可由其中一名董事兼任。法人團體 **不得** 出任公眾公司的董事。



### 首任公司秘書 (第 7A 及 7B 項)

16. 如公司秘書屬自然人，必須通常居於香港，但只須填報其在香港的通訊地址。本處不接納非香港地址或郵政信箱號碼。
17. 請提供公司秘書的電郵地址(如有的話)以方便聯絡。如電郵地址其後有任何更改，請以表格 ND2B 通知公司註冊處。
18. 請填報屬自然人的公司秘書的香港身分證號碼。如該人並非香港身分證持有人，請填報其所持護照的號碼及簽發國家。如該人並非香港身分證持有人，亦沒有任何國家的護照，則請在有關的空格內填上「無」。
19. 如公司秘書屬法人團體，請註明其在香港的註冊辦事處或主要辦事處的地址。本處不接納非香港地址、「轉交」地址或郵政信箱號碼。
20. 如某商號的所有合夥人為公司的聯名秘書，請在供公司秘書(法人團體)填報的空格內(第 7B 項)填報商號名稱及其在香港的主要辦事處的地址。本處不接納非香港地址、「轉交」地址或郵政信箱號碼。

### 首任董事 (第 8A 及 8B 項)

21. 請填報屬自然人的董事的通常住址。如屬非香港地址，請同時填報「國家／地區」一欄。本處不接納「轉交」地址或郵政信箱號碼。
22. 請提供董事的電郵地址(如有的話)以方便聯絡。如電郵地址其後有任何更改，請以表格 ND2B 通知公司註冊處。
23. 請填報屬自然人的董事的香港身分證號碼。如該人並非香港身分證持有人，請填報其所持護照的號碼及簽發國家。如該人並非香港身分證持有人，亦沒有任何國家的護照，則請在有關的空格內填上「無」。
24. 如董事屬法人團體，請註明其註冊辦事處或主要辦事處的地址。如屬非香港地址，請同時填報「國家／地區」一欄。本處不接納「轉交」地址或郵政信箱號碼。
25. 所有公司董事均應閱讀公司註冊處編製的《董事責任指引》，並熟悉該指引所概述的董事一般責任。公司應把該指引發給董事參考。該指引可於公司註冊處網頁([www.cr.gov.hk](http://www.cr.gov.hk)) 閱覽或下載，印文本亦可於香港金鐘道 66 號金鐘道政府合署 13 和 14 樓公司註冊處的詢問處索取。
26. 每一名董事均須作出陳述，同意在公司成立為法團時擔任其董事。董事可以在本表格的「出任董事職位同意書」上簽署，或在公司成立為法團的日期後 15 日內向處長交付已填妥及簽署的表格 NNC3 一「出任首任董事職位同意書」。如董事屬法人團體，同意書必須由該法人團體的董事、公司秘書或獲該法人團體授權的人士簽署。



## INCORPORATION FORM (COMPANY LIMITED BY SHARES)

For the purposes of section 67(1)(b) of Companies Ordinance (Cap. 622)

### Notes for Completion of Form NNC1

#### Introduction

1. This form should be used for applying to the Registrar of Companies (the Registrar) for incorporation of a company limited by shares and ***must be accompanied by a copy of the company's articles***.
2. According to sections 5A(1) and 5D(2) of the Business Registration Ordinance (Cap. 310), **an applicant for company incorporation must deliver a Notice to Business Registration Office (IRBR1) and the prescribed business registration fee and levy together with this form**. Otherwise, the application will be rejected by the Companies Registry.
3. Please fill in all particulars and complete all items consistently in either Chinese or English. Traditional Chinese characters should be used if the form is completed in Chinese. Please note that handwritten forms may be rejected by the Companies Registry.
4. Please complete the Presentor's Reference. Unless the presentor needs to raise a specific issue for the attention of the Companies Registry, no covering letter is required. The Companies Registry will notify the presentor by fax to collect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and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in person. A written authorization will be required if the presentor sends a representative to collect the certificates.
5. This form can be delivered by post or in person to "The Companies Registry, 14th floor, Queensway Government Offices, 66 Queensway, Hong Kong". If the form is delivered by post but the Registrar has not received it, the form will not be regarded as having been delivered to the Registrar in satisfac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 of the Companies Ordinance.

#### Fee

6. This form must be delivered with the correct registration fee. A form which is not delivered with the correct fee will be rejected by the Companies Registry. Please refer to the information pamphlet on 'Price Guide to Main Services' and the 'Business Registration Fee and Levy Table' for the correct fee payable. If the fee is paid by cheque, the cheque should be crossed and issued in Hong Kong Dollars payable to 'Companies Registry'. Please do not send cash.

#### Signature

7. A founder member named in this form must sign this form and ***certify the statements made in the Statement of Founder Member in Section 9***. If the founder member is a body corporate, this form must be signed by a director, the company secretary of the body corporate or an authorized person acting on its behalf. A form which is not properly signed will be rejected by the Companies Registry.

#### Proposed Company Name (Section 1)

8. (a) A company name may be in English or in Chinese. A company may also adopt both an English name and a Chinese name. Please refer to the 'Guideline on Registration of Company Names for Hong Kong Companies' for the points to note when choosing a company name.  
(b) The company name(s) stated in this Section should be identical to the name(s) stated in the ***Name Clause*** of the articles of the company as required under section 81 of the Companies Ordinance. An application for incorporation with errors in the proposed company name(s) may be rejected by the Companies Registry and the lodgement fee paid will not be refunded.

#### Type of Company (Section 2)

9. A company is a 'private company' if its articles restrict a member's right to transfer shares, limit the number of members to 50, and prohibit any invitation to the public to subscribe for any shares or debentures of the company; and it is not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 company is a 'public company' if it is not a private company and not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Please seek independent legal advice on the choice of an appropriate type of company, if necessary.



**Proposed Address of the Company's Registered Office in Hong Kong (Section 3)**

10. The full proposed address of the company's registered office in Hong Kong must be stated in this Section. Non-Hong Kong addresses, 'care of' addresses or post office box numbers are not acceptable. The proposed address shall be the address of the company's registered office with effect from the date of its incorporation until a notice of change in respect of the address in Form NR1 is delivered to the Registrar under section 658(3) of the Companies Ordinance.

**Email Address (Section 4)**

11. Please provide the email address of the company, if any, to facilitate electronic communication. If there are any subsequent changes in the email address, please notify the Companies Registry by completing Form NR1.

**Share Capital and Initial Shareholdings on the Company's Formation (Section 5)**

12. A company limited by shares must state the details of the share capital and initial shareholdings on its formation. An example is provided below for reference only.
- e.g. ABC Company Limited proposes to issue 10,000 ordinary shares on its formation. The total amount of the share capital to be subscribed by the founder members is HKD20,000, of which the amount to be paid up or to be regarded as paid up will be HKD10,000.

股份的類別 (如普通股／優先股等) Class of Shares (e.g. Ordinary/ Preference etc.)	建議發行的 股份總數 Total Number of Shares Proposed to be Issued	貨幣 Currency	創辦成員認購的 股本總額 Total Amount of Share Capital to be Subscribed by Founder Members	建議發行的股份的 將要繳付或視為 已繳付的總款額 Total Amount to be Paid Up or to be Regarded as Paid Up on the Shares Proposed to be Issued	建議發行的股份的 尚未繳付或視為 尚未繳付的總款額 Total Amount to Remain Unpaid or to be Regarded as Unpaid on the Shares Proposed to be Issued
			(a)	(b)	(a) - (b)
Ordinary	10,000	HKD	20,000	10,000	10,000
總值 Total	10,000	HKD	20,000	10,000	10,000

**Particulars of Rights Attached to Shares (Section 5A)**

13. If the share capital of the company is to be divided into different classes of shares, please state for each class of shares —
- (a) the particulars of any voting rights attached to shares in that class, including rights that arise only in certain circumstances;
  - (b) the particulars of any rights attached to shares in that class, as respects dividends, to participate in a distribution;
  - (c) the particulars of any rights attached to shares in that class, as respects capital, to participate in a distribution (including on a winding up); and
  - (d) whether or not shares in that class are redeemable shares.

**Founder Members (Section 6)**

14. Please provide the details of each founder member, the number of shares that the company proposes to issue to the member and the total amount of share capital to be subscribed by the member on the company's formation.



### First Company Secretary and Directors (Sections 7 and 8)

15. (a) The details of the first company secretary and directors must be reported in Sections 7 and 8 of this form.
- (b) Every private company incorporated in Hong Kong must have a company secretary and at least one director who is a natural person. The sole director of a private company must **not** also be the company secretary. A private company having only one director must **not** have a body corporate as its company secretary the sole director of which is the sole director of the private company.
- (c) Every public company incorporated in Hong Kong must have a company secretary and at least two directors, one of whom may be the company secretary. A body corporate must **not** be a director of a public company.

### First Company Secretary (Sections 7A and 7B)

16. If the company secretary is a natural person, he or she must ordinarily reside in Hong Kong, but he or she is only required to provide the **correspondence address in Hong Kong**. Non-Hong Kong addresses or post office box numbers are not acceptable.
17. Please provide the email address of the company secretary, if any, to facilitate electronic communication. If there are any subsequent changes in the email address, please notify the Companies Registry by completing Form ND2B.
18. The Hong Kong Identity Card number or, in the absence of which, the number and issuing country of the passport of the company secretary who is a natural person should be given. If he or she holds neither a Hong Kong Identity Card nor a passport, please state 'Nil' in the boxes provided.
19. If the company secretary is a body corporate, the address of its registered or principal office in **Hong Kong** should be given. Non-Hong Kong addresses, 'care of' addresses or post office box numbers are not acceptable.
20. If all the partners in a firm are joint company secretaries of the company, please state the name of the firm and the address of its principal office in **Hong Kong** in the boxes provided for Company Secretary (Body Corporate) (Section 7B). Non-Hong Kong addresses, 'care of' addresses or post office box numbers are not acceptable.

### First Directors (Sections 8A and 8B)

21. Please provide the **usual residential address** of a director who is a natural person. If a non-Hong Kong address is given, please also complete the box for 'Country/Region'. 'Care of' addresses or post office box numbers are not acceptable.
22. Please provide the email address of the director, if any, to facilitate electronic communication. If there are any subsequent changes in the email address, please notify the Companies Registry by completing Form ND2B.
23. The Hong Kong Identity Card number or, in the absence of which, the number and issuing country of the passport of a director who is a natural person should be given. If he or she holds neither a Hong Kong Identity Card nor a passport, please state 'Nil' in the boxes provided.
24. If the director is a body corporate, the address of its registered or principal office should be given. If a non-Hong Kong address is given, please also complete the box for 'Country/Region'. 'Care of' addresses or post office box numbers are not acceptable.
25. All directors of the company are advised to read 'A Guide on Directors' Duties' published by the Companies Registry and acquaint themselves with the general duties of directors outlined in the Guide. Companies should provide copies of the Guide to their directors for information and reference. The Guide is accessible on the Companies Registry's website ([www.cr.gov.hk](http://www.cr.gov.hk)). Hard copies are also available at the information counters of the Companies Registry on the 13th and 14th floors of the Queensway Government Offices, 66 Queensway, Hong Kong.
26. Every director shall make a statement that he or she has consented to be a director of the company on the company's formation. A director may sign the 'Consent to Act as Director' in this form or complete and sign Form NNC3 — Consent to Act as First Director, which must be delivered to the Registrar not later than 15 days after the date of incorporation of the company. If the director is a body corporate, the statement must be signed by a director, the company secretary of the body corporate or an authorized person acting on its behalf.



## 4 - 홍콩 지주회사 설립과 조세전략

### □ 일반적인 해외 지주회사 설립의 장점

- 각 기업간 통합경영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목표 및 성과 관리에 유리
- 그룹사의 지원기능(인사, 행정, 법무, 마케팅, IT등)을 일원화하여 비용을 절약하고 각 부문의 전문성을 확보
- 해외자회사의 자금을 해외 지주회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현지 조달함으로써 자금조달 비용 절감
- 현지법인의 잠재적 리스크가 본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 홍콩 지주회사의 설립

- 홍콩 지주회사 설립 목적
  - 홍콩과 중국은 1국 2체제 지역으로 무역 물류, 금융 분야에 있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CEPA협정 체결로 홍콩산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
  - 따라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들이 까다로운 중국의 법인설립과 금융규제를 피해 홍콩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 지주회사가 중국법인을 지배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 한국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 지주회사 설립 시 장점
  - 법인 설립 절차가 간단
    - 중국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등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중국당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홍콩 지주회사의 경우 법정자본금에 대한 요구가 없으며 인허가절차 없이 법인등기만 하면 설립절차가 마무리됨





- 외화의 송금이 용이
  - 홍콩은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홍콩에서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 송금하는 절차도 중국에 비해 무척 편리함
  -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외국환 거래 규정이 없어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중국으로부터 송금받는 것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활함
- 자금조달 방법의 다양화
  - 홍콩 법인의 증자는 쉬움(홍콩 상장규정에 따라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홍콩 증시에 상장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가능)
- 투자지분의 명의 변경절차가 간단
  - 홍콩에서는 폐업이나 투자 철수시 지분 명의 변경에 대한 유관기관의 허가 또는 합자 파트너의 동의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중국법인 철수가 모기업 직접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 없어 절세 효과가 있음
  - 또한 중국 자회사를 편입할 때 발생하는 거래세 (Stamp Duty)가 면제되며 홍콩 자회사에 대해서도 0.2%에 불과함
- CEPA규정을 활용한 중국 진출용이
  - CEPA 협정에 의거 홍콩법인이 중국으로 수출시 일부 품목의 관세가 면제되나 아래의 5개의 기준을 충족해야 홍콩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1. 홍콩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제공사
2. 홍콩 내 법인 설립, 홍콩 내에서 3~5년간 사업 이력 보유
3. 홍콩에 법인세 납부
4. 직원의 50% 이상을 홍콩인으로 고용
5. 중국 수출물건의 30%이상을 홍콩에서 생산 혹은 가공한 제품



## 5 - 홍콩의 금융제도

### □ 금융제도

#### ○ 특징

- 공식적인 중앙은행이 없고, 따라서 금융기관의 관리 및 감독기능이 거의 없음. 이는 홍콩 자체가 철저한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조달하거나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고 이 점이 국제금융센터로서 발전하게 된 주요 기반으로 작용

#### ○ 대출

- 대출 심사기준에 부합했을 경우에만 신용대출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담보 제공요구
- 대부분 한국기업의 현지법인 경우 한국계 은행 해외 지점 및 현지법인 금융기관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한국 본사의 지급보증 및 보증신용장을 개설함으로써 홍콩 초기 필요 자금을 현지에서 조달가능
- 홍콩 설립 법인은 제3국에 소재한 법인의 현지금융을 위해 담보제공, 지급보증 등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 한국계 은행 이용

- 현재 홍콩에 진출해 있는 한국 은행들은 주로 기업금융을 취급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소매금융을 취급하기 시작함



- 홍콩진출 주요 은행

은행	위치	비고
기업은행	Rm3113, Two Pacific Place, Admiralty, HK	한국계은행은 ATM 사용불가, 구좌개설이 비교적 용이(홍콩ID카드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관광비자로는 불가능)
외환은행	31/F, Far East Finance Center, 16 Harcourt Rd, HK	
신한은행	Unit 7703, International Commerce Centre, 1 Austin Road West, Kwoloon, HK	
우리은행	Suite 1401, Two Pacific Place, 88 Queensway, HK	
하나은행	Suite 3314-3316, 33/F, Two IFC, 8 Finance St, Central, HK	

○ 금리제도

- 홍콩은 3곳(HSBC, Standard Chartered 은행, 중국은행)의 시중은행에서 서로 다른 모양의 돈을 발권함. 20,50,10,500,1000달러 권종을 3곳에서 7 : 2 : 1의 비율로 발행하며 동전과 10달러는 홍콩 정부에서 발행
- 이들 은행이 홍콩 달러를 발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미국 달러화를 금융관리국에 사전예치 하여야 함
- 홍콩의 금리는 홍콩달러화가 미 달러화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와 밀접하게 움직임
- 미 FRB가 Federal Funds Rate를 인하하는 경우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동금리에 연계되어 있는 기준금리를 즉각 인하하고 있음
- 홍콩 금융관리국이 재할인창구를 통해 은행에 자금을 공급할 때 적용하는 재할인 금리의 일종으로서 Federal Funds Rate에 연계(Federal Funds Rate 목표금리 + 1.5%P)은행의 예금금리는 2001.7.3. 저축예금의 금리상한 및 당좌예금의 이자지급 제한제도가 폐지되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행별로 차등화 되어 있음
- 은행의 대출금리는 HSBC, Standard Chartered 은행, 중국은행 등 대형 은행들이 우대대출금리를 정하면 여타은행들이 이를 기준으로 운용



<홍콩 은행 업무 팁>

- 계좌의 종류에 따라 매달 일정금액의 계좌 이용료를 지급해야 함
- 최소한의 잔고가 없는 경우 최고 400HKD의 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홍콩의 은행은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지 않음. 홍콩은행이 발행하는 수표는 모두 개인수표(한국의 가계수표 개념)로 은행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내용을 적은 후에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됨
- 수표를 받은 사람은 개인 수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은행에 제시해야 하며 만약, 은행 잔고가 부족한 경우 수표 발행인은 벌금과 함께 신용에 타격을 받고 수표소지자는 해당금액을 받지 못하게 됨
- 각종 공과금, 학교 등록금 납부 등 수표가 일상생활에 널리 쓰이기 때문에 수표를 발급하지 못하면 생활에 지장이 많으므로 당좌계좌 잔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도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법인계좌 개설방법

- 홍콩은행의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은행의 인터뷰가 필수이므로 등재된 이사 전원이 직접 방문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밟아야 함
- 영문사업계획서 등 사업과 관련된 서류 지참
- 모든 주주와 이사의 여권(이사는 원본, 주주는 사본)과 영문거주지 증명 원본 필요
- 계좌개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음(꼭 방문전 문의)
- 외국계 은행은 이사 중 한 분이 영어나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며 사전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이 원칙
- 당일 발급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 평균 1~2주 후 개설(은행별 차이)

○ 홍콩현지 금융업무 동향

- 외환거래가 자유로우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금융업체에 철저히 책임을 물음
- 2013년 5월 이후 미국에서 자금세탁 금지 압박 및 최근 'Bank of India'의 자금세탁으로 인해 150만불 벌금 부과 등으로 인해 계좌개설의 검토가 강화됨
- 계좌개설 업무가 강화되어 계좌개설을 거절당할 수 있으므로 홍콩진출기업은 홍콩내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음
- 자금세탁이 발생할 경우 은행이 처벌받으므로 송·수신시 송금자와 수신자의 신원 및 자금출처 미확인시 거래 불가
- 고객에 대한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비활동성 계좌 폐쇄



○ 홍콩의 자금세탁 방지규정

- 홍콩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정회원으로서, FATF가 제시하는 자금세탁방지 권고사항 40개를 모두 이행중임

※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89년 파리 G7 정상회의에서 자금세탁방지과 이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한 각국 정상들의 지시에 의해 설립된 정부간 기구로,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 34개 국가와 2개 기구 등 총 36개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 정회원 가입

- 홍콩의 금융기관들은 FATF 권고사항에 의거 혐의거래에 대하여 JFIU (홍콩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하며, 이에 따라 일일단위로 금융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있음
- 또한 계좌 개설시 고객의 신분 및 주소지 확인을 위해 홍콩 ID카드나 여권원본, 홍콩 내 거주지 공과금 고지서 등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거주지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은행도 있음
- 홍콩은 외화 송금이 자유롭지만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은행 및 국가차원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므로 모든 은행거래에는 그에 따른 증빙을 갖춰 놓는 것이 필요함

□ 외화관리

○ 외화관리

- 홍콩은 환전, 해외송금 및 입금, 외화예금이 모두 자유로움
- 홍콩에는 중앙은행이 없고 정부기구로 금융 관리국이 있을 뿐이고, 금융 관리국(HKMA)이 외환기금관리국 및 은행업 감리처의 기능을 통합한 중앙은행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
- 1983.10월부터 현재까지 홍콩달러를 미 달러와 일정선에서 교환율을 링크하는 Peg System을 사용



**홍콩의 페그 제도(Peg System)란?**

일종의 변형된 고정환율제도로 ‘통화 위원회 제도’라고도 함  
 페그제도는 달러 등 기축통화에 대한 자국화폐의 교환비율을 정해놓고 이를 고시한 다음 이 비율로 무한정 교환해주기로 약속한 제도임

즉, 이 비율이 그 나라의 환율이 되는 것임

홍콩도 1983년부터 페그제도를 도입하여 홍콩달러의 가치를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에 고정시켜 1USD=7.75~7.85 HKD의 비율로 계산(즉 1달러 들어오면 7.8홍콩달러가 공급되는 시스템, 미국달러가 국내에 유입되면 그 만큼 자국통화를 시장에 방출하고, 미국달러가 국외로 유출되면 그 만큼 자국통화를 시장에서 회수)

자본 유출입의 조정은 환율이 아니라, 금리변동에 의해 결정됨  
 해외자본유출입변동 → 통화량 변동 → 금리변동 → 대내외금리차결정 → 해외자본유출입량 균형점 찾아 조정

이 제도하에 다른 통화의 가치는 미국 달러가치를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임. 예를 들면 미국달러화에 대한 마르크화의 가치가 변하면 그만큼 마르크화와 홍콩 달러의 가치도 조정되는 것임

- 홍콩은행의 위안화 거래 허용 및 위안화 무역결제 시행
  - 중국은 위안화를 세계의 기축 통화로 만들고자 홍콩을 통한 위안화 통용 확대를 추진해옴
  - 2009년 7월부터 시행된 위안화 무역결제로 홍콩 및 마카오 기업들은 중국 내 상하이와 광둥성 4개도시의 기업들과 위안화 무역거래가 가능해져 수출업체들이 3~5% 송금 및 환전 비용이 절감되고 홍콩은행에서 위안화 저축, 환전, 송금,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발행, 대출 및 채권 발행 등의 위안화 관련 업무를 제공받고 있음
  
- 자금조달 용이
  - 과거에는 중국 기업이 해외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홍콩 증시에 상장했지만 현재는 중국 거대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기업이 홍콩에서 상장하고 있음



- 최근 홍콩 - 상하이 증권 거래소 간 주식거래 자유화(후강통)로 중국과 동남아를 공략하려는 해외 기업이 홍콩 증시로 몰려들고 있으며 홍콩행을 택하는 해외 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후강통 : 상해거래소와 홍콩거래소의 교차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沪(물이름호[Hù])는 상해의 별칭이며 港(항구항,통할홍[gǎng])은 홍콩을 의미함. 즉, 상해와 홍콩이 통한다는 의미로 상해와 홍콩거래소의 교차거래 제도를 후강통이라 부름. 후강통 제도를 통해서 중국 본토 투자자들은 홍콩시장에 직접투자가 가능해지고 해외투자자또한 홍콩시장을 통해 중국 상해A주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음

## 6 - 홍콩의 관세제도

### □ 일반 관세

- 자유무역정책으로 일반 수출입 화물에 대해 관세가 없음
  - 다만 담배, 술(알코올 30도 이상), 메틸알코올, 탄화수소 4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 자동차의 경우는 고율의 등록세(차종별 과세가액 × 등록세율)가 부과됨

품 목	상세품목	과세율
주 류 (Liquor)	섭씨 20°C의 온도에서 알코올함량 30%이상 주류	100%
	섭씨 20°C의 온도에서 알코올함량 30%미만의 주류(와인제외)	0%
	와인	0%
담 배 (Tobacco)	수입 담배	HK\$ 1,906 /1000개피
	수입 시가	HK\$ 2,455 / kg
	중국 제조 담배	HK\$ 468 / kg
	담배 제조 목적이 아닌 제조된 그 이외의 모든 담배	HK\$ 2,309 / kg



품 목	상세품목	과세율
탄화수소 (Hydrocarbon Oil)	항공기 연료	HK\$ 6.51 / liter
	가연 가솔린	HK\$ 6.82 / liter
	무연가솔린	HK\$ 6.06 / liter
	디젤 연료	HK\$ 2.89 / liter
	Euro V diesel	HK\$ 0 / liter
메틸알콜 (Methyl Alcohol)	섭씨 20°C의 온도에서 메틸알코올과 그 혼합물의 알코올 농도가 30% 이하인 경우	HK\$ 840 / hectolitre
	섭씨 20°C의 온도에서 메틸알코올과 그 혼합물의 알코올 농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	HK\$ 840/hectolitre + [ HK\$ 28.10/hectolitre (30%를 초과하는 1%마다) ]

<자동차 등록세율>

구 분	세 율
승 용 차	
HK\$150,000 이하	자동차 판매가격 × 40%
HK\$150,000 초과 HK\$300,000 이하	HK\$150,000 × 40% + HK\$150,000초과 금액 × 75%
HK\$300,000 초과 HK\$500,000 이하	HK\$150,000 × 40% + HK\$150,000 × 75% + K\$300,000초과 금액 × 100%
HK\$500,000 초과	HK\$150,000 × 40 + HK\$150,000 × 75% + HK\$200,000 × 100% + K\$500,000 초과 금액 × 115%
이륜자동차, 삼륜자동차	자동차 판매가격 × 35%
경승합차(LGV) 외의 화물차량	자동차 판매가격 × 15%





구 분	세 율
<b>1.9톤 초과하지않는승합차(LGV)</b>	
HK\$150,000 이하	자동차 판매가격 × 35%
HK\$150,000 초과 HK\$300,000 이하	HK\$150,000 × 35% + HK\$150,000제외한 잔액 × 65%
HK\$300,000 초과	HK\$150,000 × 35% + HK\$150,000 × 65% + K\$300,000초과 금액 × 85%
1.9톤 초과하는 승합차(LGV)	자동차 판매가격 × 17%
택시, 버스, 특수목적 운송수단	자동차 판매가격 × 3.7%

주 : 등록세 = 차종별 과세가액 × 등록세율 자료원 : 교통부

## □ 수출입 관련 법령

- 홍콩은 일반 상품 수입에 대해서는 자유방임적 정책을 펴고 있어 일반 수출입 화물이나 환적 화물의 통관절차는 없으나 소수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 허가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화학약품, 인삼 등 한약재는 별도의 수입 및 도소매 자격증이 있는 사업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 수입허가증 발급 대상 품목 : 마약류, 의약품, 동물, 살충제, 폭발물, 쌀, 냉동육, 오존 파괴 물질, 좌측 운전용 차량, 111.9kw초과 엔진, 광학 디스크 기기, 복사기, 화학약품 등
- 수입 규제 담당기관 :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 수출입관련 라이선스 비용 : 1년 단위로 발급되며 라이선스 비용이 청구됨



○ 홍콩의 중소기업 수출 지원기관

- 대표적인 기관은 **홍콩무역발전국(www.hktdc.com)**
- 홍콩기업들과 해외 바이어·투자가를 위한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며 무역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
- 연간 개최하는 무역전시회는 약 40여개에 달하며 홍콩이 중국과의 교역비중이 높은 만큼 중국시장에 특화되어 있음
- 중국 내에만 13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40개 이상의 해외네트워크(에이전트)를 구축하고 홍콩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 홍콩무역발전국이 집행하는 지원 기금은 중소기업발전기금,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기금 등 총 18개이며 특히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기금은 수출 초보 기업, 수출중소기업 모두 지원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기금은 중소기업들의 무역전시회 참가지원 및 수출관련 판촉 책자 발행, 인터넷 웹사이트 광고 비용 등 다양한 부분에 활용됨
- 또한 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과 공동으로 2008년부터 중소기업 발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에게 해외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3~4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비즈니스 구상부터 경영 관리, 상품 마케팅 등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홍콩 성실무역업체(AEO)제도

- 성실무역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세계관세기구가 수립한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의 핵심 개념임
- 제조업체에서 수출업체, 창고관리업체, 화물운송업체, 수입업체까지 관세청이 승인한 성실무역업체들에 의해 행해져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출을 목적으로 함
- 관세청은 공인기준에 따라 AEO업체를 공인하며 AEO업체와 非AEO 업체간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함
- 홍콩의 AEO제도는 2012년 4월부터 시행되어 20여개의 다국적 기업과 중소기업이 등록되어 있음



- 한국 국세청과 2014년 2월 13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상대국의 AEO제도를 자국의 AEO제도와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체결한 뒤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승인기준과 절차(유효기간은 3년)
  - 세관준수여부, 수출입 장부 기록 여부, 재정 안정, 부지 보안, 인사 보안, 화물 보안, 운송 보안, 비즈니스 파트너, 보안 교육, 정보의 기밀성, 위기관리와 회복 체계 등
  - 홍콩 관세청에 기업 프로파일과 자가 진단서, 유통망 체계지도, 사업장 도면을 첨부한 신청서 접수(심사는 6개월 이내)
- 혜택
  - 세관검사 간소화, 우선 통관, 기업의 공신력 제고 등

## □ 통관절차 및 운송제도

- 일반적으로 대 홍콩 수출의 경우 수출 후 14일 이내에 수출입 신고서를 제출하면 됨

### <흐름>

선적 → 14일 이내 수출입 신고서 제출 → 화물도착통지 → 관세사 등에게 통관 대행 → 수출완료

- 통관시 Bill of Entry, 상업송장,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화물검사 증명서가 요구됨
- 수입허가증 발급대상 품목의 경우는 홍콩 도착 7일 이내에 수입허가증을 발급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대부분 신청후 3~7일 이내 자동적으로 수입허가증이 발급됨)
-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화물도착 4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함



○ 수출시 유의사항

-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홍콩 제조업체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이 홍콩내의 다른 기업을 에이전트로 지정하는 사례가 빈번한 바, 수입 권한이 없는 대리수입업자가 수입하게 되면 대금 미회수의 위험이 있으므로 실수입자와 대리수입자, 수출자가 3자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 의무를 대리수입자가 지도록 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상에 삽입하면 미회수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홍콩에 수출된 수출상품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재수출되는데 이 경우 중국정부가 자국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을 세관에 방치하고 반송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주의

○ 항구와 공항

- 신계에 소재한 콰이칭항(홍콩 전체 물동량의 약 60% 이상 처리), 빅토리아항(홍콩섬과 빅토리아만의 부두를 통칭)
- 한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운송시 환적에 따른 비용과 추가 소요기간(1~2일) 감안해야 함
- 홍콩섬과 구룡반도 서쪽에 위치한 란타우섬 북쪽에 위치한 홍콩국제공항은 1998.7.6. 개항하였으며 24시간 운영

\* 공항 사이트 : <http://www.hongkongairport.com/eng/index.html>

- 인천국제공항보다 약간 크며, 매일 약 100여개의 항공사에서 운행하는 비행기가 중국 44개 지역을 포함하여 180개 도착지로 연결됨. 2007.2월 제2청사 신규개장함
- 홍콩 입국시 담배는 1갑 미만, 주류는 1인당 11 상당 무관세 반입 허용되며, 외화는 금액에 제한이 없음
- 교통수단은 고속전철인 Airport Express(왕복 HKD 100), 전 지역을 연결하는 Airport Bus와 택시이용



## 7 기타 사업관련 정보

### □ 노무관리제도

#### ○ 최저임금제

- 홍콩은 고용과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동시에 노공처, 노사심재처, 평등 기회위원회 등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발달해 있음 (노동시간 계산은 철저히 해야함)

\* 노조의 활동은 법률로 보호되고 있으며 노사심재처는 사법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의 분규를 심의, 재판하는 기능을 수행함

-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가 2010.7.17. 최저임금규정을 통과시켜 2011.5.1. 부터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함

-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34.5홍콩달러로 인상되었으나 한국의 최저 임금 보다 낮음

- 최저임금 = 노동자의 총 근무시간 × 최저임금

- 한국의 최저임금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홍콩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 중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저임금자들이 많은 요식업, 숙박업, 소매업 기업들은 인력비를 절감할 수 있음

\* 식당, 숙박업 등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없는 상태에서 초과근무를 할 경우 최저임금 조항에 저촉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기준 HKD32.5/시간(2015.5.1. 인상)  
☞ 주의 : 추가비용없이 연장근무하면 최저임금을 위반  
· 규정 위반시 벌금 HKD350,000 및 징역 3년

#### ○ 채용

- 홍콩은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음. 또한 전문 분야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직시 경력 개발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음

\* 홍콩 직원들은 직장에 대한 충성도가 낮고 급여를 더 주는 곳이 있으면 쉽게 이직을 하려는 경향이 있음



- 직원 채용의 방법은 3가지로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등록, 인력 채용 에이전트 이용, 인력채용 잡지에 광고하는 것임
- 근로계약
  - 근무시간, 수습기간, 휴가, 병가, 보너스, 초과근무수당, 연말수당, 급여일, 계약 파기 조건 등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시 대비할 수 있음
  - 급여(기본급여, 보너스, 초과근무수당, 연말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 급여 지급 기준(시급, 주급, 월급 구분), 계약 해지 통지 기간, 근로시간이나 휴가등에 관한 내용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임
- 임금 및 부가급여
  - 급여의 편차가 상당히 큰 편이며 초과근무수당도 회사에 따라 편차가 있음. 통상 초과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거나 계약서에 초과근무수당을 언급한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함
  - 현행 고용조례에서 법정휴일, 연차휴가, 출산휴가, 의료수당, 해직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이 규정되어 있고, 이외 근속수당, 식사 보조, 의료수당, 통근수당, 주택수당, 기말상여 등을 제공 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음 (기준급여의 15~20% 차지)
- 휴가
  - 모든 직원은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법정 휴일에 대한 자격이 있고, 계속 계약 하에 3개월 이상 고용된 모든 직원은 법정 휴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 받을 자격이 있음
  - 홍콩은 유급 휴가 제도로 근무 근속에 따른 누진방식이 적용됨
  - 일반적 연차는 연간 10일에서 20일 사이이며 법적 최소 연차는 7일(2년 차까지)에서 시작하여 최대 14일(9년차 이후)까지로 늘어남
  - 유급 병가는 병원 증명서를 제출하였을 경우만 인정되며, 첫째 2일, 다음해부터 4일씩 축적이 가능함(최대 120일)



- 종업원 복지보험
  - 의무보험 : 퇴직보험, 단체 상해(생명)보험
  - 비의무보험 : 단체의료보험(홍콩은 한국에 비해 의료수가가 비싼편으로 4인 가족 연보험료는 HKD 1만5천~HKD 2만2천 수준임)
  
- 해고 절차
  - 고용 계약을 기준으로 하되 별도 갱신이 없는 경우 동 조건의 연장으로 봄
  - 해고에 대하여 종업원이 반발하는 경우 노사심재처의 심의를 거치나 종업원의 자발적 이직이 대부분임
  - 수습기간 1개월까지는 1일전 통보해야 하며 나머지 기간은 1주일 전 통보, 수습기간 경과후에는 계약서에 명기된 사전통지 기간에 따르며, 계약서에 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전 사전통지 해야함
  - 고용인, 피고용인 모두 해당 기간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즉시 계약 해지 가능함
  
- 퇴직금 제도
  - Severance Payment(계속 근무수당)
    - 대상 : 24개월 이상 연속 계약 근무자에게 지급
    - 조건 : 정리해고를 이유로 해고, 고용기간 만료 후 정리해고, 일시해고
    - 산출방법 : (최종월급급여액 × 2/3)\* 취업연수
      - \* 1년 이하는 일할계산
    - 최종월급급여액의 상한액은 HKD22,500
  - Long Service Payment(장기복무수당)
    - 대상 : 5년 이상 연속 계약 근무자에게 지급
    - 조건 : 해고되는 경우(피고용자의 불법행위, 정리해고 제외), 고용계약 기간 만료 후 정리해고, 피고용자의 의원, 피고용자가 영구적 계약상 업무수행 불가능 경우, 65세 이상 정년퇴직



- 산출방법 : (최종월급급여액 × 2/3)\* 취업연수
  - \* 1년 이하는 일할계산
- 최종월급급여액의 상한액은 HKD22,500, 최고 지급액이 HKD390,000을 초과할 수 없음
- 주의
  - 계속 근무 수당 혹은 장기근속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은 MPF 고용주 적립금과 상계가능
  - 수당 지급전에 회사가 MPF 프로그램 양식을 준비하여 피고용자의 사인을 받아두면 원활하게 상계가능

## □ 비자관련

- 한국에서 홍콩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는 홍콩에 가기 전에 취득하는 것이 원칙으로 종류에 따라 심사기간은 3주~6주임
- 주의할 점은 홍콩 입국시 반드시 비자 라벨이 붙어있는 면을 입국사무소 창구직원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이를 잊은 경우 단순 방문 비자로 간주하여 3개월 후 재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홍콩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한국에서 신청하는 방법과는 다름. 입국 사무소의 접수창구에 신청 양식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설명서가 있음. 필요 서류에는 고용주의 회사 대표서명, 신청자의 이력서, 고용인을 회사에서 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추천서 등이 필요. 심사는 보통 4~6주 소요
- 고용(취업)비자
  - 홍콩취업비자 신청은 한국 거주 상태로 신청 서류를 홍콩의 고용되는 직장을 통하여 홍콩 입국 사무처에 제출하며 신청 후 2주 이내 비자 신청 접수번호가 고용주에게 전달됨. 추가 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 신청 후 4주~6주 후 비자승인 결과가 고용주에게 전달됨.





- 고용주는 비자 라벨을 입국 사무처로부터 받아 한국 신청자에게 전달 하며 신청자는 라벨을 자신의 여권에 붙여 입국시 공항 입국 카운터 에서 취업 비자 스탬프를 받음
- 고용주는 채용하려는 피고용자의 채용 필요성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현지인 채용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업무임을 입증해야 하며, 피고용자는 해당 업무에 걸맞는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 가족 비자
  - 직원의 가족이 취득하기 때문에 세대주(취업 비자의 소유자)가 가족의 체재 비자의 스폰서가 되며, 스폰서의 비자가 나온 후 신청하거나 세대주와 가족비자를 동시에 신청 함.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하므로 가족 관계서류를 발급받아 번역 후 홍콩의 한국 총 영사관에서 공증 받아 세대주의 홍콩 재직증명서, 영문주민등록등본과 함께 홍콩 입국 사무처에 제출하면 됨
- 학생비자
  - 홍콩 입국 사무처에서 인정한 홍콩 교육기관의 입학 허가증을 취득 하는 것으로 유학할 학교 교무처가 스폰서로 신청 수속을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사전에 미리 확인해야 함. 일반적으로 학기 단위 (3개월)로 비자 발급이 되므로 수시로 갱신해야 함
- 방문비자
  - 한국국적 소지자는 도착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3개월간의 방문비자가 주어짐
- 워킹홀리데이비자 및 취업
  - 만 30세 미만의 젊은이에게 1년에 한하여 상대국의 문화 및 체제를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임
  - 홍콩인은 한국에서 한국인은 홍콩에서 1년간 취업, 교육, 여행 등을 할 수 있으며 단 한 직장에서는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음



•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받는 방법

- 신청기간 : 상시 (선착순 1,000명 마감)
- 한국에서 받는 방법은 모든 서류를 한국에서 발급 받은 다음 주한 중국대사관의 영사부에 신청하여 비자를 발급받아 홍콩에 입국하면 됨 (3~6주 소요)
- 홍콩에서 받는 방법은 제반 준비서류를 가지고 홍콩에 입국한 후 홍콩의 이민국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임. 홍콩에서 취득시 반드시 홍콩 출국 후 재입국 하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Active해야 함 (보통 마카오나 심천으로 출국 후 재입국)
- 홍콩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20,000HKD가 있음을 증명하는 예금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비자 : 방문·학생비자

□ 지식재산권

○ 홍콩 지식 재산권 등록은 상표, 디자인, 특허로 구분됨

- 중국에서 특허를 받은 디자인 등은 홍콩에서 자동으로 특허권을 갖지 못하므로 홍콩 내에서 별도의 특허 신청을 해야 함. 각각의 지적재산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등록을 해야 함
- 최근 중국기업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진출시 중국회사와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확인이 필요함

- 중국회사의 트레이드마크와 현저히 구분되게 하여 혼란 방지
- 중국과 홍콩에 각각 등록신청
- 트레이드마크를 영어로 작성하여 빨리 등록 신청
- 홍콩 지식 재산권 저널에서 유사한 트레이드 마크가 등록 대기중인지 수시로 확인
- 지식 재산권 관련 전문가에게 조언
- HK Domain Name Registration Company Limited를 통해 홈페이지 등록 여부 확인



# 홍콩의 조세제도

## Ⅲ

- 1. 조세체계 / 74

---

- 2. 사업소득세 / 77

---

- 3. 급여소득세 / 89

---

- 4. 재산세 / 98

---

- 5. 홍콩의 세무조사제도 / 105

---

- 6. 홍콩의 조세범 처벌 규정 / 110

---

- 7. 홍콩의 조세회피방지규정 / 113





## 1 조세체계



### □ 원천지국 과세방식

- 소득과 자본이득의 과세와 관련하여 홍콩 원천에서 발생하거나 가득된 소득 또는 이익만을 과세
- 납세의무자가 홍콩에 거주하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음
  - 과세소득 결정과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동일 취급
  - 소득의 원천이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

### □ 세법 및 집행

- 모든 홍콩법은 Ordinances라 불리며 세금 부과를 위한 법으로는 세무조례 (IRO, Inland Revenue Ordinances), 시행령(Inland Revenue Rules)이 있음
- 그 밖에 IRO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세무규칙과 해석이 있음
- 집행기관은 홍콩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IRD)

### □ 분류과세

- 종합소득개념이 없으며 소득별로 분류하여 과세
  -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Profits tax)
  -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급여소득세(Salaries tax)
  -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재산세(Property tax)

### □ 기타

-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세, 증여세·상속세(2006년 폐지) 및 관세가 없음(주류, 유류,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한하여 관세 부과)



- 비거주자에 대한 사용료나 연예·운동 공연료를 지급하는 등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제도가 없음(대신 예정 납세 제도를 채택)
- 세계 최저 수준의 법인세 세율(16.5%로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구간에 적용하는 단일 세율)

**□ 과세연도와 과세기간**

- 과세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2개월임(2018년 3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표시 2017/2018)

**□ 소득의 신고**

-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서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작성하여 제출
- 사업소득의 경우 1차연도는 3개월이내이며 2차연도 이상시 연장가능함 (3.31일 결산 경우 11.15일까지, 12.31일 결산 경우 8.15일까지)
- 국세청장이 확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미납세액, 미신고, 불성실 기장 등에 대해 벌금을 부과(Level 1~6, HKD 2,000~100,000)

**□ 조세불복제도**

- 이의신청, 심판청구, 항소법원

**□ 연간 대정부보고 의무사항**

관리내용	기 간	제출기관	비 용
사업자등록증갱신	매년 설립일 기준 한달 이내	국세청	HKD6,700 (세금 HKD2,355 별도)
연 보고	매년 설립일 기준 42일 이내	기업등록국	
고용자 급여 신고	매년 4월	국세청	
세무 보고	매년 12월 또는 3월 기준으로 보고	국세청	최소 HKD10,000이상

□ **역외소득(Offshore Profit) 면세제도**

- 홍콩 원천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함에 따라 홍콩 원천의 소득이 아님을 증명할 경우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면제신청시기 : 매년 세무신고시 면제 신청
- 면세 신청시 유의사항
  - 법인의 홍콩 내 실제 사무실 운영 유무
  - 동재 이사 및 업무 담당자 홍콩 거주 유무
  - 거래 품목 실질적 홍콩 경유 유무
  - 증빙자료 제공 가능 유무
- 역외 면세 절차
  - 1차년도 결산일 종료 후 회계결산 자료(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 세무신고서, 회계감사보고서 및 세무신고서에 역외소득이므로 면세 대상이라고 신고)
  - 국세청에 세무신고서 접수 및 국세청에서 검토
  - 국세청에서 역외면세 신청에 관한 인터뷰 LETTER발행
  - 해당질의에 대한 답변 및 증빙자료 제출
  - 국세청에서 승인 or 거부 LETTER발행 및 납세고지서 발행(통상 6~8개월 소요됨)
  - 납세자는 납세고지서 수령과 함께 역외면세 신청 및 세무신고 완료
- 준비서류(일반 무역업 중심)
  - 매입과 매출 계약서
  - 매입과 매출 COMMERCIAL INVOICE 원본
  - 매입과 매출 PACKING LIST 원본
  - 선하증권 원본



## 2 사업소득세

### □ 최근 주요 개정사항

- 1) 2017년 10월 법인세를 현행 16.5% 단일세율에서 두 구간으로 나누어 최저 8.25% 법인세율로 인하하는 계획 발표
  - 기업의 연간 순이익이 200만 홍콩달러 이하에 대하여는 현행 법인세율보다 낮은 8.26% 적용, 200만 홍콩달러를 넘는 구간은 지금까지처럼 16.5% 법인세율 적용
- 2) 세액감면 실시
  - 2015/2016 과세기간 법인소득세 75% 감면(최대 HKD 20,000)
  - 2014/2015 과세기간 법인소득세 75% 감면(최대 HKD 20,000)
  - 2013/2014 과세기간 법인소득세 75% 감면(최대 HKD 10,000)
  - 2012/2013 과세기간 법인소득세 75% 감면(최대 HKD 10,000)
  - 2012/2013, 2013/2014 과세기간 사업등록세 면제
- 3) 기업자금집중센터에 대한 세제혜택부여(2015년)
  - 다국적기업의 홍콩 내 자금집중센터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집중센터의 역할을 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이자비용공제를 허용하고 50%의 세액감면을 실시)을 부여(현재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지급자에 대해 이자비용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 역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면세를 적용
- 4) 종속보험회사의 해외 보험사업에 대해 법인세 경감(2014)
- 5) 해외 펀드에 대한 사업소득세 면제 확대(2014)
  - 해외펀드가 홍콩에서 특정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세 면제 (특정거래에 Private companies 포함시킴)
    - 단, Private companies는 국외에서 설립되거나 등록되고, 국내 자산을 보유하지 않거나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아야 함



## □ 납세의무자

- 법인(corporation) : 홍콩 국내에 법령에 의해서 등록되거나 주식(유한) 회사로 신고된 모든 회사(사회단체나 무역협회 등은 제외)
- 파트너십(partnership) : 이윤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가 법인화하지 않고 자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 수탁자(trustee) : 위탁자로부터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받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자
- 법인체(bodies of person) : 법인이든 법인이 아니든 관계없이 정치단체, 단체조직, 공제조합, 조합, 사회단체를 모두 포함(자선을 목적으로 이윤을 획득하는 자선기관이나 공공목적의 신탁회사가 홍콩 역내에 존재하는 경우 제외)

## □ 과세소득

- 홍콩에 원천을 둔 과세가능 이윤이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모두 납세의무를 가지며 과세대상이 됨
- 요건
  - 거래, 영업, 전문직(trade, business or profession)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 거래, 영업, 전문직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 거래, 영업, 전문직의 이윤은 반드시 홍콩 내에서 유인되거나 발생

### ※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원칙

- 이익이 홍콩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
- 실질적인 운영의 장소가 홍콩인지 역외인지
- 이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수행장소가 홍콩인지 역외인지
- 계약이 체결된 장소가 홍콩인지 역외인지



○ 홍콩원천 간주 사업소득

- 홍콩 내 영화나 TV 필름·테이프 또는 음향녹음의 전시나 사용으로 인한 대가
- 홍콩에서의 지적 자산의 사용권 또는 로열티
- 홍콩에서 수행된 사업과 관련된 증여, 보조금 또는 그와 유사한 금전거래
- 홍콩에서 동산 사용에 대한 임대료
- 홍콩 내 사업과 관련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이자수입
- 개인의 사업과 무관한 수입을 제외한 홍콩 발생 이자수입
- 개인의 사업과 관련된 정기예금 증서의 처분/ 할인 및 만기상환/환어음으로부터의 홍콩원천 수입이자 및 처분이익
- 자산소득이 발생하는 재산권을 양도하여 주는 대가로 받는 보수

□ 과세소득 계산

- 최종 과세이윤 = 총이윤 - 비과세소득 ± 각종공제(손금가능비용 or 손금불산입비용) - 결손금 이월공제 ± 균형부과 및 공제 - 감가상각공제

□ 비과세 소득

- 홍콩을 원천으로 하지 않는 소득
- 이자소득(단, 금융기관이 얻은 이자와 이자비용 공제가 허용되는 차입금의 담보나 지급보증을 위해 사용되는 예금이자만 제외)
- 배당금
- 기과세 소득(타인의 명의로 이미 과세가 이루어진 사업소득)
- 납세유보증서(tax reserve certificate)의 이자
- Loans Ordinance에 의해 발행된 채권이자와 처분이윤
- 외환기금 채무증권(Exchange Fund Ordinance에 의해 발행) 이자와 처분이윤



- 다국적 기관이 발행한 홍콩달러 표시 증권의 이자와 처분이자
- 자본성 자산의 매각이익
- 주식차입과 대출거래
- 7년 이상 만기 채무증권의 이자 및 이윤
-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기타 투자계획의 이윤
- 국외펀드

### □ 손금가능비용

- 과세소득을 창출하는 데 투입된 비용은 소득발생지와 무관하게 허용
- 법률자문 비용, 인지세 등 자금차입 관련 제비용
-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환차손은 불인정)
- 현재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차입금 이자인 경우 공사완료 전까지 자본화 되었다가 공사 완료 후 감가상각이나 처분의 방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
- 영업목적으로 사용된 사무실 및 토지에 대한 임차료
- 외국납부세액
- 건물, 기계장치, 공장에 대한 감가상각비
- 고정자산의 수선비, 교체비(개량이나 확장 등 자본적 지출은 불인정)
- 상표권, 의장권, 특허권의 등록비
- 사업 타당성 조사 또는 시장조사, 사업 및 관리실태 조사를 포함한 과학적 연구비용 중 특정항목
- 승인된 연구기관에 영업과 관련된 기술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기술연구비용
- 특허권 등 지적재산 취득 비용
- 인가된 자선기관에 지급한 기부금(과세소득의 35% 한도)



### □ 손금 불산입 비용

- 가사 또는 개인지출 비용 및 과세소득 창출 목적이 아닌 비용
- 자본지출 및 자본에 의한 손실
  - 자본지출이나 자본손실은 과세하지 않으므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수리나 교체가 아닌 계량비
- 보험 또는 보상계약에 의한 지급보상액
- 과세소득 창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시설의 임차료 등
- 종업원 급여소득세를 제외한 법령에 따른 각종 세금
- 영업주 개인(조합의 경우 개별사원 포함) 또는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 출자금이나 차입금의 이자

### □ 특별계층 납세자 과세소득 계산

- 파트너십
  - 둘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이 공동으로 영리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 총과세가능 이윤 합산하여 계산하고 과세는 개별 파트너에게 부과
- 생명보험회사
  - 수령한 보험료의 5%를 과세가능이윤으로 부과
- 기타 보험회사
  - 과세가능이윤 : 총보험료 + 홍콩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 기타소득 + 균형부과
- 선박(항공)운영
  - 과세가능이윤 = 홍콩 선박(항공)영업소득/전체 선박(항공)영업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구 분	지급금액	과세방법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나 TV필름·테이프 또는 음향녹음, 이와 관계된 광고 자료의 홍콩 내 전시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수취한 사용료</li> <li>· 특허권, 설계, 상표권, 저작권, 비밀 공정이나 공식, 기타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기타 자산이 홍콩 밖의 사용 또는 사용을 위한 권리와 관련하여 수취한 사용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총액의 30%를 과세소득으로 간주함</li> <li>·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총액의 4.95%(=16.5%*30%)를 원천징수함</li> <li>· 특수 관계가 있는 법인간의 거래시 지급총액의 100%를 과세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지급총액의 16.5%를 원천징수함</li> </ul>
공연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홍콩 내에서 공연을 하고 받은 공연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총액의 1/3에 해당하는 비용 공제 허용함(실비가 더 많은 경우 실비공제 가능)</li> <li>·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총액의 10%(=15%*2/3)를 원천징수함</li> </ul>

□ 이월결손금(Loss Carried Forward)

- 기간 제한 없이 이월공제 가능, 소급적용 공제 불가
-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에서 각각 손실과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상계, 파트너십에서 결손 발생시 지분비율 만큼 공제

□ 균형 부과 및 공제(Blancing Charge · Allowance)와 기타 자본공제

- 균형부과
  - 건축물, 공장설비 및 기계장치의 실제 잔여자산 가치를 초과하여 처분 되었을 때 조정하는 항목



○ 균형공제

- 건축물, 공장설비 및 기계장치의 실제 잔여자산 가치가 실제가치보다 낮게 책정되어 처분되었을 때 조정하는 항목

○ 감가상각 공제

-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 감가상각 적용 불가

감가상각 공제 대상	공제한도	비 고
산업용 건물·구축물	초기상각 20%, 이후 매년 4%	정률상각
상업용 건물·구축물	초기상각없이 매년 4%	정률상각
공장설비 및 기계장치	초기상각 60%, 이후 매년 10%~30%	정률상각

□ 세율

○ (총이윤 - 비과세소득 - 각종공제 - 균형부과 · 공제 - 감가상각) × 세율

연도	세율	비고
법인	16.5%	2008/09 이후
개인	15%	

□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 세무서에서 매년 4월 첫 영업일에 납세신고서(Profit Tax Return) 발행
- 납세자는 납세신고서 발행일 1개월 내에 신고서와 감사보고서, 세무조정 계산서(Tax computation)를 제출하여 세무서의 평가를 받음
- 평가를 받기 전 추계(예납)소득세 징수
  - 예납 이윤세는 공지된 과세예납 만기일에 이윤세의 75%, 대략 3개월 후에 나머지 25% 납부



○ 회계자료는 반드시 7년간 보관

- ※ 예납세액 연기신청 가능 경우
  - 예납세액 납부기한 28일전 이내 또는 예납세액납부고지서 발행일 기준 14일 이내 중 유리쪽 선택 가능
  - 고지한 소득의 90%이하 추정될 경우
  - 이월손실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잘못 계산되었을 때
  - 사업 폐업예정이거나 폐업했을 때
  - 납세자가 종합과세를 선택시 조세부담 감소가 예상될 때
  - 전년도 최종 과세액에 대한 이의신청 중일 때
- ※ 사전답변제도 활용
  - 이윤 및 고용의 원천
  - 특이한 과세쟁점
  -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논쟁

□ 기타

- <법인 설립 후 해야 하는 업무>
- 사업자등록 갱신(BR)
    - 매년 갱신해야 하며 불이행시 사업자등록 무효처리됨
    -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불이행시 HKD 300 벌금 부과
    - 장기간 불이행시 세무서에서 법원에 통보, 법원에서 소환장 발부
  - 연보고(AR;Annual Return)
    - 연보고를 기업등록국에 보고
    - 연간 법인구성의 변경사항(정관, 주주(이사), 자본금 등)을 기업등록국 보고서에 보고
    - 불이행시 벌금이 부과되며 법원에서 소환장을 발부
  - 급여소득신고(ER;Employer's Return)
    - 피고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의 총액을 세무서에 신고
    - 급여지급 대상자 유무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신고
    - 신고기간 : 4.1~3.31
    - HKD 120,000 초과시에는 개인소득세 발생(개인소득신고서 신고 의무)
    - 급여신고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벌금이 부과
  - 회계감사보고서(AR;Auditing Report)
    - 재무제표와 세무신고서를 홍콩 회계사에 송부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받음
    - 회계감사보고서를 받지 않은 경우 법인 미신고로 보며 벌금이 부과되며 장기간 미신고시 법원에서 소환장 발부 가능성 있음



□ 사업소득세 신고 서식



**INLAND REVENUE DEPARTMENT  
PROFITS TAX RETURN – CORPORATIONS  
FINAL ASSESSMENT  
AND PROVISIONAL PAYMENT**

IN ANY COMMUNICATION PLEASE QUOTE THE FILE NUMBER BELOW

FILE NO.  
TO

**SAMPLE**

Revenue Tower,  
5 Gloucester Road,  
Wan Chai, Hong Kong.  
G.P.O. Box 132, Hong Kong.  
Web site: www.ird.gov.hk  
Tel. No.:

You are required under section 51(1) of the Inland Revenue Ordinance (Cap. 112) to make on this form a true and correct return of the Assessable Profits (or Adjusted Loss) (See Note C1) arising during the basis period (See Note C2) for the year of assessment ended 31 March

**ALL** parts/items of the form **MUST** be completed and submitted to the Department **WITHIN 1 MONTH** from the date of this Notice. Submission by facsimile is not acceptable. You should read the attached Notes and Instructions ("the Notes") before completion.

You **MUST** prepare the following documents (collectively called "Supporting Documents"):

- (a) a certified copy of your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Balance Sheet, Auditor's Report where required by Hong Kong or foreign law or if one has otherwise been prepared, and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 Profit and Loss Account in respect of the basis period;
- (b) a tax computation with supporting schedules showing how the amount of Assessable Profits (or Adjusted Loss) has been arrived at; and
- (c) other documents and information as specified in the Notes.

If you are **NOT** a **SMALL** corporation (See Note C3), you **MUST** submit **ALL** the Supporting Documents together with this form.

If you are a **SMALL** corporation, you only need to submit this form. However, you **MUST** retain the Supporting Documents as you may be required to submit them later.

If the criteria specified by the Commissioner are met, you may choose to submit this return in the form of an electronic record using GovHK. For details, see Note C4.

Date:

Assistant Commissioner

Please refer to the corresponding parts and items in Section C of the Notes. **Exclude cents when stating amounts.**

PART 1 STATEMENT OF ASSESSABLE PROFITS OR ADJUSTED LOSS					
1.1	Assessable Profits (before loss brought forward) If NIL, enter "0"	HK\$			1
1.2	Adjusted Loss (before loss brought forward) If NIL, enter "0"	HK\$			2
PART 2 TAX LIABILITY OR REPAYMENT					
2.1	Tax Payable If NIL, enter "0"	HK\$			
2.2	Tax Repayable If NIL, enter "0"	HK\$			

"✓" the appropriate boxes

PART 3 GROSS INCOME, SPECIFIED TRANSACTIONS AND MATTERS			Yes	No
3.1	Does your gross income for the basis period exceed <b>HK\$2,000,000</b> ?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3.1.1	If no, state your gross income for the basis period.	HK\$		4
3.2	During the basis period, did you pay or accrue to a non-resident person any sum for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specified in section 15(1)(a), (b) or (ba) of the Inland Revenue Ordinance? If yes, submit details of the sum as stated in the Notes and include the sum in Item 11.13.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3.3	Did you have any deemed assessable profits under section 20AE of the Inland Revenue Ordinance for this year of assessment? If yes, submit the information as required in the Notes.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3.4	Does the amount of the Assessable Profits/ Adjusted Loss entered in Part 1 include any interest, profits/ loss arising from "short term debt instruments" or "medium term debt instruments"? If yes, submit the information as required in the Notes.		<input type="checkbox"/> 7	<input type="checkbox"/>
3.5	Do you claim tax relief for this year of assessment pursuant to an arrangement for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specified under section 49(1) or 49(1A) of the Inland Revenue Ordinance? If yes, submit the information as required in the Notes.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checkbox"/>
3.6	Have you obtained an advance ruling relating to this year of assessment? If yes, submit the information as required in the Notes.		<input type="checkbox"/> 9	<input type="checkbox"/>
3.7	Do you claim debt treatment for an arrangement for this year of assessment as "an originator" or "a bond-issuer" of a specified alternative bond scheme under section 40AB and Schedule 17A of the Inland Revenue Ordinance?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FOR OFFICIAL USE ONLY**

- A/C     C/A     T/R     PF Lang. Ind.     Not for A.A. Ind.     IR10C/670/1264 issued on \_\_\_\_\_  
 IR849 / on-line update for:     B. Name     B. Add.     Cess.

**DO NOT TEAR OFF THIS PART**

File No. \_\_\_\_\_ Ass't Yr \_\_\_\_\_

BIRS1 (4/2014)

本表格的中文版樣本可經表格傳真服務(電話號碼 2598 6001)索取或在稅務局網頁(網址 www.ird.gov.hk)下載。  
A specimen of the Chinese version of this form may be obtained through the Fax-A-Form service (Telephone No. 2598 6001) or downloaded from the Department's web site (www.ird.gov.hk).

P.T.O.





PART 4 DETAILS OF THE CORPORATION	
4.1	Postal address if different from that printed on this return: .....
4.2	If the postal address stated in Item 4.1 is the same as your current main business address, "✓" the box. <input type="checkbox"/>
4.3	Telephone Number: .....
4.4	Principal business activity: ..... Principal product or service: ..... If different from that previously reported, "✓" the box. <input type="checkbox"/>

PART 5 RETURN FORM LANGUAGE	
If you wish to receive future Profits Tax Returns in CHINESE, "✓" the box. <input type="checkbox"/>	

PART 6 AUTHORIZED REPRESENTATIVE	
(Complete only if you have appointed a representative. Such an appointment is NOT compulsory.)	
I hereby authorize .....	
of (Address) .....	
.....	
to handle the tax affairs on behalf of the Corporation.	
The representative's Business Registration No. and Branch No., if any .....	
The representative's Reference No. .....	

PART 7 GENERAL MATTERS		"✓" the appropriate boxes	
		Yes	No
7.1	Are your accounts required to be audited by law? If yes, complete Item 7.1.1 and if you are a SMALL corporation, complete also Items 7.1.2 and 7.1.3.	<input type="checkbox"/> 11	<input type="checkbox"/>
7.1.1	Did the Auditor(s) in his/their Report express an adverse opinion or a disclaimer of opinion?	<input type="checkbox"/> 12	<input type="checkbox"/>
7.1.2	State the name of the Auditor(s) who prepared your Auditor's/Auditors' Report for the basis period: .....		
7.1.3	State the date of the Auditor's/Auditors' Report: .....		
7.2	State your basis period: From ..... to ..... Is the accounting date for this year different from that of last year?	<input type="checkbox"/> 13	<input type="checkbox"/>
7.3	Did you commence business within the basis period? If yes, state the date of commencement: .....	<input type="checkbox"/> 14	<input type="checkbox"/>
7.4	Did you cease business within the basis period? If yes, complete Items 7.4.1, 7.4.2 and 7.4.3.	<input type="checkbox"/> 15	<input type="checkbox"/>
7.4.1	State the date of cessation: .....		
7.4.2	On cessation, was your business or any part thereof transferred to and carried on by another person? If yes, state the name of this person: .....	<input type="checkbox"/> 16	<input type="checkbox"/>
7.4.3	On cessation, were any of the assets of your business sold or transferred to an associated person?	<input type="checkbox"/> 17	<input type="checkbox"/>
7.5	Are your financial statements prepared in a foreign currency? If yes, state the currency and the conversion rate used to convert to HKdollars. Currency ..... Conversion rate .....	<input type="checkbox"/> 18	<input type="checkbox"/>
7.6	Are you a private company? If yes, complete Item 7.6.1.	<input type="checkbox"/> 19	<input type="checkbox"/>
7.6.1	Has there been any change in your shareholders during the basis period?	<input type="checkbox"/> 20	<input type="checkbox"/>
7.7	During the basis period, were you a party to an amalgamation under section 680 or 681 of the Companies Ordinance (Cap. 622)?	<input type="checkbox"/> 21	<input type="checkbox"/>
7.8	During the basis period, were you involved in any processing arrangement in the Mainland of China? If yes, complete Item 9.2.2.	<input type="checkbox"/> 22	<input type="checkbox"/>

FOR OFFICIAL USE ONLY  
DO NOT WRITE IN THIS SPACE



"✓" the appropriate boxes

PART 8 TRANSACTIONS FOR / WITH NON-RESIDENTS		Yes	No
During the basis period did you:			
8.1	sell any goods or provide any services in Hong Kong on behalf of a non-resident person?	<input type="checkbox"/> 23	<input type="checkbox"/>
8.2	receive, as agent, on behalf of a non-resident person any other trade or business income arising in or derived from Hong Kong?	<input type="checkbox"/> 24	<input type="checkbox"/>
8.3	carry on business with a closely connected non-resident person? If yes and the person is a corporation, complete Items 8.3.1 to 8.3.3 to state its place of incorporation:	<input type="checkbox"/> 25	<input type="checkbox"/>
8.3.1	Bermuda / British Virgin Islands / Cayman Islands / Cook Islands / Guernsey / Jersey	<input type="checkbox"/> 26	
8.3.2	Macao SAR	<input type="checkbox"/> 27	
8.3.3	Others (please specify) .....	<input type="checkbox"/> 28	

PART 9 TAX DATA (Complete all items. If NIL, enter "0".)		HKS			
9.1	Offshore profits <b>excluded</b> from the Assessable Profits or Adjusted Loss stated in Part 1				29
9.2	Offshore profits from business (already included in Item 9.1) attributable to:				
	9.2.1 the use of the Internet to accept orders, sell goods, provide services or accept payment				30
9.2.2	contract processing or import processing arrangement in the Mainland of China				31
9.3	Profits from sale of landed properties in Hong Kong <b>excluded</b> from the Assessable Profits or Adjusted Loss stated in Part 1				32
9.4	Profits from sale of capital assets (other than landed properties in Hong Kong) <b>excluded</b> from the Assessable Profits or Adjusted Loss stated in Part 1				33
9.5	Net interest income exempted from payment of Profits tax				34
9.6	Deduction claimed for approved charitable donations				35
9.7	Deduction claimed for expenditur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36
9.8	Deduction claimed for expenditure on building refurbishment				37
9.9	Deduction claimed for expenditure on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38
9.10	Deduction claimed for expenditure on prescribed manufacturing machinery or plant				39
9.11	Deduction claimed for expenditure on environmental protection machinery				40
9.12	Deduction claimed for expenditure on environmental protection installation				41
9.13	Deduction claimed for expenditure on environment-friendly vehicles				42
9.14	Deduction claimed for expenditure on patent rights or rights to know-how				43
9.15	Deduction claimed for specified expenditure on copyrights, registered designs or registered trade marks				44
9.16	Tax relief claimed pursuant to an arrangement stated in Item 3.5:				
	9.16.1 foreign tax paid claimed as a tax credit				45
9.16.2	income or profits <b>excluded</b> from the Assessable Profits or Adjusted Loss stated in Part 1				46
9.17	Hire charges paid or accrued to non-resident persons for the use of or right to use movable property in Hong Kong				47
9.18	Fees paid or accrued to non-resident persons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rendered in Hong Kong				48
9.19	Fees paid or accrued to closely connected non-resident persons (including those already reported in Item 9.18)				49



PART 10 DEPRECIATION ALLOWANCES CLAIMED (Complete all items. If NIL, enter "0".)					
Industrial Building		HK\$		Machinery or Plant	
10.1	Initial Allowance		50	10.8	Initial Allowance
10.2	Annual Allowance		51	10.9	Annual Allowance
10.3	Balancing Allowance		52	10.10	Balancing Allowance
10.4	Balancing Charge		53	10.11	Balancing Charge
<b>Commercial Building</b>		<b>HK\$</b>			
10.5	Annual Allowance		54		
10.6	Balancing Allowance		55		
10.7	Balancing Charge		56		

PART 11 FINANCIAL DATA (Complete all items. If NIL, enter "0".)					
		HK\$		HK\$	
11.1	Turnover		61	11.12	Commission payments
11.2	Opening inventories		62	11.13	Royalty payments
11.3	Purchases		63	11.14	Management and consultancy fee payments
11.4	Closing inventories		64	11.15	Contract and subcontractor charges
11.5	Gross profit		65	11.16	Bad debts
11.6	Gross loss		66	11.17	Net profit per account
11.7	Dividend income		67	11.18	Net loss per account
11.8	Interest income		68	11.19	Accounts receivable (trade)
11.9	Interest expense		69	11.20	Accounts payable (trade)
11.10	Employee and director remuneration		70	11.21	Issued share capital
11.11	Share-based payments		71		

**PART 12 DECLARATION**

I, ..... (full name), being **SECRETARY/MANAGER/DIRECTOR/LIQUIDATOR**  
 (Delete whichever is inapplicable) of .....  
 (State full name of the Corporation)

declare that:-

- the whole of the Assessable Profits (or Adjusted Loss) of the Corporation arising during the basis period for the year of assessment as stated in the notice on Page 1 have been disclosed;
- the Supporting Documents referred to in the notice on Page 1 have been prepared;
- this form has been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Supporting Documents; and
-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all the particulars contained in this form and the Supporting Documents are true, correct and complete.

Date ..... Signature .....

(Heavy penalties may be incurred for failing to keep sufficient business records, making an incorrect return or committing other offences – See Sections D and E of the Notes.)



## 3 - 급여소득세



### □ 최근 주요 개정사항

- 1) 2008년 2월부터 급여소득세를 기존 16%에서 15%로 1% 인하
- 2) 2017/18년도에는 개인 소득세 납세 기준액을 4만 HKD에서 4만5000HKD로 높여 130만 명의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 감소  
또한 세금을 내야 하는 장애인의 연간 수입 기준을 6만6000HKD에서 7만 5000HKD로 인상해 3만5000명의 장애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3) 세액감면 실시
  - 2015/2016 과세기간 급여소득세 75% 감면(최대 HKD 20,000)
  - 2014/2015 과세기간 급여소득세 75% 감면(최대 HKD 20,000)
  - 2013/2014 과세기간 급여소득세 75% 감면(최대 HKD 10,000)
  - 2012/2013 과세기간 급여소득세 75% 감면(최대 HKD 10,000)
- 4) 소득공제금액 한도 확대
  -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금액 상향 조정(2017년)
    - 형제자매공제 3.3만 HKD → 3.75만 HKD
    - 장애인공제 6.6만 HKD → 7.5만 HKD
    - 본인교육비공제 : 8만 HKD → 10만 HKD
  - 기본공제와 외부모공제금액 등 상향조정 (2016년)
    - 기본공제, 외부모공제 12만→13.2만 HKD
    - 기혼자 공제 24만→26.4만 HKD
  - 근로소득자에 대한 자녀공제금액 상향 조정(2015년)
    - 자녀공제 중 출산시 공제금액 14만→20만 HKD
    - 만18세 이하의 자녀공제 7만→10만 HKD(18세 이상 25세 이하 자녀중 학업중인 자녀 공제 가능)



## □ 납세의무자

- 원천지국 과세방식을 적용하므로 거주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원천에 의해서 결정
-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유래한 소득으로 판단기준은 고용의 원천지와 홍콩 체재기간임
  - 고용의 원천지 : 고용계약을 합의 및 체결하는 장소, 고용주의 거주지, 보수의 지급장소 등
  - 홍콩 체재기간 : 역외에서 고용된 경우 60일 기준

## □ 과세연도 : 4월1일부터 3월 31일

## □ 과세대상소득

- 홍콩원천의 고용소득, 홍콩에서 운영되는 사무실에서의 소득 및 홍콩연금
-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급여, 봉급, 상여금, 휴가비, 사례금, 연금, 생계비 보조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제 수당(출장비, 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 등)
- 기타
  -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연금기금단체 이외의 연금 또는 적립금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부담한 출연금
  - 고용주가 종업원의 주거비용을 대신 부담한 금액
  - 스톡옵션 행사시 얻은 이득

## □ 과세소득 계산

- 과세가능소득 = 총소득 - 비과세소득  
순과세가능소득 = 과세가능소득 - 소득공제



**특별공제후 순과세가능소득 = 순과세가능소득 - 특별공제**

순과세가능소득에서 특별공제를 제외하면 특별공제후 순과세가능소득이 산출되며, 납세자가 종합과세나 부부합산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이 금액에 대해 표준세율 15% 적용

**최종과세소득 = 특별공제후 순과세가능소득 - 인적공제**

순과세가능 소득에서 위 각종 인적공제를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최종과세가능소득이 산출되고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대해 구간별로 2~17%까지 4개의 누진세율 적용

**□ 비과세소득**

- 영사관이나 대사관 직원 보수
- 사망, 장애, 은퇴로 인한 퇴직연금
- 장애연금
- 홍콩 외부에서 고용되어 받은 연금
- 영사관이나 대사관 직원 보수
- 사망, 장애, 은퇴로 인한 퇴직연금
- 퇴직, 사망, 능력상실, 서비스 종료로 인한 의무적립기여금
- 연방정부 보수, 군인연금, 참전 군인의 보수, 전쟁기념연금
- 교육수당
- 배우자나 전 배우자로부터 받은 양육비나 이혼위로금
- 선박이나 비행기 승무원
- 휴일보장수당(휴일여행 실제소요 경비 초과금액은 과세)

**□ 소득공제**

- 지출 및 비용공제(가사비용, 개인비용, 자본비용 제외)
- 본인 교육비 공제(고용을 위한 자기개발교육 및 시험관련 비용 등, 연 HKD 80,000한도, 인정된 교육기관만 공제가 가능,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하지 않고 6년간 보관이 원칙)



- 감가상각(과세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 제한적용)
- 결손금 이월공제
  - 종합과세 신청자의 경우 이월공제는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며, 초과결손금은 납세자가 부부합산과세를 선택한 경우 배우자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도 공제가 허용됨
- 기타공제
  - 업무관련 비영리목적 협회나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 업무관련 접대비(업무관련임을 납세자가 입증)
  - 의료비는 공제불가

#### □ 특별공제

- 승인된 자선기부금(순과세가능소득의 35% 한도, 이중공제 불가)
- 부모 등에 대한 거주 간호시설 비용
  -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 조부모나 장애를 가진 부모, 조부모에 대한 거주 간호시설 비용을 지불한 경우
  - 거주 간호시설에 지급된 비용을 공제
  - 부양가족공제와 **이중공제 불가**
  - 납세자의 과세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납세자가 공제가능 (한도 HKD 80,000)
- 주택대출이자
  - 최대 HKD 100,000까지 20년간 공제가능
- 퇴직제도 기여금
  - 최대 HKD 17,500까지 공제 가능, 자영업자가 낸 기여금과 사업소득세 공제를 받은 기여금은 **이중 공제 불가**



□ 인적공제

○ 기본공제

구 분	공 제 금 액	비 고
미 혼	HKD 132,000	
기 혼	HKD 264,000	

○ 가족관계에 따른 공제액

구 분	공 제 금 액	비 고
1명~9명의 자녀가 있는 가족	자녀1인당 HKD 100,000	2016~2017년 기준
60세 이상 노부모 봉양 가족	HKD 46,000	1인당
55세~59세 노부모 봉양 가족	HKD 23,000	1인당
형제나 자매 동거	HKD 33,000	1인당
장애인 동거	HKD 66,000	1인당

- 기혼자 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부부합산과세를 신청했거나 종합과세를 신청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
- 부양부모(조부모)공제는 납세자(납세자의 배우자 포함)가 실제 부양할 경우에 공제가 가능
- 부양형제자매공제는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18세 이상~25세 미만으로 대학(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에 전임교육(full time education)을 받는 경우 공제가 가능
- 자녀공제는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18세 이상~25세 미만으로 대학(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에 전임교육(full time education)을 받는 경우 공제가 가능 (입양, 의붓 포함)

□ 세율 및 세액계산

- 순과세가능소득에 대해 표준세율인 15%로 과세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인적공제를 적용한 후 누진과세율(2~17%)을 적용



<과세방식>

- ① 순과세가능소득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거나
- ② 누진세율과 인적공제가 적용되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방식, 이는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과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부의 개별적 소득에 대해 과세할 때보다 부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이 더 유리할 때 적용
  - 공제가능액이 과세소득을 초과할 때
  - 각각의 과세소득에 대해 각각 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과세부담이 줄어들 때

※ 종합과세

급여소득세, 사업소득세, 재산세에 대해 각각 세금을 분리해서 부과하지 않고, 모두 합하여 과세하는 방식

<이점>

- 누진과세와 인적공제 이점이 있음(인적공제는 급여소득자에게만 해당하므로 특정 납세자만 혜택을 봄)
- 종합과세하에서는 재산소득세 산정시 이자비용 인정됨
- 사업소득세에서 손실액 발생시 과세가능 급여소득세나 재산세 공제효과
- 자산기부금 공제한도(35%)가 총소득 기준으로 계산되어 공제액이 증가되는 효과
- 사업소득세나 재산소득세만 존재하는 경우 단일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 가능

○ 세율(평균 적용세율 15%초과 불가)

과세소득	세율	세액
HKD40,000이하	2%	HKD800
HKD40,000초과	7%	HKD2,800
HKD80,000초과	12%	HKD4,800
HKD120,000초과	17%	

□ 신고 및 납부

- 개인은 5월 초 개인소득 신고시 합산 신고하고 개인이외의 경우에는 매해 4월 초 해당 과세연도 동안 받거나 받아야 할 임대소득을 확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득신고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 소득 신고서 발행을 요청하여 신고하여야 함
- 고용주의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며 매년 4월에 소정 양식에 따라 지급한 급여 등 소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종결

<급여 세금 수당, 공제 및 세율표>

Allowances, Deductions and Tax Rate Table							
<b>1. Allowances</b>							
Year of Assessment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onwards #
	\$	\$	\$	\$	\$	\$	\$
Basic Allowance	108,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32,000	132,000
Married Person's Allowance	216,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264,000	264,000
Child Allowance (For each dependant) the 1 <sup>st</sup> to 9 <sup>th</sup> child	60,000	63,000	70,000	70,000	100,000	100,000	100,000
For each child born during the year, the Child Allowance will be increased by	60,000	63,000	70,000	70,000	100,000	100,000	100,000
Dependent Brother or Sister Allowance (For each dependant)	30,000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37,500
Dependent Parent and Dependent Grandparent Allowance (For each dependant)							
Parent / grandparent aged 60 or above or is eligible to claim an allowance under the Government's Disability Allowance Scheme	36,000	38,000	38,000	40,000	40,000	46,000	46,000
Parent / grandparent aged 55 or above but below 60	18,000	19,000	19,000	20,000	20,000	23,000	23,000
Additional Dependent Parent and Dependent Grandparent Allowance							
Parent / grandparent aged 60 or above or is eligible to claim an allowance under the Government's Disability Allowance Scheme	36,000	38,000	38,000	40,000	40,000	46,000	46,000
Parent / grandparent aged 55 or above but below 60	18,000	19,000	19,000	20,000	20,000	23,000	23,000
Single Parent Allowance	108,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32,000	132,000
Disabled Dependant Allowance (For each dependant)	60,000	66,000	66,000	66,000	66,000	66,000	75,000
<b>2. Deductions - Maximum Limits</b>							
Year of Assessment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onwards #
	\$	\$	\$	\$	\$	\$	\$
Expenses of Self-Education	60,000	60,000	80,000	80,000	80,000	80,000	100,000
Elderly Residential Care Expenses	72,000	76,000	76,000	80,000	80,000	92,000	92,000
Home Loan Interest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Mandatory Contributions to Recognized Retirement Schemes	12,000	14,500	15,000	17,500	18,000	18,000	18,000
Approved Charitable Donations [(Income - Allowable Expenses - Depreciation Allowances) x Percentage]	35%	35%	35%	35%	35%	35%	35%
<b>3. Table Showing Tax on Net Chargeable Income</b>							
Tax payable is calculated at progressive rates on your net chargeable income or at standard rate on your net income (before deduction of the allowances), whichever is lower. It is further reduced by the tax reduction, subject to a maximum.							
Net Chargeable Income = Income - Deductions - Allowances							
Year of Assessment	2011/12 to 2016/17			2017/18 onwards #			
	Net Chargeable Income	Rate	Tax	Net Chargeable Income	Rate	Tax	
	\$		\$	\$		\$	
On the First	40,000	2%	800	45,000	2%	900	
On the Next	40,000	7%	2,800	45,000	7%	3,150	
	80,000		3,600	90,000		4,050	
On the Next	40,000	12%	4,800	45,000	12%	5,400	
	120,000		8,400	135,000		9,450	
Remainder		17%			17%		
Standard Rates of Tax		15%			15%		
<b>Tax Reduction</b>							
Year of Assessment	% of Tax Reduction	Maximum Per Case (\$)		Applicable Tax Types			
2011/12	75%	12,000		salaries tax, profits tax and tax under personal assessment			
2012/13 & 2013/14	75%	10,000		salaries tax, profits tax and tax under personal assessment			
2014/15	75%	20,000		salaries tax, profits tax and tax under personal assessment			
2015/16	75%	20,000		salaries tax, profits tax and tax under personal assessment			
2016/17	75%	20,000		salaries tax, profits tax and tax under personal assessment			

자료원 : 홍콩국세청 홈페이지

## <전자 세금 신고 안내>

### eTAX

The gateway to IRD's electronic services

By a single login to your eTAX Account at [www.gov.hk/etax](http://www.gov.hk/etax), you can keep track of your tax position, manage your tax affairs and communicate with us anytime anywhere.

Discharge your tax obligations more easily and conveniently

- ◆ Checking any outstanding tax return or tax payment
- ◆ Updating your particulars and preferences
- ◆ Filing tax return and obtaining instant estimation of Salaries Tax payable
- ◆ Viewing tax assessment and requesting amendment
- ◆ Applying for holdover of provisional tax
- ◆ Viewing e-receipt for tax payment

Opt for electronic notices

- ◆ Notice to file tax return
- ◆ Notice of assessment

Receive e-alert messages before due date f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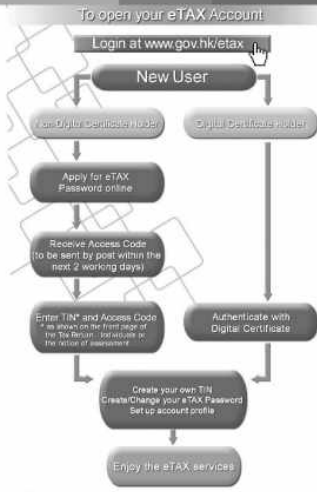
- ◆ Tax return filing
- ◆ Tax payment

Enjoy other online services for

- ◆ Filing of Profits Tax Return
- ◆ Filing of Property Tax Return
- ◆ Filing of Employer's Return
- ◆ Stamping of property documents
- ◆ Business Registration
- ◆ Payment

You can rest assured that your personal data are secure because eTAX is operated on a highly secured platform employing strict security standards and procedures to prevent unauthorized access and protect data privacy.

#### To open your eTAX Account




**You may**

- ◆ Create a TIN of your own choice
- ◆ Help protect the environment by selecting to receive electronic notices and documents related to tax return filing, assessment and tax payment

**Need help?**

Refer to the Online Demo, Frequently Asked Questions and eTAX Help Desk information at the web site.

如需本署協助中文版, 請致電 (852) 8022 或專用「專線傳真服務」(296 8001, 8544 1128)



### ELECTRONIC FILING

**Tax Return - Individuals**

- Pre-filing of data
- Estimation of Salaries Tax payable
- Automatic extension for filing

Convenient Secure Green Easy Fast

For details please visit [www.gov.hk/etax](http://www.gov.hk/etax)

### Added Benefits


- ▶ File your Tax Return - Individuals through the Internet and enjoy:
  - Automatic extension of 1 month for filing;
  - Pre-filing of data\* including income amount details\*, if applicable, to save your time in completing the tax return;
  - Saving of partially completed return for further completion within 4 months; and
  - Computation of your estimated Salaries Tax payable\* before submission to help you optimize total tax payable.

\* Available for the tax return for the year of assessment 2016/17 only  
 \* Dependent on when the Employer's Returns are filed.


### Simple Criteria

- ▶ An eTAX Account holder who is required to file a tax return for 2014/15, 2015/16 or 2016/17 can file through the Internet if he / she in that year of assessment:
  - does not claim exemption in respect of part or all of his / her salaries income;
  - does not own any sole proprietorship business with gross income of more than \$2,000,000;
  - does not have any deemed assessable profits pursuant to section 20A2 and/or 20A3 of the Inland Revenue Ordinance;
  - has not obtained an advance ruling on any of his / her tax matter in relation to that year; and
  - does not claim any double taxation relief pursuant to an arrangement specified under section 49(1) or 49(1A) of the Inland Revenue Ordinance in relation to that year.

**Environment-friendly  
 Always available  
 Secure  
 @Your service**



### GovHK 香港政府一站通



### Easy Access

Via [www.gov.hk/etax](http://www.gov.hk/etax)

- choose "eTAX Account" \*
- click "Open/Login eTAX Account now"
- select "Filing of Tax Return-Individuals" under "Top eTAX Services"
- login eTAX Account

\*See overview for eTAX Account opening procedures

OR

Via [www.gov.hk/mygovhk](http://www.gov.hk/mygovhk)

- login MyGovHK Account \*
- select My Online Services/Form
- access eTAX Account (Pre-registration of eTAX Account is required)

\*Visit [www.gov.hk/mygovhk](http://www.gov.hk/mygovhk) for MyGovHK Account registration

### Easy Steps

- Step 1 Read important Notes
- Step 2 Complete the Tax Return  
Check the pre-filled data and update/fill in relevant parts of the tax return requiring completion.
- Step 3 Sign and Submit  
Check accuracy of data before signing the tax return by eTAX Password, MyGovHK Password or digital certificate.
- Step 4 Acknowledgement

### Quick Save and Retrieval

- Click the **Save/Quick** button to save the data which will be retained for 4 months
- Follow filing procedures to retrieve your return for completion

### Instant Viewing

- You can view the return and the estimated Salaries Tax computation in the Tax Position section instantly after submission

### More Information

- Related information on the left menu of the screen
- Interactive instruction in the **Guides** shown on the screen
- Online Demo
- Frequently Asked Questions

자료원 : 홍콩국세청 홈페이지



## □ 납세신고 안내 (개인)

**IR**  
Inland Revenue Department

# Guide to Tax Return- Individuals

**(BIR60) (4/2016)**

This Guide explains how to complete the Tax Return - Individuals (BIR60). Most of your questions will be answered here. Tables showing the Allowances, Deductions and Tax Rate are printed at the back of the Appendix to BIR60. If you need other information or assistance, you may:

- visit [www.ird.gov.hk](http://www.ird.gov.hk) for Related Tax Rules, Specimen of Completed Tax Return - Individuals and other information under 'Tax Information : Individuals'
- use the 'Fax-A-Form' Service (2598 6001), select the language and press the following keys to obtain: Related Tax Rules [Key (2) (5) ], Specimen of Completed Tax Return - Individuals [Key (2) (4)], Proforma Profits Tax Computation Form [IR957A(c)] [Key (2) (8)]
- mail (G.P.O. Box 132, Hong Kong) or fax (2877 1232) your written enquiries to the Assessor, quoting your file number and day-time contact telephone number
- telephone 187 8022 during the service hours (Service hours - Monday to Friday 8:15 a.m. to 12:30 p.m. ; 1:30 p.m. to 5:30 p.m. except Public Holidays)
- call at the Central Enquiry Counter at 1/F of the Revenue Tower, 5 Gloucester Road, Wan Chai, Hong Kong

For information on submission of tax return through the Internet, please visit [www.gov.hk/etax](http://www.gov.hk/etax).

자료원 : 홍콩국세청 홈페이지

## 4 재산세

### 1. 재산세(Property tax)

#### □ 납세의무자

##### ○ 홍콩에 소재한 부동산의 소유자

##### <참고사항>

-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재임대한 경우는 자산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
- 재산세가 과세되는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이 사업소득이 포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하여 소유된 경우 자산소득세는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될 수 있음. 법인의 경우 자산소득세의 면제 신청하여 사업소득세의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 부동산의 소유자

- 부동산을 직접 소유한 자
- 수익적 소유자
- 종신 부동산 임차인
- 저당권 설정자
- 건물이나 토지 위에 다른 건축물로부터 수익이 있는 자
- 지대나 이외의 다른 사용료를 얻는 토지와 건물 또는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자

#### □ 과세연도 : 4월1일부터 3월 31일



□ 과세대상

- 토지, 건물 등을 과세대상으로 함

□ 과세표준

- 부동산 사용의 대가로 과세연도에 수령할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를 바탕으로 임대료, 프리미엄, 관리비 등도 포함

※ 총임대소득

- 부동산과 부동산상의 권리 등으로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총 임대료
- 부수토지의 사용권에 대한 대가
- 과거의 회수불능임대료 회수금액
- 프리미엄
- 관리비, 수리유지비용 등

- **순과세소득금액** = 총임대소득 - 회수불능임대료(문서에 의해 증빙) - 소유자가 납부한 건물 재산세 - 수선비용 등(일괄공제 20%)

□ 세율

- 2008/09이후 15% 단일세율
- 세액 = 순과세소득(과세소득-공제항목) × 세율(표준세율 15%)

□ 신고 및 납부

- 매년 5월 초 개인소득 신고시 합산 신고 및 개인 이외의 경우매년 4월 초 납세의무자는 해당 과세연도 동안 받거나 받아야 할 임대소득을 확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면제

- 홍콩에 소재하는 정부기관 및 유사기관



- 영사관계법에 따른 재외공관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
- 법인은 임대수입에 대해 재산세의 면제를 신청하고 사업소득세의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법인 이외의 개인이 영업의 일부로서 부동산임대를 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 상당액과 기납부한 재산세 상계 가능(초과시 환급)
- 공익목적의 모든 자선단체

## 2. 부동산세(Government Rent · Rates)

- 홍콩은 모든 토지가 정부소유로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로 건물소유주에게 연간 임대료 상당액의 3/100을 토지재산세로 부과, 건물재산세는 임대료 상당액의 5/100를 부과(연간 4회로 분할 납부)

## 3. 인지세(Stamp Duty)

- 1) 종가인지세 세율 인상(2013년)
  - 과열된 부동산 시장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
  - 2013.2.23.일 거래분부터 적용되며 개정된 종가인지세 세율은 현행 HKD 100~4.25%에서 1.5%~8.5%로 인상됨
  - 단, 취득 시점에 다른 거주용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는 홍콩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기존 세율이 적용
- 2) 특별인지세 개정(2012년)
  - 2012.10.27. 이후 취득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특별인지세 세율을 5~15%에서 10~20%로 인상
  - 단기기준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매도자와 매수자는 연대납부해야 함
  - 주택매입자인지세를 도입하여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시장가격의 15%를 주택매입자 인지세로 과세



□ 납세의무자

- 특정종류의 재산거래(과세대상)를 증명하는 문서가 필요한 사람

□ 과세대상

-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
- 홍콩 주식 등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 인지세 관련 과세문서의 복사본과 상대 문서

□ 과세표준

- 과세대상 문서의 기재금액

□ 세율

- 부동산 양도관련 인지세 일반세율

부동산 가치(HKD)		요율
초과	이하	
-	2,000,000	\$100
2,000,000	2,351,760	\$100+2백만\$ 초과금액의 10%
2,351,760	3,000,000	1.5%
3,000,000	3,290,320	\$45,000+3백만\$ 초과금액의 10%
3,290,320	4,000,000	2.25%
4,000,000	4,428,570	\$90,000+4백만\$ 초과금액의 10%
4,428,570	6,000,000	3%
6,000,000	6,720,000	\$180,000+6백만\$ 초과금액의 10%
6,720,000	20,000,000	3.75%
20,000,000	21,739,120	\$750,000+2천만\$ 초과금액의 10%
21,739,120	-	4.25%





○ 부동산 양도관련 인지세 특별세율

- 2013.2.23.이후 매매되는 거래에 적용되며, 홍콩영주권자로서 무주택자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 대해 특별세율이 소급 적용됨 (내/외국인 모두 적용)

부동산 가치(HKD)		요율
초과	이하	
-	2,000,000	1.5%
2,000,000	2,176,470	\$30,000+2백만\$ 초과금액의 20%
2,176,470	3,000,000	3.0%
3,000,000	3,290,330	\$90,000+3백만\$ 초과금액의 20%
3,290,320	4,000,000	4.5%
4,000,000	4,428,570	\$180,000+4백만\$ 초과금액의 20%
4,428,570	6,000,000	6.0%
6,000,000	6,720,000	\$360,000+6백만\$ 초과금액의 20%
6,720,000	20,000,000	7.5%
20,000,000	21,739,120	\$1,500,000+2천만\$ 초과금액의 20%
21,739,120	-	8.5%

○ 특별인지세

- 3년 내에 전매할 경우 특별인지세가 적용됨 내/외국인 모두 적용)

보유기간	2010.11.26~2012.10.26	2012.10.27~
6개월 이하	15%	20%
6개월 초과~1년 이하	10%	15%
1년 초과~2년 이하	5%	10%
2년 초과~3년 이하	해당없음	10%

○ 외국인 대상 인지세(Buyer's Stamp Duty) 첫 발효(2012.10.27)

- 2012.10.27.부터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부동산 매입시 매입 가격의 1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정책이 발효됨



- 모든 부동산 자산에 15%의 균일한 비율로 적용되며 인지세와 특별 인지세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부동산의 보유기간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됨

○ 부동산 임대시 세율

임대기간		세 율
규정되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0.25%×연간 또는 연평균 임대금액
초과	이하	
-	1년	0.25%×연간 또는 연평균 임대금액
1년	3년	0.5%×연간 또는 연평균 임대금액
3년	-	0.1%×연간 또는 연평균 임대금액
임대계약서상의 보증금, 건축비 등		상당금액의 4.25%
부분이나 사본 등		각 HKD 5

○ 주식관련 거래 세율

거래성격	주식거래세
홍콩주식 거래	주식거래금액의 0.1%
주식 양도	HK\$5 + 주식거래금액의 0.2%
기타 모든 주식거래	HK\$5

□ 신고 및 납부

-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함. 인지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을 대신하는 것도 가능

□ 면제

-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대상으로 계열회사간(최소 90%를 소유) 부동산의 지분양도나 주식양도에는 인지세가 면제



#### 4. 소비세제

##### □ 주세(Duty on Liquor)

- 과세대상인 주류의 종류는 알코올도수 30% 이상인 주류와 메틸알코올 및 메틸알코올 혼합물임
- 세율은 알콜도수 30% 이상 100%,메틸알콜은 \$840/hectoliter

##### □ 담배세(Duty on Tobacco)

##### □ 유류세(Duty on Hydrocarbon Oil)

#### 5. 기타조세

도박세	경마(12~20%), 복권(25%), 풋볼(50%)
법인등록세	법인등록세율 : 0.1% 사업자 등록비 : 사업등록비 + 연간징수액(중소기업은 감면) 사업자 등록비 + 1년 : 250홍콩달러 사업자 등록비 + 3년 : 3,950홍콩달러
자동차최초등록세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차등 - 개인자동차 : 15만 홍콩달러 이하 40%, 30만 홍콩달러 이하 75%, 50만 홍콩달러 이하 100%, 50만 홍콩달러 초과 115% 택시, 버스, 특별목적 자동차 : 3.7% 오토바이 : 35% 밴 : 17%~85%
공항출국세	12세 이상 : 120 홍콩달러



## 5 - 홍콩의 세무조사제도

### □ 도입 및 세무조사 목적

- 홍콩은 조세제도가 비교적 단순하기에 납세자의 높은 수준의 납세의무 의식이 필요하며, 따라서 특별한 이유없이 잘못된 신고를 제출하는 경우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 세무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세금 추징
  - 행정적 또는 검찰기소에 의한 페널티 부과로 탈세 방지
  - 정확한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 납세자를 교육

### □ 홍콩 세무조사제도 과정

- 홍콩은 세무조사 시 The Assess First Audit Later(AFAL) System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음

과 정		주요 업무
Submission of tax return		세금신고서 제출(납세자)
Assess First Audit Later		감사대상을 추출
Three tier audit system	desk audit	문서를 통한 감사
	field audit	현장방문을 통한 감사
	investigation	심층조사
Post assessment audit and investigation		조사 및 감사 후 사후 평가



### □ The Assess First Audit Later(AFAL) System

- 선평가 후감사 시스템으로 감사전 평가를 통해 감사를 진행
- 자동화된 평가와 수동 평가를 통해 신고서를 심사하고 감사 및 조사 케이스를 선택
  - ☞ 자동화된 평가: 납세자의 신고서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데이터 입력 후 기본적인 비율과 추가적인 기준을 더하여 대상을 추출

### □ Three tier audit system

- 3단계 감사시스템으로 Desk audit(서면감사), Field audit(현장감사), investigation(세무조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IRD가 복잡한 조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Desk audit(서면감사)
  - 평가시스템을 검사하는 과정으로 서면 검사시 세무공무원은 이익 또는 수입에 대하여 신고내용이 정확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함
  - 세무공무원은 서면으로 신고내용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요구받은 정보를 제출해야 함.
- Field audit(현장감사)
  - 현장감사는 납세자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장부를 검사하여 세금신고서의 적정성을 확인함.
  - 현장감사는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에 제출된 세금신고서의 평가에 초점을 맞춤
- Investigation(조사)
  -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 심층조사를 하며, 검찰 기소를 통해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조사는 일반적으로 조사가 개시되는 과세연도의 6년전부터 하며, 사기나 고의적인 탈세인 경우 10년까지 연장 할 수 있음



○ 선정

- AFAL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현장감사관과 조사관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선정되거나 무작위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도 선정될 수 있음

- 주식회사 계정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한정된 경우
- 기업이 이유없이 매출 또는 이익 비율을 낮추는 경우
- 지속적으로 무신고,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
- 적정한 장부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
- 세무직원의 정보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통지

- 현장감사 및 조사를 받을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사전통보를 받으며 납세자는 조사대상연도를 확인해야 함
- 납세자는 최초면담 장소와 시간을 정하기 위해 현장 감사관과 조사담당관에게 연락을 해야함
- 납세자는 최초 면담과 다음 면담시 세무대리인을 참석시키는 것이 좋음

○ 세무대리인 지침

- 세무대리인은 금융거래, 은행계좌, 기타 다른 금융 기록에 대하여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함
-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협력을 받음
- 세무대리인은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해야 함

- 기업의 장부
- 홍콩 및 해외에서 사업중인 기업과 개인의 은행계좌
- 납세자가 홍콩 및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자산, 투자자산, 사업용 자산 및 기타 자산
- 정지된 은행계좌와 특정 자산
- 제출한 모든 세금 신고서의 요약(증빙첨부)
- 납세자의 모든 가족구성원의 이름



○ 최초 면담

- 세무서에서는 적어도 두 개의 부서가 최초 면담에 참석하며 납세자에게 처벌에 대한 세법규정과 신고서의 잘못된 부분을 확인시킴
- 납세자는 이익과 수입에 대하여 누락하고 은닉한 방법을 명시할 것을 요구받고, 재무제표와 축소 보고한 부분을 수정할 합리적 시간이 주어짐

○ 현장 방문

- 현장방문시 적어도 두명의 현장감사관이 방문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의 성격 또는 규모
- 사업운영 방법
- 사업에서 사용하는 회계 및 장부
- 납세자와 관련인의 재정 문제
- 납세자와 가족의 생활비용

- 현장 감사는 업무에 따라 날짜가 다를 수 있으며. 간단한 감사의 경우 최초 면담일로부터 14일내 끝나도록 목표를 삼고 있으나 복잡한 감사의 경우 3개월~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음

○ 장부와 기장의 검사

- 현장감사관은 거래 및 제출된 신고서에 대한 장부 기록을 적정하게 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장부를 요청할 수 있음
- 현장감사관은 회계장부를 검토하나 아래와 같은 계정을 특별히 주의 깊게 검사하므로 평소 회계장부 작성시 유의해야 함

- 매출계정
- 매입계정
- 관리자와 소유자의 당좌계정
- 비정상적으로 불균형한 계정
- 임시 계정
- 장기미지급 계정



○ 중간면담

- 현장감사 또는 세무조사시 조사관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과 계속적으로 접촉하며, 진행상황, 과세가능한 이익의 기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인터뷰를 할 수 있음
- 정보와 의견의 교환을 통해서 합의안이 작성되며 합의안에동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현장감사관 또는 세무조사관은 인정과세를 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불복을 할 수 있음

○ 감사와 조사의 종결

- 현장감사관, 세무조사관에 의한 초안
  - 현장감사관 및 세무조사관에 의해서 초안이 작성되면 납세자에게 전달되고 합의하기 위한 면담을 함. 면담과정에서 현장감사관 또는 세무조사관은 감사 및 조사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함
  - 면담시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의견제시 또는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논쟁은 수용가능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논의됨
- 납세자/세무대리인에 의한 초안
  - 대표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재무제표의 수정과 함께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안서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보고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함

○ 합의안

- 합의안에는 감사 및 조사 결과 추가적으로 과세되는 이익 또는 소득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납세자가 합의안에 동의할 경우에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합의안에 서명함
- 감사 또는 조사관은 추가 소득 및 이익에 대하여 납세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상기시킴



## 6 - 홍콩의 조세범 처벌 규정

### □ 개요

- 홍콩의 모든 납세자는 국세청에 정확하게 신고기한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처벌규정에 관한 권한이 주어지며 처벌되는 행위의 주요 범주는 다음과 같음
  - 부정확한 세무정보의 제공 및 신고서 제공의무 불이행
  - 사기 및 고의적인 탈세행위
  - 비밀유지 위반 행위

### □ 신고와 관련된 벌금

- 납세의무자가 타당한 사유없이 국세청에 홍콩세법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벌금이 부과됨
- 또한 이와 같은 행위를 선동하거나 도와준 사람도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벌금 등을 납부하여야 함

- 신고서 일부사항 누락
- 자산보고서 미제출
- 고용인의 보수에 대한 보고서 미제출
- 국세청장의 요청정보 미제출
- 조사 및 심리의 질문에 대한 답변 불이행
- 재산세 면제 회사의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 변경에 관한 고지 불이행
-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홍콩 내 비체류시 고지 불이행



- 지연신고(Late Returns)

- 타당한 이유없이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서를 지연 제출하는 경우에는 벌금 등을 납부하는 데 최대 지연납부 벌금은 Level 3 (HKD 10,000) 임

※ 타당한 이유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세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선의에 따라 행동했다고 간주되면 타당한 이유가 성립된다고 본다. 세무대리인에게 받는 전문적인 서비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신고, 진정한 실수, 질병등은 타당한 이유에 포함된다.

- 무기장(Failure to keep proper business record)

- 홍콩세법 §51C에 따라 필요한 사업기장의무를 타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는 Level 6 (HKD 100,00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하여야 함.
- 또한 법원은 납세자에게 홍콩세법 §51C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기장의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 잘못된 정보의 제공

- 타당한 이유없이 납세자가 국세청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Level 3(HKD 10,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법행위를 선동하거나 도와준 사람도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벌금이 부과됨
- 세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보를 축소신고하거나 누락 시키는 방법으로 잘못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 탈세 등 (Fraud and wilful evasion)

- 탈세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범한 자는 Level 3 (HKD 10,000)의 벌금을 내야하거나,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함

- 신고서 작성시 소득 등을 은폐



- 공제 신청시 거짓 증빙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및 장부의 허위기록 등 잘못된 정보
- 만약 납세자가 기소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가중형량으로 Level 5 (HKD 50,000)의 벌금을 내거나 3년의 징역에 처해짐
- **비밀유지 위반행위 (Breach of secrecy)**
- 홍콩 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감정원·법원 등 허가된 공무원 등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세무공무원이 비밀유지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Level 5(HKD 50,000)의 벌금이 부과됨
- **가산금 (Surcharge)**
-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본래의 고지세액에 5%의 가산금을 부과하며, 납부기한이 6개월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10%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됨



## 7 - 홍콩의 조세회피방지규정

### □ 배경

- 홍콩 세무당국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IRO에 Section 61(특정 거래 및 양도의 무시), Section 61A(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한 조작된 거래), Section 61B(결손기업을 이용한 조세 회피)를 규정하고 있음
- DIPN(Department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 : 국세청 해석과 실무지침) 제15호 The general anti-avoidance provision(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에서 IRO에 Section 61,61A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음

### □ 특정 거래 및 양도의 무시(Section 61)

- 세무공무원은 특정거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경우 이루어진 거래 또는 양도를 무시하고 과세할 수 있음
  - 거래가 인공 또는 가공 경우
  - 양도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상기 내용이 적용되기 위한 필수 요건은 아래와 같음

- 거래가 존재해야 함
- 거래가 관련 납세자의 납부해야할 세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음
- 거래가 인공 또는 가공이거나 양도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

### □ 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한 조작된 거래(Section 61A)

- 홍콩 세무당국(IRD)는 고의적인 세금회피계획을 없애기 위해 The general anti-avoidance provision(Section 61A)에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도입함



- Section 61A 규정은 세금혜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적용되며, Section 61A가 적용되면 그 거래는 시작되거나 수행되지 않는 것처럼 평가함

- Section 61A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함

- 거래가 있어야 함
- 납세자가 세금혜택을 얻어야 함
- 7가지 특별한 사항이 고려되며 납세자가 세금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가 시작되고 수행되어야 함

- 세금회피

- 세금회피를 하기 위한 세금혜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됨

- 납세자로부터 발생한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 회피
-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후년으로 세금 전가함에 따른 납세의무 연기
- 정상거래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래 보다 낮은 수준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과세대상 수입의 감소

- 7가지 특별한 사항

- ① 체결 또는 수행된 거래의 방법
  - 구조화된 특정 거래의 방법, 거래의 배경, 거래의 시작시점, 전문 고문의 추진 여부 등을 고려함
- ② 거래의 관례와 실체
  - 관례란 거래로부터 발생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실체는 법적 효과와 반대로 거래로부터 발생한 상업적인 최종 결과를 뜻함
- ③ 거래에 의해 이 규정의 시행 결과가 성취될 것
  - 결과는 가능한 Section 61A의 적용을 제외한 규정의 정상 수행중이고 거래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 결과임
- ④ 거래로부터 변화한 관련인의 재무상태
  - 거래 전후의 관련인의 재무상태를 비교함



- ⑤ 거래로부터 변화한 관련인의 관계자(사업, 가족 등 여부)의 재무상태
  - 납세자와 모든 가족 또는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로부터 발생된 관계자의 재무상태의 변화의 중점을 둠
- ⑥ 거래로부터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정상거래간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인지 여부
  - 발생된 실제 권리·의무가 정상거래에서 만들어진 일반적인 권리·의무와비교
- ⑦ 홍콩 밖에서 수행하는 사업 또는 역외기업에 대한 거래의 참여
  - 홍콩 밖에 통합된 거래에 대한 특별한 수단의 검사가 필요

- 상기 내용을 검토하여 Section 61A의 적용이 필요할 경우 세무당국은 거래가 없었던 것처럼 평가하거나 세제혜택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평가함
- 따라서 세금혜택을 받기위한 가공 거래나 이익의 발생시점을 변경시키는 분식회계를 할 경우 기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함

**□ 결손기업을 이용한 조세회피(Section 61B)**

- 홍콩 세법은 기업이 결손이 발생하면 발생한 다음연도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이월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납세자들이 결손기업을 매매하여 이후 발생될 이익에 대하여 상계시켜 세금혜택을 받아 조세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세무당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지분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이월결손금의 상계를 제한할 수 있음
  - 고려 사항

- 기업의 상품과 성격
- 수입과 지출 패턴
- 관리 및 제어
- 주식을 양수한 구성원에 대한 배경

- 세무당국에서 주식변동사항을 확인하므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주식거래시 기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함



# 홍콩의 국제조세

# IV

- 1. 이전가격 관련규정 / 118
- 2. 홍콩 이전가격세제 심층연구 / 119
- 3. 홍콩 이전가격세제 대응책 / 133
- 4.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 134
- 5. 한국 - 홍콩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 160





# 1 이진가격 관련규정

## □ 홍콩 이진가격세제 연혁

### ○ 이진가격원칙(Transfer pricing)에 관한 규정

- IRD는 1947년 내국세입법(Inland Revenue Ordinance)에 홍콩 세무당국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독립기업의 실제 거래에 근거하여 조정권한이 없음
- 내국세입법에서 이진가격문제를 대응을 위한 조항은 Section20 「특정 비거주자에 관한 의무」가 있으나 실무집행에 한정이 있어 크게 유용하지 못함

※ Section 20

비거주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주자와 사업을 하며 홍콩에서 득한 이익에 관해 거주자에게 무이익 또는 통상 가득이 기대되는 이익 보다도 적게 되도록 계약이 되어 있을 경우에 당해 비거주자가 당해 거주자와의 관계에서 종사하는 당해 사업은 홍콩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거주자가 당해 비거주자의 대리인처럼 당해 거주자의 명의로 당해 사업으로부터의 이익에 관해 당해 비거주자는 평가 및 과세되고 내국세입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 따라서 홍콩 세무당국은 이진가격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DIPN(Department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 : 국세청 해석과 실무 지침) 46호에 Transfer pricing guidelines - Methodologie and related issues (이진가격가이드라인-방법과 관련문제)을 공표함
- DIPN 제46호는 이진가격에 대한 포괄적인 구조와 특수관계자의 정의, 이진가격산정방법, 이진가격의 문서화, 그룹 내 용역제공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2 - 홍콩 이전가격세제 심층연구

### □ DIPN 46의 개요

#### ○ 특징

- 내용에 따라 109개 단락으로 이루어졌으며(우리나라 국조법 14개 조문) 되어 있음
- 기본적으로 세법과 상반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당국은 OECD 이전가격지침을 준용

※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는 DIPN 48에 별도로 규정

내용	단락
도입	1~8
특수관계자	9~14
이중과세의 제거	15~16
규정 및 사례	17~28
고정사업장	29~35
정상가격 원칙	36~47
비교가능성 판단	48~65
이전가격산정방법	66~70
이익의 원칙	71~72
조세 회피	73~84
문서화	85~89
그룹내 용역 제공	90~108
결론	109

### □ 도입

- 이전가격은 특수관계자간의 재화, 용역, 무형자산의 거래에 대하여 관련이 있으며 이중과세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홍콩은 현재까지 벨기에, 태국, 중국, 룩셈부르크, 베트남과 DTA(이중과세방지협정)를 체결하였으며 특수관계자와 거래 정상가격을 의무적으로 사용
  - 앞으로 체결될 DTA에서도 정상가격의 의무적 사용 규정이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이전가격원칙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의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비교함
-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이전가격결정시 정상가격원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 정상가격을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됨

□ 특수관계

- 정상가격원칙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특수관계자는 OECD 모델 제9조 1항 입장 존중함

※ OECD 모델 제9조 1항

- 한 체약국의 기업이 상대방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 같은 사람들이 한 체약국의 기업과 상대방 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자본에 참여, 그리고 위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체약국 기업들 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 관계에 있어 독립 기업 간에 설정된 것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담되는 경우 그 조건이 없었더라면 두 기업 중 한 기업이 소득이 되었을 것이 그 조건으로 인해 그 기업의 소득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 소득은 그 외 소득에 가산하여 이에 따라 과세

- 두 기업중 하나의 기업이 OECD 모델 제9조 1항에 해당되면 두 기업은 특수관계기업에 해당
-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지분관계에 근거한 판정기준이 없고 OECD 모델 9조에 따르므로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함



## □ 이중과세의 제거와 조정

-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체결국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대해 상대국에서 소득의 증액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IRD는 OECD 모델 9조 2항에 따라 이중과세 제거하기 위해 노력

일방체약국이 그 국가거주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기업에 과세한 이윤을 포함시키고 - 그리고 그에 따라 과세하고 - 그렇게 포함된 이윤이 그 2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적인 기업간에 인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그 일방체약국기업에 발생했을 것인 경우에는 그 타방체약국은 동 이윤에 대한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 조정에는 본 협약의 다른 조항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양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상호협의를 거친다.

- 이중과세의 제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DTA국가간 상호협의를 거쳐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짐
- D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홍콩에서 국제법에 근거한 이중과세를 구제할 수단이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 □ 고정사업장

- 홍콩에 비거주 기업이 홍콩에 고정사업장을 두는 경우 이익과 비용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며 다음의 과정이 포함됨

- 다양한 장소에서 수행되는 비거주기업의 중요한 활동과 책임을 식별
- 고정사업장이 홍콩에 있다고 상정
- 홍콩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되는 중요한 활동과 책임을 식별
- 고정사업장의 거래시기 및 가치, 유형, 범위를 식별
- 고정사업장의 구조와 특성 확인
- 귀속목적에 적합한 이전가격방법을 선택
- 적합한 이전가격방법을 적용 및 정상가격결과를 확인
- 지원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검토 프로세스를 구성

- 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때 세무당국은 비거주자 기업이 홍콩에서 발생한 별도의 이익의 원천을 확인
  - 경제적으로 중요한 활동 또는 책임의 귀속에 따라 달라짐
  - 홍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이익 관련하여 장부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으로 중요한 활동 또는 책임이 홍콩에서 수행되는 경우
    - ☞ 홍콩의 고정사업장의 수익으로 인식
  - 이익이 국외의 중요한 경제적으로 중요한 활동 또는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
    - ☞ 해외의 또 다른 고정사업장 또는 본사의 수익으로 인식

## □ 정상거래 원칙

- 동일한 상황에서의 특수관계기업과 비특수관계기업과의 비교하며 정상거래 원칙에서는 비특수관계자와 거래와 같은 조건(가격, 사용료, 기타 요금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적용할 것을 요구
- OECD 이전가격지침은 정상거래 원칙에 대한 설명

OECD회원국들이 동의한 국제적 기준은 과세목적상 이전가격을 결정하는데 이용되어야 한다. OECD 조세조약모델 9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두 특수관계 기업들간의 상업적, 금융적 관계에 있어서 정상거래들간에 성립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여된 경우에, 그 다른 조건이 아니었다면 그 특수관계기업들 중 어느 한 기업에 발생되었을 이익이 그 다른 조건으로 인해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익은 그 기업의 이익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 비록 정상가격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이 정상가격원칙이 실행될 수 있음

- 특수관계기업간 거래를 특성화하고 특성화를 문서화
- 적절한 이전가격방법을 선택하고 선택을 문서화
- 적절한 이전가격방법을 적용, 정상가격 산출결과를 결정, 그 과정을 문서화
- 변화 요소에 대하여 조정을 보장하기 위한 검토 과정이 포함된 지원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그 과정을 문서화



### ○ 기능분석

- 특수관계거래를 하는 특수관계기업들과 이와 **비교가능한** 비특수관계 거래를 하는 독립거래들이 수행하는 기능(사용자산과 부담비용 고려)에 대한 분석
- 기능분석시 수행 기능, 사용 자산, 위험 가정 등을 분석하며, 두 개이상의 비즈니스 전략이 사용되는 경우 시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비즈니스 전략마다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임
- 기능분석은 이전가격방법결정이 아니라 **비교가능성의 평가에 도움을 주는 수단임**

### ○ 비교가능성 분석

- 일반 거래 및 비특수관계자 거래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비교를 비교가능성 분석이라함
- 일반 거래 및 비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정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가격이 특수관계자 거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특수관계거래가 특수관계거래와 실제로 비교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비교가능성 분석은 정상가격원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

## □ 비교가능성 결정

### ○ 비교가능성 결정 요소

- **비교가능성 결정 요소는 5가지로 다음과 같음(OECD 규정 준용)**

-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 기능분석 - 수행 기능, 사용 자산, 위험 가정
- 계약조건
- 경제와 시장 환경
- 사업전략

-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차이는 시장가치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화 또는 용역 특성의 비교는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 거래의 비교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유용
  - 중요 종류 : 무형자산, 상표권, 디자인 등
- 기능분석 - 수행 기능, 사용 자산, 위험 가정
  - 공개시장에서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간략한 기능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나 무형적인 요소가 포함된 경우 분석은 더 철저히 해야함
  -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기능을 수행할지라도 거래의 각 당사자들에게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수행 기능의 빈도수, 성격, 가치 등이 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여 기능분석 수행함
- 계약조건
  - 비특수관계자간 계약조건에서 일반적으로 책임, 위험, 수익 등을 당사자간에 어떻게 배분하는지 규정하며 계약조건은 가격을 합의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영향을 미치는 계약조건의 예로는 신용과 지불조건, 보증, 기간, 수량 등이 있음
- 경제와 시장 환경
  - 같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라도 시장에 따라 정상거래가격은 달라질 수 있음
  - 경제와 시장 환경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음이 요구됨
    - 비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자가 활동하는 시장들을 비교할 수 있어야함
    - 차이점이 있다면 가격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함



○ 사업전략

- 유사한 상황에서 다국적기업의 모회사에 의해 공식화된 특수관계자 사업전략과 비특수관계자의 사업전략을 비교하므로 다국적기업의 사업 전략에 비특수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함
- 예를들어 시장침투전략은 새로운 시장에 침투하거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낮은 가격을 일시적으로 산정하여 수익이 줄고 비용을 발생하는 전략으로 비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자와의 전략 참여 여부가 다를 수 있음

□ 정상가격 산출방법

○ 정상가격 산출방법 종류

구 분	산출방법
전통적 거래방법	비교가능제삼자가격법(CUP)
	재판매가격법(RP)
	원가가산법(CP)
거래이익방법	거래순이익률법(TNMM)
	거래이익분할법(PSM)

○ 전통적 거래방법

- **비교가능제삼자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 비교가능제삼자가격법은 특수관계거래에서 이전된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비교가능 상황에서 비교가능한 비특수관계자의 거래가격과 비교하는 방법임
  -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임
  - 모든 요소가 고려되지만 상품, 계약 조건, 시장 상황, 경제 상황의 유사성이 제일 중요한 요소임





- 특수관계기업중 하나와 독립기업간 거래를 비교하는 내부비교대상과 제3자간 거래를 비교하는 외부비교대상이 있지만 내부비교대상을 더 선호함

- 적합한 적용 대상

- 특수관계인 본지점간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 무형자산의 사용료(ex : 상표권, 디자인, 저작권 등)
- 상장주 거래

- 적용 사례

정밀 기계를 제조하여 벨기에 수출하는 홍콩 제조기업(HK)이 아래와 같이 판매하고 있는 경우

1) 벨기에 자회사에 100만달러에 판매

2) 벨기에의 특수관계 없는 기업에게 120만달러에 판매

☞ 두 거래의 모든 비교가능성 요소가 동일하다면 내부 제3자 가격법에 의한 조정 사례를 적용하여 HK의 과세 이익에 20만 달러를 추가하는 조정이 필요

상장주를 거래하는 홍콩 HK기업 보유 주식의 가격이 홍콩 증권 거래소에서 2천만달러로 인상되었으나 해외 특수관계기업에게 1천만달러에 판매하는 경우

☞ 이 사례에서는 외부 제3자가 가격법에 의해 HK의 과세 이익에 1천만 달러를 추가하는 조정이 필요

- 비교가능 제삼자가 가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비교가능한 대상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 다른 전통적거래방법(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거래이익방법 순으로 적용
- 명백하게 정상가격결정방법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가장 정상가격을 만족하는 근사치를 나타내는 방법을 선택
- 다른 전통적거래방법(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을 사용할 시에는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함



### - 원가가산법(Cost Plus Method)

- 원가가산법은 특수관계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사용하며, 재화나 용역의 원가를 계산하고 적절한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간주
- 원가가산법상 정상가격 = 발생원가 + 통상이윤
- 통상이윤 : 통상이윤은 비교거래와 수행기능, 사용자산, 부담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비특수관계거래와 비교하여 계산됨
- 또한 통상이윤은 유사한 내부 또는 외부의 비특수관계거래를 비교·참조하여 계산되므로 거래의 비교가능성이 중요하며 비교대상간 차이가 발생시 차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적합한 적용 대상 사례

- 그룹간 반제품 판매
- 특수관계자간의 공동 시설계약, 장기 구매 및 공급 계약
- 용역의 제공

### · 적용 사례

홍콩기업 HK는 인쇄회로기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HK는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기 위한 모든 노하우를 제공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C회사는 홍콩기업과 특수관계가 없는 업체로써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여 독일 대리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외부 비교기업으로 확인된 기업C는 10%의 통상이익을 청구합니다

- ☞ 제품 한 개 생산시 200달러의 직,간접 비용이 발생하면 원가에 가산될 통상이익은 20달러임  
(ex) 200\$ × 10%

홍콩기업 HK는 시계부품 제조업체로서 시계부품은 외국 자회사 F기업에서 판매합니다. HK는 제조 작업에 대해 매출총이익의 5%의 수입을 가집니다. X, Y, Z기업은 관련없는 국내 시계부품 제조기업입니다. X, Y, Z기업은 외국 구매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제조공정에 대해 매출총이익의 3~5%의 수입을 가집니다. HK기업은 감독 및 관리비용을 운영비용으로 하고 있으나 매출원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X, Y, Z기업은 매출총이익에 상품판매의 일부로서 감독 및 관리비용을 반영합니다.

☞ 원가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X, Y, Z와 회계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되어야 함

태국회사 T는 홍콩기업 HK의 100% 자회사입니다. 태국은 홍콩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습니다. HK의 비용과 위험하에 T는 텔레비전을 조립합니다. 노하우 등 모든 구성요소는 HK에서 제공합니다. 조립되는 텔레비전이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HK에서 보증합니다. HK의 비용과 위험하에 품질을 체크하고 세계 각국으로 유통합니다.

☞ T회사의 수행기능은 순수한 제조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립 작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계산하여 원가산법 적용을 위한 기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재판매가격법(Resales Price Method)

- 재판매가격법은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이 정상거래에 재판매되는 가격에서 출발. 재판매가격에서 적절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통상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간주
- 재판매가격법상 정상가격 = 재판매가격 - 통상이윤
- 통상이윤 : 통상이윤은 비교거래와 수행기능, 사용자산, 부담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비특수관계거래와 비교하여 계산됨
- 수행기능 사용자산, 부담위험이 클수록 재판매업자의 통상이윤은 증가함
- 또한 통상이윤은 유사한 내부 또는 외부의 비특수관계거래를 비교·참조하여 계산되어야 함



- 판매시기 : 구입시기와 재판매시기가 길어질 경우 환율, 비용의 변화 등 비교시에 다른 요인이 고려되어야하기 때문에 판매시기가 짧을수록 정상가격 산출이 용이함
- 재판매업자의 독점판매권은 이익에 영향을 미치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래와 같음

- 지리적 판매범위와 대체상품의 존재
- 재판매자가 수행하는 활동 수준
- 관련 위험 등

• 적용 사례

홍콩기업 HK는 의류를 구입하고 홍콩의 다양한 소매점을 통해 판매합니다. C기업은 중동에서 여러 업체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최종구매자에게 판매하고 평균 40% 매출총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약 HK기업이 영국 본사에서 여성 의류를 구입하고 판매한 수입금액이 2억달러인 경우

※ 정상가격 = 1억 2천만 달러( 2억 - 2억 × 40%)

기업 A,B는 같은 브랜드 이름으로 홍콩에서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A는 매출가격에 보증을 포함하여 판매하고 있고 B는 매출가격에 보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보증의 포함여부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차이가 조정되어야 가능

- 거래이익분할법(Transaction Profit Methods)

- 거래이익분할법은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 양쪽이 함께 실현한 총이익(결합이익)을 배분기준에 의해 거래 당사자들간에 배분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간주
- 거래이익분할법의 종류 : 비교이익분할법, 잔여이익분할법, 기타 방법
- 결합이익 : 조건이 성립될 당시에는 실제이익이 즉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예상이익에 기초하며 공헌도분석에서 거래로 인한 총이익 또는 각 당사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잔여이익을 의미함
- 비교이익분할법 : 이익분할을 공헌도 분석을 기준으로 하며, 비교대상거래에 개입된 독립기업들이 실현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분할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특수관계거래에 참가한 각 특수관계 기업들 간에 분배됨

- 비교대상자료가 없는 경우 사용자산 및 부담위험을 감안하여 특수관계거래에 참여한 각 특수관계기업이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에 근거하여 이익을 분할
- 잔여이익분할법 : 일반적으로 결합이익을 두단계에 걸쳐 배분하는 방법으로 유사한 상황의 비교가능한 독립기업간 거래를 기준으로 계산
- 1단계 : 유사한 상황에서의 독립기업간 거래에서 실현된 시장거래 대가를 참조하여 적정한 기본 수입을 배분. 적정 기본수입은 특별히 가치 있거나 유일무이한 거래는 고려하지 않음
- 2단계 : 기본 수입을 배분하고 남은 잔여손익을 독립기업의 잔여손익 분배방법을 참조하여 환경, 요소 분석을 기초로 배분
- 특수관계인 각자가 수행한 기능, 부담한 위험, 사용한 재화가 필수적으로 고려됨
- 적용 사례

F기업은 제품을 제조하고 홍콩기업 HK에게 판매합니다. HK기업은 그 상품을 독립기업에게 재판매합니다. HK는 비즈니스활동 유형에 대한 일반적인 대가분석에 기초하여 250달러를 대가로 받고, F기업은 제조 기능에 대가분석에 기초하여 150달러를 받습니다. 나머지 이익인 600 달러는 각 기업의 무형자산에 대한 공헌도(F기업 10%, HK기업 90%)를 기초하여 할당합니다.

이익

F기업 HK기업 총이익

☞ 유형자산, 기능, 위험	150	250	400
무형자산	60	540	600
합계	210	790	1,000

- 이익분할의 기타 방법 : 자본수익률, 제품 수명주기 등을 분할기준으로 사용하여 배분



### ○ 거래순이익율법

- 거래순이익율법은 특수관계거래에서 보여주는 일정지표에 대한 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간주
- 유사한 상황의 일반거래 또는 비특수관계거래에 따른 실현결과와 비교하며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음 둘 중 한 개의 순이익이 필요함
  -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기업과의 거래로 인한 순이익
  - 두 개의 독립기업간 비교가능한 거래로 인한 순이익
- 일차적으로 순이익이 적정한가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며, 순이익률은 비교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기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 순이익률 지표
  - 세전순이익/매출
  - 순이익/매출
  - 매출총이익/영업비용
  - 순이익/주주의 자금
  - 이자 및 세전 이익/자산
  - 순이익/영업비용과 판매비용

### □ 이익의 원천

- 이익이 홍콩에서 발생한 경우 그 이익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은 “적정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공제 처리될 수 있음

홍콩 기업 HK는 중국에 설립된 자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홍콩 외 다양한 고객에게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주요업무는 홍콩에서 이루어집니다. HK기업은 시장가격보다 적게 지급하고 구입한 제품에 의해 발생한 이익은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중국 세무당국은 자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세무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이익의 원천은 분명히 홍콩 안에 있고 중국 자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세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HK기업이 이익 전체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 조세 회피

- 이전가격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에 주력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의 일환으로 매년 사업소득세 신고시 비거주자와 거래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개시하도록 되어 있음
  - 비거주자에 대한 거래(비거주자의 대리인을 포함)
  -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
  - 홍콩에서 지급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
  - 비거주자와 밀접하게 관련된 거래

## □ 문서화

- 이전가격문서화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명시적으로 문서화하기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요구할 때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충분하게 기록하는 것이 요구됨
- 조사시 국세청은 기업에게 다음 사항의 세부사항을 요구할 수 있음
  - 상업, 금융관계
  - 거래의 성격, 기간, 가격, 수량
  - 비교대상연구 수행이 가능한 거래의 규정, 조건
  - 정상가격결정방법에 대한 선택
  - 제3자 및 특수관계기업 모두 상업 계약의 조건

## □ 그룹내 용역

- 그룹내 용역은 금융, 상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며, 기본적으로 OECD이전가격지침에 정의된 원칙을 준용

### ※ OECD 이전가격지침

유사상황에서 정상거래라면, '비특수관계기업이 그러한 활동을 자신을 위하여 수행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할 것인가' 또는 '자체적으로 그러한 활동을 수행할 것인가'하는 것을 생각해 봄으로써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정상거래가 대가를 지급하거나 자체적으로 수행할 성격의 활동이 아니라면, 정상거래원칙에 따라서 그 활동을 그룹내부 용역거래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그룹내 용역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문제점
  - 그룹 내 용역거래의 존재 여부
  - 과세할 수 있는 정상가격 결정
  
-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용역을 중복제공하거나 불필요한 용역을 제공할 시에는 용역의 대가는 없는 것으로 간주
  - 예) 모회사가 자신이 필요하여 해외 자회사의 재무제표 감사를 실시하는데 그 감사가 해외 자회사의 자체적 감사활동과 중복된다면 모회사가 감사비용을 부담
  
- 배분기준 : 직접청구방식, 간접청구방식
  - 직접청구방식 : 실제 행해진 작업에 의해 작성된 타당성 있는 증거서류에 의해 계산
    - 예) 작업코드, 시간차트, 계정 등
  - 간접청구방식 : 실제 행해진 작업 대신에 다른 배분기준을 통해 계산.
    - 예) 직원수, 바닥면적 등

### 3 - 홍콩 이전가격세제 대응책



- 최근 수년동안 IRD에서 이전가격세제 정비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홍콩에서 이전가격 문제에 대한 RISK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전에 대응책을 검토해 두는 것이 좋음
  
- 과거 또는 현재 진행중인 거래에 대하여 사전 대응책으로는 이전가격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 및 특정한 후 독립기업 원칙에 따른 정상 거래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는 것이 필요





- 홍콩에서 이전가격 문서화가 의무규정이 아니지만 이전가격 설정과 관련한 현행 계약의 법적 근거 또는 과거 거래가격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
-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전가격과세의 종합적인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홍콩 세무당국을 통하여 APA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 4 —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 □ 관련규정

- 국세청의 해석 및 실무지침 제48호  
(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 - 48)
  - 최근 각국과의 조세협정체결함에 따라 이전가격세제 대응책으로 APA를 '12. 4월에 개시
  - (우리나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로 규정

### □ APA 정의

- 과세당국과 납세자 서면 약정서에 의해 적용할 정상가격산출방법과 근거를 정의한 한 협약
  - 과세당국 : 국세청 (Inland Revenue Department)



## □ 신청대상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홍콩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
  -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인
  -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법인
- 기업의 거주 여부와 상관 없음

## □ APA유형(일방, 쌍방, 다자간 모두 규정)

- 일방APA : 홍콩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APA
- 쌍방, 다자간 APA : 홍콩 과세당국과 납세자, 1개 이상의 상대방국가 과세당국 간 APA
- 홍콩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방APA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쌍방, 다자간 APA 상대방국가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 이중과세방지협정 상대 국가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 쌍방, 다자간 APA의 신청대상거래와 일치하는 거래에 대해 이중과세 비협정국가가 일방APA를 인정하는 경우

## □ APA 기간 및 신청 대상 금액

- APA의 기간
  - APA의 기간은 통상 18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DTA(이중과세방지협정)의 세무당국과의 교섭 스케줄에 따라 6개월이 연장될 수 있음
- APA의 적용 기간 : 3년 ~ 5년
- 신청 대상 금액
  - 유형자산 거래의 경우 : 연간 8,000만 홍콩달러 이상
  - 용역 거래의 경우 : 연간 4,000만 홍콩달러 이상
  - 무형자산 거래의 경우 : 연간 2,000만 홍콩달러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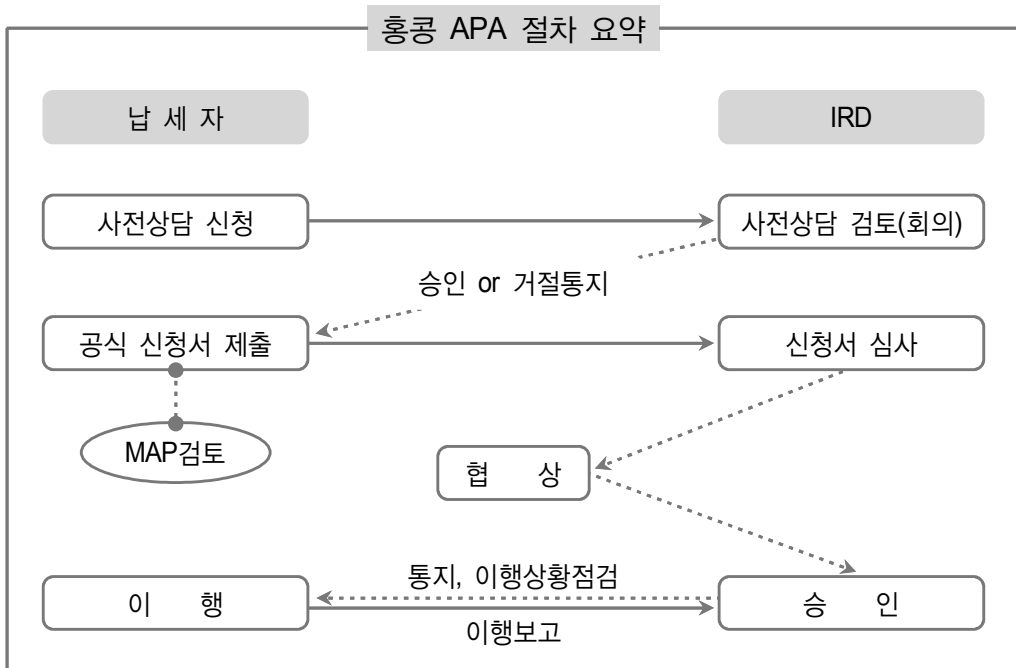
□ APA 적용원칙

- 협상(negotiate) :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정상가격원칙에 따른 법률 적용에 대한 협상에 의해 적용됨
- APA 지향(목적)
  - 과세당국의 징수비용과, 납세자의 세무협력비용을 절감
  - 사업 성격에 적합한 시장가격을 결정, 적정이익을 산출하여 정상가격에 대한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
  - 이중과세 및 탈세를 방지
  - 납세협력비용의 부담 감소

□ APA 관련 국세청 권한

- 신청서 접수, APA 협상 진행, 승인, 수정, 갱신, 철회 및 무효화, APA 이행에 대한 감독 및 조사

□ APA 절차 요약도





## □ APA진행 과정

- 총 다섯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구성은 아래와 같음

과 정	단 락
1 단계	사전상담
2 단계	정식신청
3 단계	심 사
4 단계	교섭 및 합의
5 단계	적용 및 모니터링

## □ 사전상담 - 1단계

- 사전 상담 유형
  - APA과정의 범위와 유형을 확인
  - 합의를 요하는 특정 문제를 확인
  - APA과정의 세부사항을 논의
- 사전상담 신청
  - 사전상담은 익명 또는 실명으로 할 수 있으나 익명으로 진행시 법적 구속력이 약하며 진행이 늦춰질 수 있으므로 실명으로 하는 것이 좋음
  - 사전상담 시작일 : 늦어도 APA 예상 개시일 6개월 전에 시작함
  - 사전미팅 신청일 : 납세자가 검토한 내용을 기재하여 APA proposal (APA 제안서)을 사전미팅 1개월 전까지 제출
    - ※ APA proposal(APA 제안서) 서식 별도 첨부
  - APA에 관한 시간 및 업무 계획을 기재한 APA Case Plan을 사전미팅 전까지 제출



○ 사전상담 주요 안건

- APA 성격과 범위
- APA과정의 중요 문제
- 부수적인 문제
- APA의 과정
- 특수관계자 거래의 특성
- 적정한 이전가격 방법
- 적정한 정상가격 방법
- APA Case Plan, APA proposal의 적정성
- 독립적 전문가의 조언 요구 여부
- 정보/문서 요구 여부
- 무형자산과 지적자산의 경우 발생하는 특정한 문제
- 기업과 관련기업의 감사 세부사항 제출 여부
- 무형자산과 지적자산의 경우 발생하는 특정한 문제
- 기업과 관련기업의 감사 세부사항 제출 여부

○ 사전상담 과정

- 사전상담은 APA proposal(APA 제안서) 및 APA Case Plan을 바탕으로 논의

※ APA Case Plan

APA 과정(세부사항 포함)에 대한 예상 날짜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 APA과정은 승인받은 APA Case Plan의 일정을 기본으로 진행됨.

※ APA Case Plan 서식 별도 첨부

- 사전미팅시 APA의 범위, APA 계획, 부수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여 APA 과정 승인 여부를 결정

○ 정식신청 승인

- IRD는 납세자에 대해서 신청제출의 승인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동시에 사전미팅단계의 내용을 반영한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 □ 정식 신청 - 2단계

- 납세자는 APA Case Plan(APA 계획) 또는 사전상담시 합의된 기간 안에 공식신청서를 제출
- IRD는 공식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IRD에서 APA과정을 진행할 담당팀이 구성

## □ 심사 - 3단계

- 정식 APA 신청 후 납세자가 제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사하나 필요시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음
- APA의 문서/정보 요청
  - APA의 문서/정보 요청은 구체적인 사항은 APA Case Plan에서 지정
  - 모든 서류는 영어, 중국어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외의 언어로 문서가 작성된 경우 영어로 번역하여 작성하여야 함
  - 납세자는 APA Case Plan(APA 계획)에서 합의한 기간안에 APA팀에게 제출
- 중립적 전문가 고용
  - 복잡한 이전가격문제의 경우 조언을 얻기 위해 중립적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으며, 그 전문가는 APA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에 대하여 보안이 특히 요구됨에 주의
  - 중립적 전문가는 기업의 경제 연구, 질문, 세무당국과 DTA파트너들과의 관계, 정상가격산출의 적정 여부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음
  - 세무당국은 중립적 전문가의 조언을 고려할 수 있지만 참고로만 할뿐 법적 구속력은 없음



#### □ 교섭 및 합의 - 4단계

- 심사 후 기업은 상호합의(MAP) 신청서를 IRD에 제출하며 IRD는 신청서 접수시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상대국과 APA조항에 대해 합의토록 시도
- IRD는 DTA 상대국과의 합의를 원활하고 교섭의 기초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과 합의하여 APA조항 초안을 작성
- 이중과세방지협정 상대국과의 상호합의는 상호협의담당자가 문서로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대면회의를 통해 진행
- 기업은 상호합의에 대해 가합의를 수락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상호협의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거부하는 경우 APA는 중단되며 논의 중인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해 일방APA도 제공받지 못함
- 상호협의담당자가 적정기간안에 이중과세방지협정 상대국과 상호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업과 세무당국과 일방APA 체결 가능

#### □ 체결, 실행과 모니터링 - 5단계

- 기업이 MAP합의를 수락하는 경우 IRD는 DTA 상대국과 쌍방/다자간 APA를 체결
  - IRD는 함께 쌍방/다자간 APA의 조항을 확인
  - 기업은 APA의 동의를 서면으로 확인
  - 합의가 되면 IRD는 실행을 위하여 이행 협약서를 준비하고 기업에게 발송(기업은 이행 협약서에 서명 후 회신)
- APA체결에 포함되는 기본 사항

- APA 구성원들의 상호와 주소
- APA가 적용되는 특수관계거래
- APA 적용 기간



- 특수관계거래를 위한 합의된 이전가격결정방법과 적용
- APA에서 합의된 정상가격 범위
- 이전가격결정방법 계산을 위한 용어의 정의(예 : 판매, 판매비용, 영업이익 등)
-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회계기준
- 중요한 가정
- 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따라야 되는 절차
- APA 체결로서 발생하는 기업의 의무(예 : 연례 보고서 제출)

### □ APA 개시일

- APA 개시일은 사전상담과 APA에 명시
- APA는 APA협상이 체결되는 회계연도 초부터 시작 가능
- 체결이 지연되어 기업이 요청한 APA의 개시일보다 늦어지는 경우 IRD는 APA와 합의된 방법으로 소급적용 가능

### □ 보상 조정

- 실제거래 가격과 승인된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한 조정
  - 보상조정의 범위, 가격은 APA에서 규정

### □ 중요한 가정

- 중요한 가정은 이전가격결정방법과 적용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중요함
- 중요한 가정의 종류
  - 세법과 조약 규정에 대한 가정
  - 관세, 세금, 수입규제, 정부규제에 대한 가정
  - 경제상황, 시장점유율, 시장상황, 최종판매가격 및 수량의 가정





- 기업의 위험과 기능의 성격이 반영된 거래에 대한 가정
  - 환율, 금리, 신용등급, 자본구조에 대한 가정
  - 수입 및 지출관리, 재무 및 회계 분류에 대한 가정
- 기업은 중요한 가정에 손상이 있는 경우 IRD에 가능한 빨리 알려야 하고  
증명서류를 제출
- ※ 미제출시 APA가 취소될수 있으므로 손상 등 변경이 있는 경우에 증명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용이함

#### □ 연례보고서(ACR) 제출의무

- 매년 세금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APA담당부서에 제출
-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기본 내용

- APA 적용되는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각각의 설명  
(ex : 상품판매 비용, 용역, 사용료 등)
- 중요한 가정의 손상 여부
- 각 특수관계거래를 다루고 있는 세금 관할권, 이전가격 결정방법, 이익  
수준지표, 합의된 범위
- 각 특수관계거래에서 이루어진 실제 결과와 이익수준지표
- 보상 조정 여부, 보상조정에 의해 조정된 가격, 보상 조정에 관련한 증빙

- 연례보고서 제출 미 이행시 APA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연례보고서의  
제출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 문서 보관 의무

- 기업은 APA체결과 연례보고에 사용된 모든 문서와 데이터를 APA종결 후  
7년간 보관해야 함
- 또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요청할 시 적정기한 내 제출해야 함
- 문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미제출시 APA 중단 될 수 있음



□ APA Renewal(갱신)과 APA extension process(연장)

- APA extension process(연장)은 APA Renewal(갱신)의 연장과정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용이함
- APA Renewal(갱신)
  - APA Renewal은 기본적으로 기존 체결된 APA와 동일한 절차를 거침
  - IRD는 필요시 APA Renewal(갱신) 종결전까지 필요한 새로운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납세자는 APA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요청자료를 제출해야함
  - APA Renewal(갱신) 신청일 : 유지되고 있는 APA의 종결 6개월 전까지임
- APA extension process(APA 연장)
  - APA 연장기간 : 3~5년간
  - APA extension process은 APA Renewal의 사전 상담단계에서 합의해야 함
  - APA extension process시 IRD는 새로운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요청시 자료를 제출해야하나 조건의 변경(갱신)없이 연장만 하는 경우에는 APA Renewal에서 요구되는 자료보다는 적을 수 있음
  - APA extension process 조건

- 남은 APA 기간까지 APA를 준수할 것
- APA 조항 또는 특수관계거래에 대해 변화가 없을 것
- APA 연장 기간동안 상기 항목이 잘 지켜질 것
- APA 연장 기간동안 기존 APA에 사용된 정상가격 기준이 유지될 것
- 특수관계거래가 기존 APA와 동일한 경우
- 납세자와 다른 구성원들의 기능, 자산, 위험을 변화시키는 요소가 없는 경우
- 기존 APA에 사용된 이전가격결정방법이 가장 적합한 경우
- 중요한 가정이 기존 APA와 일치하는 경우



## □ 세무조사와의 관계

- 납세자는 조사중에도 APA를 신청할 수 있으며, APA신청은 일반적으로 조사의 중지 또는 연기 사유가 되지 않음
- 예외적으로 APA가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하면 조사는 미결인체로 중지 될 수 있음
- 조사 중지가 APA의 진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조사 재개 신청 가능

## □ 이전가격결정방법의 소급적용

- 일방APA는 소급적용 하지 않음
- 국세청은 APA 이전가격결정방법의 소급적용 판단은 케이스에 따라 달라짐
  - 이전가격문제의 소급적용의 위험이 높아질수록 소급적용 가능성이 높아짐



## □ 이전가격 관련 서식(작성 예시)

### ○ 사전상담 안건 예시

#### Model Pre-filing Meeting Agenda

1. The APA process will be discussed in detail so that its purpose will be understood by the enterprise (i.e. the most appropriate transfer pricing methodology will be established to arrive at the arm's length outcome or profits in relation to the covered controlled transactions).
2. The agenda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As a guide, the following details should be of relevance though the list below is not meant to be exhaustive or prescriptive:

#### Nature and scope of the APA process

- (a) confirmation of the non-binding nature of the pre-filing meeting;
- (b) key issues of the APA process:
  - (i) purpose of the APA process;
  - (ii) mutual expectations;
  - (iii) the five stages of the APA process;
  - (iv) exchang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 (c) collateral issues, if any;

#### Specific matters to be agreed

- (a) bilateral or multilateral APA;
- (b) new or renewal APA;
- (c) the term of the APA;

#### The APA process

- (a) characterisation of the controlled transactions in the context of the enterprise's business:
  - (i) an explanation of the enterprise's position in the industry;
  - (ii) an explanation of the business model adopted by the enterprise, including identifiable/foreseeable changes over the APA period and changes to existing arrangement and activities in a restructuring;
  - (iii) an explanation of the ownership structure;
  - (iv) an explanation of the capital structure of the business;
  - (v) a description of the size, nature and value of the controlled transactions; the identity of the other parties; and the nature of the controlled transactions;
  - (vi) a description of the functions undertaken, assets used and risks assumed;
  - (vii) characterisation of the enterprise's operations;
- (b) the most appropriate transfer pricing methodology or methodologies:
  - (i) the proposed methodology(ies);
  - (ii) the proposed profit level indicator;
  - (iii) the comparable data;
- (c) the most appropriate method and the arm's length outcome:
  - (i) the compensating adjustments that should be made to the results;
  - (ii) secondary tests of the reliability of the primary result;
  - (iii) likely outcomes from the methodology;
  - (iv) proposed form and structure of the APA;
  - (v) proposed critical assumptions;
  - (vi) forecast and hindcast of the financials using the method;
  - (vii) rollback of the APA methodology;
  - (viii) any other collateral issues;

- (d) requests of overseas associated enterprises made to the relevant DTA partner(s) for a bilateral/multilateral APA;
  - (e) joint development of the APA case plan;
  - (f) information/documentation requirements;
  - (g) requirement of independent expert advice;
  - (h) suitability of the APA proposal (e.g. cost and practicality of entering into an APA);
  - (i) timeframe for submitting a formal APA application.
3. Where there are intangible and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the following matters need to be considered:
- (a) particular problems encountered when examining comparability because of the specialised nature or uniqueness of the property;
  - (b) the property protected by trademarks, registrations, copyrights or confidentiality agreements or requirements;
  - (c) existence, identification and nature of the property;
  - (d) determination of the rewards for its use;
  - (e) details that must be provided:
    - (i) exact nature of the property;
    - (ii) protection of the property;
    - (iii) documentation of the property;
    - (iv) transfer method or usage and the contractual terms;
    - (v) development of the property;
    - (vi) usage in the business;
    - (vii) value added to the business;
    - (viii) the amount of value added;
  - (f) the reasonableness of the outcome of the controlled transac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each party to the controlled transa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arm's length principle.
4. The enterprise must make a full disclosure of details where the Commissioner is undertaking or has undertaken an audit on how any provisions of the Inland Revenue Ordinance apply to:
- (a) the enterprise or its associated enterprises (including those resident in Hong Kong); or
  - (b) an arrangement similar to the arrangement which is the subject of the APA proposal, during any period for which the proposed APA would apply were the APA to be concluded.



## ○ APA 제안서 예시

**Content of Model APA Proposal**

The content of the APA proposal and the extent of the necessary supporting information/documentation will depend on the facts and circumstances of each case. As a guide, the following details should be of relevance though the list below is not meant to be exhaustive or prescriptive:

- (a) The transactions, products, businesses or arrangements that will be covered by the proposal (including, if applicable, a brief explanation of why not all of the transactions, products, businesses or arrangements of the enterprise involved in the request have been included).
- (b) The enterprises and permanent establishments involved in these transactions or arrangements.
- (c) The other tax jurisdiction or jurisdictions which have been requested to participate.
- (d) Information regarding the world-wide organizational structure, history, financial statement data, products, functions and assets (tangible and intangible) of any associated enterprises involved and the allocation of risks between the associated enterprises.
- (e) A description of the proposed transfer pricing methodology and details of information and analyses supporting that methodology, e.g. identification of comparable prices or margins and expected range of results, etc.
- (f) The assumptions underpinning the proposal and a discussion of the effect of changes in those assumptions or other events, such as unexpected results, which might affect the continuing validity of the proposal.
- (g) The accounting periods or tax years to be covered.
- (h) General description of market conditions (e.g. industry trends and the competitive environment).
- (i) A discussion of any pertinent collateral tax issues raised by the proposed methodology.
- (j) A discussion of, and demonstration of compliance with, any pertinent domestic law, tax treaty provisions and OECD guidelines that relate to the proposal.
- (k) Any other information which may have a bearing on the current or proposed transfer pricing methodology and the underlying data for any party to the request.



○ APA Case Plan 예시



INLAND REVENUE DEPARTMENT

Tax Treaty Section  
36/F Revenue Tower,  
5 Gloucester Road,  
Wan Chai, Hong Kong  
G.P.O. Box 132, Hong Kong

**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  
Model APA Case Plan**

Enterprise Name:	Company HK
File Number:	123456789
Period Subject to APA:	201X - 201X
APA Team:	APA team leader, contact telephone number
Enterprise Contacts:	Company HK contact, contact telephone number
Authorized Representative Contacts:	Firm, contact name, position and telephone number
Type of APA:	Bilateral or Multilateral

Activity	Date
<p><b>Stage 1: Pre-filing</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The enterprise provides the Senior Assessor (APA) with an APA proposal that describes: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the covered controlled transactions, the most appropriate transfer pricing methodology and profit level indicator;</li> <li>(b) the collateral issues, if any and treatment approach for resolution;</li> <li>(c) whether the APA proposal is bilateral or multilateral; and</li> <li>(d) whether the APA proposal is a new APA or a renewal.</li> </ol> </li> <li>2. The enterprise submits a draft APA case plan.</li> <li>3. The Senior Assessor (APA) conducts pre-filing meetings with the enterprise to identify transfer pricing and collateral issues, if any.</li> <li>4. The Commissioner and the enterprise reach agreement on: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the scope of the APA;</li> <li>(b) the resolution of collateral issues, if any;</li> <li>(c) the information/documentation required.</li> </ol> </li> <li>5. The Senior Assessor (APA) advises the enterprise acceptance into the APA process and invites the enterprise to make a formal APA application.</li> <li>6. The APA team and the enterprise develop the APA case plan jointly, including the process for resolution of collateral issues (if any) coordinated with the APA process.</li> </ol>	



Activity	Date
<p><b>Stage 2: Formal application</b></p> <p>7. The enterprise submits the formal APA application.</p> <p>8. The Commissioner notifies the DTA partner(s) of submission of the APA application.</p> <p>9. The enterprise prepares and submits to the APA team information/documentation as agreed at the pre-filing stage.</p> <p>10. The enterprise prepares and provides information/documentation for resolution of collateral issues, if any.</p> <p>11. The Commissioner commences proposed processes for resolution of collateral issues (if any) in parallel with the APA process wherever possible.</p> <p>12. The enterprise ensures its overseas associated enterprise(s)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APA process in the DTA partner(s).</p> <p>13. The Commissioner and the enterprise finalise and execute the APA case plan.</p>	
Activity	Date
<p><b>Stage 3: Analysis and evaluation</b></p> <p>14. The APA team starts to evaluate the APA application and undertake relevant fieldwork.</p> <p>15. The APA team requests further information/documentation if necessa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the APA team sends information/documentation request;</li> <li>(b) the enterprise responds.</li> </ul> <p>16. The enterprise considers independent expert advice if requested by the Commissioner.</p> <p>17. The arm's length consideration is established.</p> <p>18. The APA team clarifies with the enterprise the facts or the interpretation of the outcome.</p> <p>19. The APA team develops a position.</p> <p>20. The APA team coordinates the resolution of collateral issues, if any.</p>	





Activity	Date
<p><b>Stage 4: Negotiation and agreement</b></p> <p>21. The APA team informs the enterprise of the resolution of the collateral issues, if any. The collateral issues usually need to be resolved prior to agreement of the APA terms.</p> <p>22. The APA team develops the draft APA terms including the transfer pricing methodology, critical assumptions and compensating adjustments.</p> <p>23. The APA team makes an endeavour to reach agreement on the APA terms with the enterprise.</p> <p>24. The Commissioner formalises a 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arrangement with the DTA partner(s) in consultation with the enterprise (assuming that agreement is reache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the MAP negotiations;</li> <li>(b) the enterprise accepts MAP arrangement and notifies the Commissioner of its acceptance in writing.</li> </ul>	
<p><b>Activity</b></p>	<p><b>Date</b></p>
<p><b>Stage 5: Drafting, execution and monitoring</b></p> <p>25. For unilateral APAs linked to the bilateral/multilateral APA application (see paragraph 12 of 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 No. 4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The APA team and the enterprise finalise the APA based on the outcomes of the negotiations with the enterprise.</li> <li>(b) The APA team provides the enterprise with written confirmation of the concluded APA.</li> <li>(c) The enterprise signs the final APA and returns it to the Commissioner.</li> </ul> <p>26. For bilateral/multilateral APA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The enterprise accepts the MAP arrangement.</li> <li>(b) The Commissioner enters into a bilateral/multilateral APA with the DTA partner(s).</li> <li>(c) The Commissioner confirms the terms of the bilateral/multilateral APA with the enterprise in a letter or similar document.</li> <li>(d) The enterprise confirms its agreement with the APA in writing to the Commissioner.</li> </ul> <p>27. The enterprise submits the first Annual Compliance Report.</p>	



**Controlled transactions and collateral issues**

<b>Controlled transactions (CT)</b>	<b>Process for resolution</b>
Description of CT	
CT 1:	
CT 2:	
CT 3:	
Add additional rows as required	
<b>Collateral issues (CI)</b>	
Description of CI	
CI 1:	
CI 2:	
CI 3:	
Add additional rows as required	

**Information/documentation requests and responses**

<b>Information/documentation request (IDR)</b>	<b>Date of request</b>	<b>Date of response</b>
Description of IDR and relevance		
IDR 1:		
IDR 2:		
IDR 3:		
Add additional rows as required		



○ 정식 APA 신청서 예시



**INLAND REVENUE DEPARTMENT**

Tax Treaty Section  
36/F Revenue Tower,  
5 Gloucester Road,  
Wan Chai, Hong Kong  
G.P.O. Box 132, Hong Kong

To: Senior Assessor (APA), Tax Treaty Section

**Formal Application for a Bilateral/Multilateral Advance Pricing Arrangemen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8 of 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 No. 48, I hereby formally apply for an 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 between Company HK and below associated enterprises.

**(I) Associated Enterprises**

Name of each associated enterprise:

- (a) Company F1: \_\_\_\_\_ Tax resident<sup>1</sup> of: \_\_\_\_\_
- (b) Company F2: \_\_\_\_\_ Tax resident<sup>1</sup> of: \_\_\_\_\_
- (c) Company F3: \_\_\_\_\_ Tax resident<sup>1</sup> of: \_\_\_\_\_

*(Note<sup>1</sup>: Explain how the claimed tax residence status is determined, and furnish supporting documentary evidence such as tax residence certificates.)*

**(II) Covered Controlled Transactions**

Description of each controlled transaction:

- (a) CT1
- (b) CT2
- (c) CT3

**(III) Authorized Representative**

Firm, contact name, position and telephone number.

**(IV) Agreement, Understanding and Declaration**

I agree that no liability shall rest upon the Government, the Commissioner or any other public officer in respect of the bona fide exercise of any power or performance of any duty under and in accordance with Departmental and Interpretation Practice Notes No. 48.

I understand that my agreement would not affect the right of objection against an assessment or right of appeal to the courts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land Revenue Ordinance.

I agree that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submitted to the Commissioner for the purpose of the APA application may be provided to the competent authority(ies) of the relevant DTA partner(s) for processing the APA.

I declare that I have examined the APA application, including accompanying documents, and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e facts presented in support of the application are true, complete and accurate.

Name of Company HK: \_\_\_\_\_

Signature of Principal Officer: \_\_\_\_\_

Name and Designation of Principal Officer: \_\_\_\_\_

Date: \_\_\_\_\_



○ 상호합의 신청서 예시

To: Senior Assessor (APA), Tax Treaty Section

**Application to Initiate Mutual Agreement Procedure (Bilateral/Multilateral APA)**

I hereby apply to initiate 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to resolve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relevant double taxation agreement regarding the proposed Bilateral/Multilateral APA between Company HK and below associated enterprises. The details and issues are given below.

**(I) Relevant Double Taxation Agreement(s)**

Long title of the double taxation agreement(s).

**(II) Associated Enterprises**

Name of each associated enterprise:

- (a) Company F1: \_\_\_\_\_ Tax resident<sup>1</sup> of: \_\_\_\_\_
- (b) Company F2: \_\_\_\_\_ Tax resident<sup>1</sup> of: \_\_\_\_\_
- (c) Company F3: \_\_\_\_\_ Tax resident<sup>1</sup> of: \_\_\_\_\_

*(Note <sup>1</sup>: Explain how the claimed tax residence status is determined, and furnish supporting documentary evidence such as tax residence certificates.)*

**(III) Covered Controlled Transactions**

Description of each controlled transaction:

- (a) CT1
- (b) CT2
- (c) CT3

**(IV) Summary of issues to negotiate**

Summary of issues that require resolution with the competent authority(ies) of the DTA partner(s).

**(V) Key terms of APA to negotiate**

Attachment showing the key terms of the proposed Bilateral/Multilateral APA for negotiation with the competent authority(ies) of the overseas tax jurisdiction(s).

**(VI) Authorized Representative**

Firm, contact name, position and telephone number.

**(VII) Agreement and Declaration**

I agree that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submitted to the Commissioner for the purpose of the MAP application may be provided to the competent authority(ies) of the relevant DTA partner(s) for processing the APA. I also undertake to send the same documents and information to the competent authority(ies) of the relevant DTA partner(s) according to their requirements.

I declare that I have examined the MAP application, including accompanying documents, and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e facts presented in support of the application are true, complete and accurate.

Name of Company HK: \_\_\_\_\_

Signature of Principal Officer: \_\_\_\_\_

Name and Designation of Principal Officer: \_\_\_\_\_

Date: \_\_\_\_\_



○ APA 이행 합의서 예시

**Model Bilateral/Multilateral APA Implementation Agreement**

**Parties to the Agreement**

1. The parties to this implementation agreement, which is subject to the 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 No. 48 and below terms and conditions, are: the Commissioner of Inland Revenue (the Commissioner) and XXX Ltd. of XXX (Company HK).

**Bilateral/Multilateral APA**

2. The Bilateral/Multilateral APA is: the APA entered into by the Commissioner and the Competent Authority(ies) of XXX (and YYY) on \_\_\_\_\_, the terms of which have been notified to Company HK on \_\_\_\_\_.

**Years/periods covered by the bilateral/multilateral APA**

3. The term of the APA is five years commencing on 1 January 20XX and concluding on 31 December 20XX.

**Covered controlled transactions**

4. Company HK imports, markets and distributes XXXX into the Hong Kong market.
5. Transactions between Company HK and Company F (a company incorporated in XXX and carrying on business in XXX), which are covered by the application of the transfer pricing methodology in paragraphs 6 and 7, are:
  - (a) Purchase of products from Company F;
  - (b) Purchase of parts and accessories from Company F; and
  - (c) Provision of warranty service to end users by Company HK on behalf of Company F.

**Agreed transfer pricing methodology**

6. The consideration given by Company HK for property acquired from Company F is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arm's length principle.
7. The methodology for applying the arm's length principle is the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M). The profit level indicator (PLI) to be used is: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 (EBIT) to Net Sales (referred as the EBIT margin). The methodology shall be applied in the following manner:
  - (a) This methodology shall allow Company HK to achieve an annual return in the range of XX% to YY% in the income years from 201X to 201X.
  - (b) Calculation of the annual return shall be made by reference to the EBIT margin of Company HK, as defined below:
    - (i) EBIT is defined as net profit before interest, dividend income, gains/losses on sale of fixed assets, restructuring expenses, other non-operating items and income tax,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Hong Kong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HKFRS) or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 (ii) Sales shall mean total sales less returns and allowances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HKFRS or IFRS.

#### Procedures for compensating adjustments

8. Company HK will make compensating adjustments at the end of the basis period for each year of assessment to reflect the application of the arm's length principle in the form of an adjustment.

##### Shortfall

- (a) If Company HK's actual EBIT margin is less than XX % (i.e. the lower boundary of the arm's length range described above), there shall be deemed to exist a "shortfall" in the compensation earned by Company HK by an amount equal to the difference between Company HK's actual EBIT margin and XX % in any year of the APA.

##### Excess

- (b) If Company HK's actual EBIT margin is greater than YY % (the upper boundary of the arm's length range described above), there shall be deemed to exist an "excess" in the compensation earned by Company HK by an amount equal to the difference between Company HK's actual EBIT margin and YY % in any year of the APA.

##### Compensating adjustment

- (c) In the event of any shortfall in any one year, the deduction for purchases or services shall be reduced by such an amount as is sufficient to produce an EBIT margin of XX%. Any adjustment will be reflected in Company HK's tax returns. In the event of any excess in any one year, the deduction for purchases or service fees shall be increased by such an amount as is sufficient to produce an EBIT margin of YY%. In this circumstance, an amount equal to the increased deduction made for purchases shall be included in the profit of the associated enterprise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inten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Government of the XXX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XXX.

#### Critical assumptions

9. The ability of the transfer pricing methodology to accurately reflect the arm's length pricing of future transactions is based on the critical assumptions defined in paragraph 10.
10.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matters represent the critical assumptions:
- Company HK's business activities, functions performed, assets employed, risks assumed and financial accounting methods and classifications shall remain materially the same as those described in the APA documentation provided.
  - There will be no changes or factors materially impacting the industry in which Company HK operates.
  - There will be no changes to Company HK's product or customer base that may materially impact on the Hong Kong business.
  - There will be no changes to any governmental regulations, controls or mechanisms that materially impact the Hong Kong business.

### **Breach of critical assumptions**

11. Company HK agrees to notify the Commissioner when it becomes aware that a breach of critical assumptions has taken place. If Company HK becomes aware of such a breach during the year giving rise to the event, then Company HK will advise the Commissioner of the change as soon as possible during that year. If Company HK becomes aware of the change subsequent to the end of the year giving rise to it, then it will advise the Commissioner of the change as soon as possible after it becomes aware of the change.
12. A breach of a critical assumption will result in a review of the terms of the APA and may lead to revocation of the APA such that it was deemed not to have existed, cancellation of the APA such that it will not apply for any period remaining of the term of the APA, revision or suspension of the APA.

### **Annual Compliance Reporting**

13. Company HK shall submit an Annual Compliance Report to the Commissioner, in such form as the Commissioner may prescribe, at the same time when it files the annual tax return.
14. The Annual Compliance Repor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 (a) A copy of the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of Company HK including a detailed profit and loss account and balance sheet for the relevant APA year.
  - (b) Calculations of the assessable profits including full details of all tax reconciliation adjustments for the relevant APA year.
  - (c) Reconciliation of the amount of controlled transactions covered by the APA and the corresponding amounts in the statutory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relevant APA year.
  - (d) Information and computations necessary to ascertain the outcome of the transfer pricing methodology for the covered controlled transactions between Company HK and Company F for the APA year, demonstrating the extent of compliance with the transfer pricing methodologies and 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PA.
  - (e) An analysis of any compensating adjustment required under the APA, and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manner in which the adjustment was effected.
  - (f) A description of any material changes in financial or tax accounting methods or principles employed for the APA year in respect of the covered controlled transactions, which differ from the financial or tax accounting methods employed and reflected in the APA request, and if there were no such material changes in Company HK's opinion, an affirmative statement to that effect.
  - (g) A description of any new controlled transactions of a material amount that are not covered by the existing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PA.
  - (h) A statement as to whether Company HK has operated within the critical assumptions detailed in paragraph 10 of this APA.
  - (i) A statement demonstrating how Company HK is actively targeting the agreed EBIT margin range in the setting of transfer prices.
  - (j)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of associated enterprises to the controlled transactions.
  - (k) A confirmation that the record keeping requirements has been complied with.
  - (l) A confirmation that tax shelters, offshore structures and tax schemes were not established in the ACR period to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covered controlled transactions.
15. The Annual Compliance Report shall be sent to:

Senior Assessor (APA)  
Tax Treaty Section  
Inland Revenue Department  
36/F Revenue Tower  
5 Gloucester Road, Wan Chai, Hong Kong



16. The Commissioner will review the Annual Compliance Report and, if necessary, may request further information that is reasonably needed to clarify the contents of the Report or to verify that Company HK has complied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PA.
17. If Company HK fails to provide the Annual Compliance Report or supply the additional information requested within a reasonable time, the Commissioner may revoke the APA such that it was deemed not to have existed or cancel the APA such that it will not apply for any period remaining of the term of the APA.

**Confidentiality**

18. The Commissioner recognises that the secrecy provisions in the Inland Revenue Ordinance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rticle in the relevant double taxation agreement will apply to safeguard the information obtained for the purpose of the APA process.

**Record retention**

19. Company HK shall keep and retain the records listed out in paragraph 89 of the 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 No. 46 and the records relied upon in concluding the APA. Company HK agrees to retain all supporting data referred to in the annual compliance report for a period of 7 years after the end of the APA period. Company HK shall upon request make the APA records available to the Commissioner within a reasonable time of a written request. If Company HK fails to provide the aforesaid records requested within a reasonable time, the Commissioner may revoke the APA such that it was deemed not to have existed or cancel the APA such that it will not apply for any period remaining of the term of the APA.

**Implementation**

20. Company HK and the Commissioner wish to continue their open relationship and Company HK should approach the Commissioner as soon as possible if any events occur that affect the APA. In the event that difficulties, disputes or differences of opinion occur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APA, the Commissioner and Company HK should endeavour to resolve them promptly.

**Omissions and false or misleading statements**

21. The Commissioner may revoke the APA such that it was deemed not to have existed, cancel the APA such that it will not apply for any period remaining of the term of the APA or revise the APA, where Company HK makes a statement that is false or misleading or deliberately omits from a statement any matter or thing without which the statement is false or misleading in either the APA application or any other submission, report, information, or documentation regarding or supporting the APA application.

Signed by:

Name:  
Senior Assessor (APA)  
For the Commissioner of Inland Revenue  
Date:

Signed by:

Name:  
Designation:  
(must be a Principal Officer)  
For Company HK  
Date:





○ 연례보고서 예시



**INLAND REVENUE DEPARTMENT**

Tax Treaty Section  
36/F Revenue Tower,  
5 Gloucester Road,  
Wan Chai, Hong Kong  
G.P.O. Box 132, Hong Kong

**Advance Pricing Arrangement  
Annual Compliance Report**

**(I) 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 and Annual Compliance Report (ACR) Particulars**

Parties to APA:
APA reference number:
Enterprise submitting ACR:
Year/Period covered by ACR:

**(II) Details of Actual Results (Read the instruction notes before completing this section)**

	Items	CT 1	CT 2	CT 3
1.	Controlled transaction (CT)			
2.	Breach of critical assumptions? (Yes/No)			
3.	Tax jurisdiction involved			
4.	Agreed transfer pricing methodology			
5.	Agreed profit level indicator			
6.	Agreed point or range			
7.	Actual result achieved			
8.	Compensating adjustment (+/-HK\$m)			
9.	Result after compensating adjustment			
10.	Compensating adjustment has been reflected in the tax return? (Yes/No)			
11.	Controlled transaction amount			
12.	Underlying transaction			
13.	Underlying transaction value			

**(III) Documents/information to be included as part of the ACR**

- Attach/Include the following documents/information:
1. All appropriate information and computations that clearly show how the selected transfer pricing methods were applied.
  2.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if not submitted as part of the tax return).
  3.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of associated enterprises to the covered controlled transactions.
  4. Reconciliation statements of all adjustments made between the net profit in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the assessable profits disclosed in the tax return.



5. Any other appropriate document or information necessary to validate the basis of the calculation.
6. Any other documents/information that are required to be included in the ACR as specified in the relevant Bilateral/Multilateral APA Implementation Agreement.

**(IV) Confirmation**

Confirm the following matters:

1. Tax shelters, offshore structures (tax efficient or not) and tax schemes (discussed in paragraphs 73 to 84 of the 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 No. 46) have not been set up to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covered controlled transactions during the ACR period.
2. Records listed in paragraph 89 of the 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 No. 46 and records specified in the APA were kept for the covered controlled transactions during the ACR period.

**(V) Agreement and Declaration**

I agree that this APA ACR may be provided to and reviewed by the Competent Authority(ies) of the relevant DTA partner(s).

I declare that I have examin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PA ACR, including the accompanying documents, and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e facts presented in this report and in the accompanying documents are true, complete and accurate.

Signature of Principal Officer: \_\_\_\_\_

Name and Position of Principal Officer: \_\_\_\_\_

Date: \_\_\_\_\_

\*\*\*\*\*

**Instruction notes for completing Part (II) of the ACR**

- Item 1:** Describe each of the controlled transactions covered by the APA (e.g. cost of goods sold, services, royalty, etc.). Use additional sheets if more than 3 CTs are involved.
- Item 2:** Provide the details of breach in a separate attachment and the proposed course of action if there has been a breach of the critical assumptions.
- Item 3:** State the tax jurisdiction with which the enterprise has dealing for each CT.
- Item 4:** State the agreed transfer pricing methodology for each CT.
- Item 5:** State the agreed Profit Level Indicator (PLI) for each CT.
- Item 6:** State the agreed point or range for each CT.
- Item 7:** State the actual result achieved and the actual PLI achieved for each CT.
- Item 8:** If a compensating adjustment is required, state the amount and indicate whether it is a payment into (+) or a payment out of (-) Hong Kong. Evidence must be provided to show that any compensating adjustments can be tracked on both sides of the CT.
- Item 9:** If a compensating adjustment is necessary, state the result after the adjustment has been made.
- Item 10:** Indicate how the adjustment is reflected in the tax return (e.g. purchases, sales, reconciliation statement, etc.)
- Item 11:** Give the actual value of the CT after compensating adjustments.
- Item 12/13:** Provide details of the underlying transactions and their value. In the case of cost of goods sold, this will be the actual value of the CT shown in Item 11.

## 5 한국 - 홍콩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 □ 배경

- 홍콩은 한국의 주요 해외투자국임에도 홍콩 국내법상 제약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조세정보교환을 할 수 없어 조세조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었음
- 그러나 2010년 1월 홍콩이 조세조약 체결에 장애가 되어온 정보교환 관련 국내법을 개정함에 따라 2010년 11월부터 협상을 개시함

### □ 홍콩 조세조약 일반현황

- 홍콩은 2010년 이전까지 5개 국가와 조세조약을 하였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가 상당히 증가하여 홍콩내 국제조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2010년 이후 부르나이의 조세조약 체결을 시작으로 2017년 10월 31일 기준 38개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였으며 34개 조세조약이 발효 중임

### □ 한국-홍콩 조세조약 상황

- 2010년 11월, 한국과 홍콩정부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하여 협상을 개시
- 2013년 9월 13일, 기획재정부는 홍콩에서 한국-홍콩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제3차 교섭회담을 개최하여,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함
- 홍콩은 2014년 7월 8일 제정 서명하였고 2014년 12월 국회 비준하였으며, 2016년 9월 27일 기준으로 조세조약이 발효되었습니다.



## □ 주요 합의내용 요약

### ○ 정보교환

- 국제기준에 따라 홍콩 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됨
- 특히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교환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탈세혐의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홍콩측이 보유한 과거 조세정보 요청도 가능하도록 합의함
- 금융기관 보유정보 뿐만 아니라 조세조약 체결이전 시점의 조세정보 및 조세조약에 규정하지 않은 조세정보에 대해서도 폭넓게 정보 공유를 허용

### ○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 주요 투자소득인 배당금, 이자수익,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을 규정
- 제한 세율
  - 배당금 10%(25% 미만 지분 보유시 15%)
  - 이자수익 10%
  - 사용료 10%
- 주요 투자소득인 배당과 이자에 대해 조세조약이 기체결된 싱가포르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 과세권을 최대한 확보함

## □ 한국 - 홍콩 조세조약 발효에 따른 영향

- 이론상으로는 조세조약이 발효되면 홍콩에 투자하는 국내 납세자의 홍콩에서의 이중과세 해소에 따라 세부담이 감소하여 홍콩 투자 수익에 대하여 투자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로는 홍콩은 자국세법에 따라 홍콩의 투자소득에 대해 대부분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므로 홍콩에 투자한 국내납세자들의 對홍콩 투자 수익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홍콩의 지점 또는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현재 국내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의 발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조세조약 발효시 한국과 홍콩 두 국가에 대하여 동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 판정을 받을 수 있어 이중거주자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큼
- 정보교환 규정에 따라 홍콩소재 금융기관에 해외계좌를 두고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발효되면 금융계좌의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또한 홍콩을 투자 거점으로 삼아 중국에 투자하는 국내투자자들의 경우 홍콩의 금융계좌에 고액의 금액을 예치시키고 있는 납세자 또한 금융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홍콩에서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외환거래신고를 적정히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간 정보교환에 따라 양국간 자료 공유

## □ 기대효과

- 정보교환을 통한 홍콩을 우회한 조세회피를 방지함
- 향후 한국내 홍콩측 투자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홍콩으로부터 Inbound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 □ 주의점 및 사전대응책

- 한국 - 홍콩 조세조약이 발효될 시 정보교환을 통해 외환거래신고 및 해외금융계좌 등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외환거래신고 및 해외금융계좌 등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조세조약 발효 전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같은 제도들을 활용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함

## □ 한국 - 홍콩 조세조약 주요 조문 해설

### ○ 제2조 대상 조세

1. 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계약당사자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 본 항은 국세 및 지방세 중 소득에 대한 조세가 적용 대상이 됨을 의미하므로 제한세율 적용 시 지방세를 고려하여야 함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한 임금 또는 급여 총액에 대한 조세 및 자본의 평가에 따른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항목에 대하여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 모든 조세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자본세가 없어 이중과세 가능성이 없으므로 자본세는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포함되지 않음

3.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 1) 이윤세
- 2) 급여세, 그리고
- 3) 재산세

개인 과세에 따라 부과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나. 한국의 경우

- 1) 소득세
- 2) 법인세
- 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 4) 지방소득세

4. 이 협정은 협정의 서명일 후 제3항에 언급된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조세, 그리고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며 한쪽 계약당사자가 앞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당사자의 세법에 이루어진 모든 중요한 변경을 상호 통보한다.

5. 제3항에 언급된 현행 조세는 이 협정의 서명 후 부과된 조세와 함께 문맥이 요구하는 대로 이하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 또는 “한국의 조세”라 한다.

○ 제10조 배당

1. 한쪽 계약당사자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해서는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계약당사자에서도 그 당사자의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회사(파트너십은 제외한다)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의 최소 25퍼센트를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나.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회사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원천지국의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자가 타방계약국의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혜택을 받는 것은 조세조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조세조약상 혜택을 수익적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음



- 수익적 소유자란 주식 등 이익참여에 대한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동 소득을 타인에게 재지급해야 하는 의무 등의 제한 없이 사용과 향유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함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란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당사자의 법에 따라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밖의 법인에 대한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물론, 주식 또는 그 밖의 채권이 아닌 이윤 참여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계약당사자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다른 쪽 계약당사자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계약당사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의 보유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한쪽 계약당사자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계약당사자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그 회사가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그 배당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이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의 보유가 그 다른 쪽 당사자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쪽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조세도 부과할 수 없으며, 그 회사의 유보이윤을 회사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도 없다.

#### ○ 제11조 이자

1. 한쪽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해서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계약당사자에서도 그 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가 다음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당사자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 1)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 2) 홍콩금융관리국
- 3)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수시로 합의되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소유한 모든 기관

나. 한국의 경우

- 1) 대한민국 정부
- 2) 한국은행
- 3) 한국수출입은행
- 4)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수시로 합의되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소유한 모든 기관

- 양국의 정부와 정부가 주로 소유한 기관 및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지국에서 과세를 면제함

4.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란 저당에 의한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 참여 권리가 수반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이들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말한다. 지급 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 연체로 인한 위약금 성격의 연체료는 이자로 보지 않음

5.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한쪽 계약당사자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의 발생지국인 다른 쪽 계약당사자에서 그 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이자는 그 지급인이 한쪽 계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 당사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한쪽 계약당사자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계약당사자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당사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일반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거주지국을 원천지국으로 보나 예외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금 등의 채무가 이자지급인이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명백한 경제를 관계를 가지며 이자를 해당 고정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지국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임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이자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계약 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 할 수 있다.

- 이자를 지급하는 자와 수익적 소유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 지급액이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계약국의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하도록 함

#### ○ 제12조 사용료

1. 한쪽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계약당사자에서도 그 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 모든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장비 사용료는 조세조약상 사용료 범위에서 제외함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계약당사자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의 발생지국인 다른 쪽 계약당사자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한쪽 계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 당사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한쪽 계약당사자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계약당사자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당사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사용료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계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 국내세법상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은 내국법인의 과세소득으로 익금산입되며 배당 또는 출자의 증가로 처분함



## ○ 제21조 이중과세의 제거 방법

1. 홍콩특별행정구 이외의 관할권에서 납부한 조세에 대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홍콩특별행정구법의 규정(이 조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홍콩특별행정구의 거주자인 인에 의하여 한국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한국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한 한국의 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그렇게 허용된 공제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세법에 따라 산출된 홍콩특별행정구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한국을 제외한 어떠한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그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 가. 한국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법상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홍콩특별행정구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 홍콩특별행정구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그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여야 하는 한국의 조세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그 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발생한 소득이 홍콩특별행정구의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한 배당으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그 회사의 자본증권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 지급한 경우, 공제를 할 때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를 고려한다.

- 양국이 채택하고 있는 이중과세방지법을 각각 규정함에 따라 각국의 세법에 의해 홍콩의 경우 소득면제, 한국의 경우 세액공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홍콩자회사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한국법인이 홍콩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 자회사가 홍콩에서 부담한 법인세액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한국 - 홍콩 조세조약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규정하지 않음

○ 제23조 상호 합의 절차

1. 어느 인이 한쪽 또는 양 계약당사자 모두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는 그러한 당사자들의 국내·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또는 그 사안이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거소의 권한을 보유하거나 설립 또는 달리 구성된 계약 당사자(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가 국민(한국의 경우)인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보이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 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모든 합의사항은 계약당사자의 국내·역내법상 기한에 관계없이 이행된다.
3.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의문에 대해서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또한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전항들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통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직접 서로 연락할 수 있다.

- 한국 - 홍콩 조세조약에서의 상호합의절차에는 중재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양국간 과세문제는 양국 과세당국이 해결하도록 함
-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을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은 상호합의절차개시 신청서, 관련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국외 특수관계인의 불복쟁송 청구서 등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



## ○ 제24조 정보 교환

1.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 규정의 이행, 또는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국내·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한다.

- 과세행위가 조세조약에 반하지 않아야 함
- 정보교환시 비거주자에 관한 행정작용이나 집행작용에 필요한 정보도 정보교환의 대상에 포함됨

2. 제1항에 따라 한쪽 계약당사자가 제공받는 모든 정보는 그 당사자의 국내·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와 관련된 집행이나 소추, 또는 그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에 관련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 정보는 제3의 관할권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계약당사자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 나. 한쪽 또는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 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거래 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 사업비밀의 보호, 대리인 등의 비밀 보호, 국가적 기밀의 보호 등의 이유로 정보제공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조세조약의 위반이 아님

4. 한쪽 계약당사자가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비록 다른 쪽 계약당사자는 그의 조세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그의 국내·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계약당사자가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계약당사자가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정보수집수단’은 요청받은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사법적 절차를 의미함
- 정보요청이 제3항의 정보제공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제공의 의무는 없기 때문에 제4항 및 제5항은 제3항을 위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음
- 제5항은 제3항의 정보제공 거부요건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제3항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영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에 관한 정보교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 배경

- 한-홍콩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이 요청할 경우 과세정보 등을 교환할 수 있으나, 역외탈세 등의 방지를 위하여 금융정보 교환채널을 확보할 필요성 있으며,
  - 홍콩은 ‘15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 2위, 금액 기준 3위, 법인의 경우 인원수 및 금액 기준 1위인 지역임



## □ 일반현황

- 우리나라와 홍콩은 2017.1.23일(월) 홍콩 국세청에서 「한-홍콩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서명\*

\* 우리나라 :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홍콩 : 왕 쿤 파이(Wong, Kuen Fai) 국세청장

\*\* 홍콩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CRS)이 아닌 양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체결을 통해 금융정보자동교환 추진중

## □ 협정 내용

- 동 협정에 따라 양국의 과세당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등과 관련된 주요 금융정보를 '19년부터 매년 교환
- 교환대상 정보
  - 식별정보(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등)
  - 계좌정보(계좌번호, 금융기관명 등)
  - 금융정보(계좌잔액, 이자·배당 소득유형 등) 등

## □ 한국 - 홍콩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른 기대효과

- 양국은 '16년 발효한 한-홍콩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이 요청할 경우 과세 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으나,
- 금번 협정 체결을 통해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채널이 확보됨으로써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 간 정보 교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





# 홍콩 개황

# V

1. 홍콩 개황 / 176
2. 중국과 홍콩, 한국과의 관계 / 191
3. 홍콩의 정치 현황 / 194





# 1 홍콩 개황

## □ 일반 개황

국명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 ○ 영문명 :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중문명 : 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政府
수도	홍콩은 도시국가로 특정 수도가 없음
위치	중국, 광둥성 동남해안, 주강 입구 동쪽
면적	1,104km <sup>2</sup> (서울1.8배) 홍콩섬, 구룡반도, 란타우섬으로 구분
기후	아열대성 몬순 기후
인구	723만 명 (2013년 잠정)
민족	한족(95% 이상)
언어	광둥어(공용어, 90%), 영어(공용어 3.5%)
종교	불교(35.5%), 기독교(6.8%), 천주교(5%), 이슬람교(3.1%), 무교(48%)

## □ 정치

정부형태	행정수반 책임제(중국과는 1국 2체제의 자치정부)
국가원수	행정장관 : 캐리 램 청 옛고르(Carrie Lam Cheng Yuet-ngor), 2017년 7월 1일~2022년 6월 30일
독립일	1997년 7월 1일(홍콩특별행정구 성립일)
의회	입법의회(LEGCO, 70석)

## □ 경제

GDP(1인당)	3,194억 달러(43,500달러)
수출/수입	4,600억 달러/5,138억 달러
경제성장률	2.0%
화폐단위	Hong Kong Dollar(HK\$)
산업구조	서비스업(93%), 제조업(7%)



□ 역사

1839년~	1840~1842년 중국과 영국 제1차 아편전쟁 홍콩섬은 1841년 영국군에 의해 점령 난징조약(1842년)→ 청나라로부터 홍콩섬이 정식 양도
1860년~	1860년 중국의 제2차 아편전쟁 패배 - 구룡반도가 베이징 조약하 영속적으로 영국에 귀속 1898년 영국은 홍콩과 인접한 북부섬과 신계를 99년간 조차받음
19세기~	홍콩은 영국의 주요 무역항 - 영국의 물산 집산지로서 활용되는 자유무역항 구룡반도-광둥간 철도 개통 영국식 교육 시스템 도입
1941~	1941.12월 일본이 홍콩을 침략 1945.8월 영국이 식민지 지배권 회복 1946년 홍콩 총독부 수립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건립 1978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경제개혁안 시작 - 홍콩은 중국본토에 투자되는 외국자금의 주요 공급원이 됨 - 재정과 금융분야에서 영향력이 커지면서 제조업과 섬유에서 서비스업종으로 대체
1984년~	1984년 중화인민공화국과 영국은 1997년에 홍콩의 주권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는 조약에 서명 - 1997년 7월 홍콩 주권 양도 - 홍콩의 첫 번째 행정장관으로 둥젠화 취임 - 2007년 7월 도널드 창이 행정장관 취임 - 2012년 7월 령춘잉 행정장관 취임 - 2017년 7월 캐리 램 청 옛고르 행정장관 취임

□ 문화

○ 음식문화

- 홍콩 요리는 자극적이지 않고 조미료는 넣지 않아 감칠맛이 예술
- 홍콩은 높은 맛별이 비율로 외식이 일반화



- 미식천국인 홍콩에서는 세계 여러나라의 음식을 쉽게 경험할 수 있음
- 야차문화 : 간단히 식사(딤섬)하면서 차를 마시는 문화
- 침잔문화 : 홍콩에서 차가 나올때는 두개의 주전자가 나온 하나는 차가 들었고, 나머지 하나는 뜨거운 물이 담김. 찻물이 떨어졌을 때 주전자 뚜껑을 반쯤 걸쳐놓으면 물을 부어줌 중국인들에게 물은 곧 돈임. 그래서 잔이 어느 정도 비면 종업원이 차를 따라주는데 이를 침잔이라 함.
- 애프터눈티 : 트레이나 뷔페식으로 제공되는 디저트가 홍차와 함께 서빙
- 완탕면 : 우리나라의 만둣국과 흡사(싱겁거나 멍멍함)
- 콘지(죽) : 소고기, 생선, 새우 등 다양한 재료와 종류의 콘지가 있음
- 딤섬 : 만두의 일종으로 각양각색의 다양한 재료의 딤섬이 있음
- 에그타르트 : 겉은 바삭하고 안은 계란으로 부드러운 빵
- 길거리 음식 꼬치 : 문어, 게살, 어묵, 곱창 등 다양, 주로 어묵, 면, 닭고기(다리, 날개, 내장 꼬치), 육류내장(순대), 해산물 등이 주를 이룸

○ 기타

- 담배 : 홍콩 입국시 담배 면세 범위는 19개피
- 차 : 커피보다는 차문화에 익숙함. 식사를 할 때나 딤섬을 먹을 때 우려낸 차를 마시는 것이 보편적
- 홍콩은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벌금(HK\$1,500정도 ~ HK\$5,000)을 부과
- 지하철에서 취식하면 경찰에 신고를 당하거나 벌금
- 서비스를 받으면 감사의 표시로 약간의 팁을 주는 것이 일반적
- 차량이 좌측 통행을 하므로 보행 시 주의
- 영국식 문화로 한국의 2층은 홍콩에서는 1층임을 유의(한국의 1층은 홍콩에서 G/F임)



## □ 홍콩의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 명함과 상품 카달로그는 물론이고 중요 상담자료는 반드시 영문 또는 중문으로 제작
- 홍콩시장은 가격경쟁이 치열한 시장이어서 가격 인하요구가 높음
  - ☞ 바이어들이 상담과정에서 한국기업 정보를 일부 노출시키면서 한국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으니 무리한 요구조건에 대해 성급히 승낙 또는 동의하지 않도록 유의
- 홍콩 바이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언어소통문제, 회신지연, 샘플과 선적물의 상이, 선적기간 지연, 사후 처리 미흡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 상담
- 비즈니스맨들과의 미팅시 반중정서에 주의하여 중국과 관련한 민감한 언급은 피하는 것이 좋음
- 최대명절은 설날로 이때는 장기휴무를 하는 기업들이 많으며, 설날을 포함하여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연휴, 여름 휴가철은 출장 상담에 부적절한 시기임

## □ 비즈니스 에티켓

- 오랜 인연을 중시하므로 시간을 두고 쌓은 친분과 신용은 매우 중요
  - ☞ 사적으로 초대받은 자리는 되도록 가는 것이 친분유지에 좋음
- 저녁식사는 부담을 느끼는 홍콩인이 많으므로 되도록 점심식사를 제안
- 음력설과 결혼 등 행사시 복돈(라이씨)을 붉은봉투(홍빠오)에 넣어서 주는 것이 예의
- 빨간색은 복을 가져다주는 색으로 미팅시 빨간색의 넥타이로 포인트를 주면 좋은 인상을 남김
  - ☞ 하얀색은 죽음을 의미하므로 피함



- 작은 기념품 등 선물은 감사의 표시 등으로 일반화 됨
- 문을 바라보며 회의 테이블의 끝에 앉는 자리가 상석이며 그 옆으로 직위 순서대로 착석함
- 비즈니스를 할 경우 선불리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
- 공공장소나 식탁 위에서 코를 풀어서 안 됨
- 홍콩에선 건배하는 모습을 흔히 찾아볼 수 있음
  - ▣ 술을 건넸을 때 거절하는 것을 삼가
- 독주를 피하고 맥주나 와인 등 알콜이 낮은 술을 선호, 최근에는 한국의 막걸리가 인기를 끌고 있음
- 음식에 차를 함께 하기 때문에 차가 먼저 나오고 기타 음식이 나옴. 자주 차를 따라 주는 것이 예의이며, 특히 가까이 앉은 사람의 차가 반 이하로 줄거나 잔이 비어 있을 때는 차를 따라 주어 식지 않게 하는 것이 예의임. 상대방이 차를 따라 줄 때는 잔을 잡지 않고 식탁에 그대로 두며 감사의 표시로 검지와 중지를 구부린 뒤 가볍게 찻잔 앞 테이블을 2번 정도 두드려 줌

## □ 대화예절

- 체면을 중시하여 기분이 상해도 이를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고 침착을 유지하며 공공장소에서 큰소리를 내거나 하지 않음. 따라서 미팅시 단점을 지적하는 것은 금물
- 사람을 소개할 때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고 손을 펴서 가리킬 것



## □ 금기사항

- 숫자 4(죽을 死)에 대한 금기, 숫자 9(괴롭다는 와 발음이 같음)를 피함.  
짝수를 선호하고 길한 숫자는 6, 8임
- 두 가지 선물을 하는 것이 한 가지 선물하는 것보다 좋음. 두 가지는 행운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시계는 죽음을 상징하므로 시계선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손님이 남의 집에서 신발을 벗을 때에 굽이 문을 향하게 해야 함

## □ 홍콩 경제동향 및 전망

-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위	2016	2015	2014	2013
실질GDP증가율	%	2.05	2.39	2.76	3.10
명목GDP(달러)	백만달러	320,912	309,404	291,459	275,697
명목GDP(현지통화)	백만달러	2,491,001	2,398,437	2,260,005	2,138,305
실질GDP(달러)	백만달러	269,812	264,404	258,221	251,280
1인당 GDP	달러(USD)	43,681.14	42,351.02	40,247.37	38,357.83
소비자물가상승률	%	2.59	3.04	4.42	4.33
실업률	%	3.38	3.28	3.23	3.40
환율	-	7.76	7.75	7.75	7.76
수출실적	백만달러	-	606,084	621,081	610,981
수입실적	백만달러	-	598,691	620,483	609,322
무역수지	백만달러	-	7,393.30	598.62	1,658.73
대외부채	백만달러	46,568.00	25,024.00	30,250.00	97,804.00
외환보유고	백만달러	386,240	358,773	328,517	311,210



○ 경제 동향

- 2017년 1분기 홍콩 경제 성장은 4.3%로, 이는 저성장을 기록했던 2016년 성장률인 2%와 비교했을 때 매우 급격한 성장을 보임 2017년 1분기 활기를 띠는 홍콩경제를 바탕으로 홍콩 정부는 2017년 경제성장률을 2016년의 1.5%보다 높은 2~3%로 예상
- 실업률은 2011년 이후 3%대 유지, 2016년 실업률은 전년대비 0.1% 상승한 3.4%를 보였지만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실업률은 0.2% 낮아진 3.2%
- 홍콩 경기의 회복과 함께 물가는 매년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2014년, 2015년, 2016년 각각 4.4%, 3.0%, 2.4%를 기록하며 상승폭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홍콩 무역발전국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물가 상승률은 1.1%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
- 환율
  - 1983년10월부터 자유변동환율제에서 미국 달러와 일정선에서 교환율을 링크하는 Peg System 도입
  - 홍콩달러는 미화 1달러 대비 7.75 ~ 7.85홍콩달러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2017년 6월 미화 1달러 대비 홍콩달러 환율 7.799
- 홍콩방문객과 홍콩 관광수입은 2000년 이후 큰 폭의 증가세
  - 홍콩 정부는 주요 산업 4대 축인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016년 홍콩 방문객 수는 전년대비 4.5 % 감소한 5,66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2016년 홍콩 방문 관광객 수는 중국, 대만에 이어 한국이 3번째

○ 주요 경제정책

- 홍콩 정부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조건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홍콩 정부의 노력으로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하는 세계 각국의 경제자유도 평가에서 2016년까지 22년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



- 또한 홍콩은 세계 1위의 자유 경제권(미국 CATO연구소),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World Economic Forum, International Institute of Management Development, EIU)으로도 선정됐으며,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6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6)'에서 3위를 차지
- 홍콩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무차별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별한 조세 및 부지 제공 인센티브가 없는 대신 모든 제도를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노력 중
  -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 2월 법인세를 17.5%에서 16.5%로 인했으며, 개인 소득세도 1% 인하해 15%로 책정했음. 이어 와인세를 철폐하고 30도 이하의 알코올 관세율을 0%로 관련 법규를 개정
  - 홍콩 정부의 제도 개선을 통한 투자 환경 업그레이드로 전 세계 기업들에게 홍콩은 필수 투자 진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음
- 아울러 홍콩-중국 간 경제협력협약(CEPA :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과 중국 남부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묶는 단일 경제권을 이용해 중국에 진출하려는 해외 다국적 기업, 혹은 해외로 나가려는 중국 기업을 지원하는 교두보 역할도 견지해 나갈 것임
  - 2008년 1월 중국-홍콩 간 이중과세 방지협정(DTA) 2차 수정안에 합의했으며, 2013년 8월에는 CEPA 10차 보충협약안을 체결해 양국 간 서비스업 교류 활성화를 더욱 촉진함
- 지난 2014년 11월 27일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와 중국 상무부(the Ministry of Commerce)는 중국-홍콩 간 서비스 무역 장벽을 더욱 낮추기 위해 서비스 무역 협의(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를 체결
  - 이번 협의는 광둥성의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에 대한 중요한 단계이며, 이는 홍콩 기업의 대중국 접근성을 높이고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두 지역의 경제협력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이러한 움직임은 홍콩과 광둥성의 경제통합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전망됨

- 홍콩 - 마카오 - 광둥성을 특별협력구로 연결한 초대형 통합경제구역의 조성 계획은 구체화되고 있으며, 2008년 7월 홍콩-마카오-주하이 대교 건설의 분담금과 예산을 확정하고, 2017년 완공을 목표로 2010년 착공
- 광둥성의 ‘하드웨어(값싼 노동력과 제조업, 풍부한 개발지)’와 홍콩의 ‘소프트웨어(선진 노하우, 풍부한 자금, 고급 전문인력)’가 조화를 이루어 세계 최대의 메갈로폴리스로 거듭날 날도 멀지 않아 보임
- 한국 기업들에는 홍콩-광둥성 비즈니스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홍콩을 통한 중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경제정책

- 1950년대 중개무역항으로 번성했던 홍콩은 60~70년대를 거치면서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을 추진(섬유산업과 플라스틱, 전자산업을 중점 육성, 제조업 기반 마련)
- 1970년대 국제시장 변화와 보호주의 무역 확산으로 침체기 맞이
-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맞물리면서 홍콩의 제조업은 배후 지역인 심천 특구로 이전, 금융·유통·관광·부동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 적극 육성
- 1997년 3월 홍콩 서비스산업 진작을 위한 8개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 발표(서비스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 ① 서비스 수출 진흥
  - ② 서비스 부문 투자유치 강화
  - ③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 위상제고
  - ④ 서비스 효율성 제고
  - ⑤ 지원 인프라 제공
  - ⑥ 교육 및 훈련에의 투자
  - ⑦ 세계적·지역적 서비스 센터로서의 홍콩의 강점 신장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 추진
  - ⑧ 정부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다원적 지원을 조정·감독할 전담기구 설치



- 80~90년대 중국의 개방정책과 경제개혁이라는 대외적 여건 변화를 선도적으로 수용하여 위기를 기회로 반전
  - ☞ 세계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중국과 중국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외국자본을 연결하는데 홍콩이 중요한 역할 담당
- 2001년 등젠화 행정장관 중국본토와 홍콩 간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제안
  - 2003.6.29. 경제긴밀화 협정(CEPA) 체결
  - ☞ 상품 및 서비스 교역 증대와 투자 촉진을 골자로 주요 품목의 수입관세 면제와 서비스 교육 자유화, 교역과 투자촉진을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미래전략 홍콩 2030(Planning Vision and Strategy)추진
  - 시기별 단기(2000~2010), 중기(2011~2020), 장기(2021~2030) 전략을 수립
  - 전략과제

- ①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고수
- ② 홍콩의 허브 기능 강화와 국토 보존
- ③ 우수한 생활환경 제공
- ④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세계적 생활수준을 갖춘 도시로 육성
- ⑤ 관광업 촉진으로 홍콩을 아태지역 주요 관광지로 발전
- ⑥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 ⑦ 중국과의 연계강화로 끊임 없이 변화하는 세계추세에 적응

## ○ 시장특성

- 자유로운 무역 절차
  - 홍콩의 무관세정책에 따라 가격 상승 부담 낮음
    - ☞ 담배, 술(알코올30도 이상), 메틸알코올, 탄화수소 등 4개 품목에는 관세 적용
  - 수출입 규제가 없고 조제 제도 매우 단순
    - ☞ 낮은 세금 및 유연한 법인설립 구조
- 아시아 중계무역/물류허브
  - 최근 eBay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계무역 증가추세로 홍콩 중개 무역상들의 활약 두드러짐



-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 마켓

- 트렌드의 잦은 변화, 까다롭고 수준높은 소비자의 신속한 반응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들은 신제품을 출시할 때 홍콩을 테스트 마켓으로 활용
- 연 4천만명 규모의 홍콩방문 중국인 대상 브랜드 인지도 제고 가능
- 연간 500여건 행사, 150여건 전시회 개최, MICE 방문객 총 180만명 추정

- 글로벌 바이오피스(GBO, Global Buying Office) 중심

- 홍콩은 외국기업 7,449개사가 진출
- 패션, 도소매, 일부 제조업 등 관련 아시아/중국 지역으로부터 소싱 업무를 담당하는 바이오피스 존재

섬유/패션 : 코치, 버버리, 랄프로렌, JC페니 등 약 30개사  
도소매 : 월마트, 파크앤 샵 등 각종 도소매 체인  
기타 제조업 등 : 리엔펑 등 SCM(Supply Chain Management)형 제조업 관련 소싱업체

- 세계 최고의 자유 경제도

- 14년간 세계경제자유도 1위로 대변되는 세계에서 가장 무역하기 편한 도시
- 무역과 투자, 금융 자유, 부동산 권리면에서 효율성과 자율성이 뛰어나고 자유로운 자금유통(통화교환, 해외 송금 및 입금, 외화예금 등)은 해외기업에 편리를 제공
- 자금 대출, 채권발행, 투자자 물색 등이 용이하고 환율 리스크가 낮음
- 세계 금융 허브로서 대금결제 편리함. (신속, 비밀유지)
- 40여 개 신문과 700여 개의 간행물 발행으로 자유로운 정보 공유

○ 세금정책의 상당한 변화 예상

- 캐리 램 행정장관은 정책 공약에서 당선 직후 과세 정책의 새로운 변화는 차기 정부 경제 계획의 주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재 강조함



- 캐리 램은 중소 창업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금 인하 공약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초 2백만HKD(한화 약 3억원)의 이윤에 대한 세율을 현재 16.5%에서 8.25%로 낮추는 방안을 곧 시행할 예정(그 이상의 이익은 기존 세율 그대로 적용)

\* 동 제도에 대한 대기업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집단 내 한 개의 기업에게만 법인 세율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제도적으로 제한할 예정

- 또한 이중 과세 협정을 싱가포르 수준(약 90개국)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주요 경제 정책

##### - 국제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정책

- 외국인 투자에 대해 무차별 정책 전개
- 특별한 조세 및 부지 제공 인센티브가 없는 대신 모든 제도를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세율 인하 정책 등)
- 홍콩 - 중국간 경제협력 협약(CEPA)과 중국 남부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묶는 단일 경제권을 이용하여 중국에 진출하려는 해외 다국적기업, 해외로 나가려는 중국기업을 지원
- 2008.1월 중국-홍콩간 이중과세 방지협정(DTA) 2차 수정안 합의하였으며 매년 CEPA 보충협약안 체결하여 양국 간 서비스업 교류 활성화 촉진
- 홍콩 - 마카오 - 광둥성을 특별협력구로 연결한 초대형 통합경제구역의 조성계획 구체화되고 있음. 한국기업에게는 홍콩 - 광둥성 비즈니스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홍콩을 통한 중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

#### ○ 생활수준

- 홍콩은 아시아에서 가장 생활 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나 생활비는 매우 높은편임. 특히 주택임차료와 교육비, 기름값, 외식비 등은 세계 최고 수준임



- 5년 연속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임대료가 높음(1위 싱가포르)
- 생활비와 임대료를 합한 지수는 세계 4위(스위스, 싱가포르, 노르웨이, 홍콩 순)

## □ 최근 이슈

### ○ 중국, 홍콩 경제협력 강화

- 중국은 경제 국제화를 위해 대내외 개방 촉진, 외국인 투자(brining in) 및 해외 투자(going-out)의 적절한 조합을 위해 특히 홍콩, 마카오, 대만과 협력해 시장을 더욱 개방할 것임을 밝힘
- 캐리 램 홍콩 행정장관은 2017년 말까지 중앙 당국과 홍콩의 일대일로 정책 참여 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며 이로부터 오는 금융, 인프라 및 무역 영역 등의 경제적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광둥 - 홍콩 - 마카오 베이 지역 개발 추진을 통해 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세계 정상급 도시 클러스터를 건설할 예정
  - 양방향 상호 액세스 메커니즘에 더 광범위한 투자를 다루는 상품을 추가할 것이며, 선전 - 홍콩 간 교차거래 지원을 위해 중국 본토 - 홍콩 교차매매 확장을 고려할 것임

### ○ 중소기업 지원

- 과세표준 200만 홍콩 달러 이하에 대해 기존 법인세율인 16.5%의 절반인 8.25%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익에는 기존 법인세율이 적용될 것임.
-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장려를 위해 200만 홍콩 달러 이하의 연구 개발비와 초과 비용에 각각 300%와 200%의 세금 공제 혜택을 추진할 계획임



○ 타국가와의 협력 강화

- 2017년 11월까지 ASEAN 국가들과 FTA 및 IPPA를 체결할 예정이며, 2017년 안에 홍콩-마카오 CEPA 협상을 타결할 계획임
- 캐리 램 홍콩 행정장관은 이후에도 조지아, 호주, 몰디브 등의 국가와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 밝혀 긴밀한 경제 관계를 구축하고 투자 및 사업 기회를 극대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내었음

○ 중국 해외 투자 및 경제협력 추이

- 2012년 중국의 해외투자 총액의 58.4%가 홍콩을 통하여 유입됐으며, 규모는 512억 달러에 이룸. 그 중에서 광둥성에 위치한 기업 및 투자자의 해외 무역 및 대외경제협력이 가장 두드러짐
- 다수의 광둥성 소재 기업은 홍콩에서 브랜드 디자인, 제품개발, 마케팅,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회계, 은행 등 전문 서비스의 지원을 받고 싶어하며 해외 파트너를 찾을 때도 홍콩이 적합하다고 생각함. 실제 홍콩은 자유로운 통화 유통,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리소스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임

○ 홍콩-중국 간 병행수입 성행

- 홍콩에서 싼 가격에 각종 상품을 사재기 해 중국에서 마진을 붙여 되파는 병행수입이 성행하고 있음
- 병행수입은 주로 복수비자로 홍콩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선전 주민이 홍콩에서 물건을 산 후 홍콩-선전 경계까지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
- 병행수입업자들의 인기 구매품목은 분유·기저귀 등 유아용품과 치약·비누·샴푸 등 생활용품, 의약품·보조제 등 건강식품이며, 휴대폰, 와인 등 고가품도 인기가 많음
- 병행수입 규모가 폭증함에 따라 홍콩 시민의 불편을 넘어 반대 시위, 몸싸움 등 반중 감정의 표출로 이어짐





- 2014년 홍콩을 방문한 관광객 6,084만명 중 선전을 통한 복수비자 입경자수는 1,490만명에 달함에 따라 선전시 당국은 선전 주민의 홍콩 방문 복수 비자를 중단하고 주 1회 방문 비자로 변경함(이미 발급된 복수 비자는 유지)
  - 홍콩과 선전시 당국은 향후 수입업자 처벌, 불법창고 단속 등 병행수입 규제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한국 제품은 병행수입 타깃 품목이 아니므로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은 적을 것임
- 상하이 - 홍콩 증시 상호투자 허용
- 중국정부가 자본시장 확대 일환으로 상하이와 홍콩 증시를 연동시키는 ‘후강통’을 2014.10월 시범 실시
  - ‘후강통’은 상하이 거래소와 홍콩 거래소 간 교차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투자자가 자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처럼 해외 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시스템임
  - 후강통이 개설되면 홍콩 증권사를 통해 위안화와 홍콩 달러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음
- 베이징 ~ 홍콩 고속철 연결 → 중국 경제통합 가속화
- 중국 광둥성 선전과 홍콩을 잇는 고속철이 2017년 개통, 광저우 · 선전 · 홍콩 · 마카오를 단일 경제권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청사진이 가시화
  - ☞ 광저우 남역에서 홍콩 서주룽역까지 45분만에 주파하고 베이징 ~ 광저우 노선과 연결돼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홍콩까지 고속철 생활권으로 묶이게 됨



## 2 중국과 홍콩, 한국과의 관계

### □ 중국과 홍콩과의 관계

#### ○ 체제

- 1997년 홍콩의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전
- 일국양제(一國兩制)에 기초한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특별행정구
- 중국의 사회주의 정치 체제안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공존, 반환 이후 50년간 홍콩에게 자치권을 부여

#### ○ 현황

- 중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홍콩, 미국, 일본, 한국, 독일 등이며 홍콩은 2014년 상반기 기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국가임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미 국	396,063	410,017	388,617
홍 콩	360,947	332,537	292,610
일 본	149,452	135,897	129,505
한 국	100,402	101,429	95,747
독 일	72,731	69,204	66,000

#### ○ 중국 - 홍콩 간 자유무역협정(CEPA)

- 2003.06.29. CEPA협정 체결
- 홍콩제조(90%이상)상품에 대한 對중국 수출 무관세 및 48개 서비스 분야 중국 진출 허용
- 중소기업에게 중국진입을 용이하게 함(자본, 사업 내력 등 제한 낮춤)
- 홍콩에 중국진출의 최적의 교두보 역할 부여



□ **홍콩과 한국과의 관계**

- 외교관계수립
  - 1949년 11월 주홍콩 총영사관을 개설
- 양자 협정 체결 현황
  -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96.03)
  -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97.06)
  - 주홍콩특별행정구 대한민국총영사관 유지협정('97.04)
  - 형사사법공조 협정('98.11)
  - 문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04.08)
  - 도망범죄인인도협정('06.06)
  -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협정('10.11)
  - 조세조약 제정협상('13.07)
- 현황

<홍콩의 대한민국 무역>

(단위 : 백만달러)

무역현황	2014	2015	2016
수 출	7,998	6,972	6,928
자체수출	184	146	134
재 수 출	7,814	6,826	6,794
수 입	22,505	22,062	25,157
수입 중 재수출분	20,139	21,418	23,951
총 무역액	30,503	29,034	32,086
무역수지	-14,507	-15,090	-18,229

<한국기업의 대홍콩 진출현황>

(단위 : 개, 건, 백만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신고건수	409	377	570
신규법인 수	125	106	144
투자금액	630	1,927	1,507



## ○ 한국 - 홍콩 교역 관계

- 홍콩은 한국과 중국 양국간의 무역 중계지 역할 및 중국진출사업의 본부역할
-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80%가 홍콩에 사무실을 두고 무역, 회계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있음
- 홍콩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약 1,500개사이며, 주로 제3국, 특히 중국 관련 중개무역을 하는 교역업에 종사
- 홍콩 한인상공회에 등록된 한국 기업은 약 200개임
-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후 홍콩은 한국이 무역흑자를 내는 주요 상대국이 되었으며, 2014년 홍콩과 한국의 무역 총액은 305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해 주요 교역국의 입지를 지킴
- 2016년 홍콩과 한국의 무역 총액은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한 32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7년 1월~5월 사이 무역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9.1% 증가한 150억 달러를 기록

## ○ 교민

- 총 교민 수 약 12,000명

## ○ 한국과의 주요 이슈

- 한국은 1949년 11월 주 홍콩 총영사관을 개설한 이래 홍콩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음.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시장이자 4대 교역시장인 점에서 한국의 중요한 협력자임
- 많은 한국 기업들이 홍콩의 물류, 금융 등 세계적인 수준의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중국 진출을 도모
- 2009.2.19.~2.20. 1박2일의 일정으로 홍콩의 행정수반 도널드 쩡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과의 우호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
- 2014년 11월 홍콩의 행정수반 령춘잉은 도널드 쩡 전 행정수반의 2009년 방한 이후 5년 만에 공식적으로 한국을 방문

- 령 행정수반은 홍콩은 한국의 혁신, 기술 등 여러 성과를 배우기를 희망하며, 한국기업이 홍콩에 더 많이 진출해 중국 진출 거점으로 삼는 등 홍콩이 제공하는 기회와 인센티브를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최근 한·홍콩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후강통'(중국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의 교차거래 허용제도)시행에 따른 금융,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모색
- 삼성전자, LG전자의 선전과 한국드라마와 영화의 인기로 인해 홍콩내 한국문화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 홍콩에서 열리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생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어 교육학습에 대한 열의가 높아져 홍콩 대학에서 한국어과를 신설하는 등 한국어교육 관련 인프라 확산추세
- 홍콩은 경제적, 문화적 부분에서 지역적인 접점으로 '2016 MAMA'를 즐기고자 하는 아시아인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판단돼 5년 연속 MAMA의 개최지가 됐음

### 3 - 홍콩의 정치 현황



- 정치 체계
  - 홍콩은 중국의 홍콩특별행정구로서 중국과는 독립된 조직을 가지고 있음. 기본법에 따르면, 홍콩은 중국 영토의 일부로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며, 1997년부터 50년간 지속하도록 되어 있음
  - 정치제도의 기본구조는 행정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회의와 주요정 부기구, 입법기능을 가진 입법회, 그리고 각급 법원으로 구성된 사법 기구로 이뤄짐



- 3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행정부의 대표는 행정수반으로 임기는 5년이며 1차 연임이 가능함. 1,200명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됨
  - 입법부의 의원은 70명으로 임기 4년이며, 사법부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중심법원)의 3심제로 운영되며 기타 소년법원, 노동법원 등의 특수법원이 있음
- 한 나라 두 체제 중국과 홍콩
- (직선제 도입 요구, 우산혁명으로 돌아오른 반중 정서) 최근 홍콩 시민이 2017년 실시되는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개입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홍콩 민주화 시위가 발생
  - 중국 정부가 2017년부터 실시되는 홍콩 행정장관의 선거방식을 시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하되, 입후보자는 친중국 사람들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원회 1,200명 중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중국정부가 발표하면서 사실상 친중국 인사들만 출마하도록 한 반쪽 직선제라고 비난하면서 철회 요구 시위 시작
  - 처음 Admiralty에서 시작하여 Mong Kok까지 번진 민주화 운동으로 일명 ‘우산시위’로 불림
  - 이에 정부는 홍콩 내 정치 개혁과 관련해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누리는 자치는 절대적 자치가 아니라 고도의 자치라고 언급하며 행정수반 직선제 방안은 중·영 공동선언이 아닌 기본법을 따라야 함을 주장함
  - (홍콩 내 식지 않은 반중 정서) 2017년 3월 있었던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친중파이자 2014년 우산혁명을 강제 진압하는데 앞장섰던 캐리람이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지원 속에 간선 선거인단 1200명의 과반을 웃도는 777표를 얻어 손쉽게 홍콩 행정장관으로 당선됨
  - 홍콩 경제일보는 홍콩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방임’(둥젠화, 1997~2005)과 ‘자치 지지’(도널드 창, 2005~2012)에서 ‘간섭과 간여’(링춘잉, 2012~2017)로 변했다고 분석



- 중국 정부의 강한 행보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중국인이 홍콩에 대거 몰려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취업난이 가중된 점도 반증 정서가 커짐
- 최근 홍콩 중문대 설문조사에서 홍콩인 60%가 주권반환 이후 사회 전반이 나빠졌다고 답했으며 홍콩대 조사에서는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인식을 가진 젊은 층이 3.1%에 그침

# 부록

# VI

1. 홍콩 주요 웹사이트, 참고문헌(웹사이트) / 198

\* 참고문헌(웹사이트) / 201







## 1 홍콩 주요 웹사이트, 참고문헌(웹사이트)



### □ 홍콩 정부 부서 정보

- 홍콩정부 : [www.gov.hk](http://www.gov.hk)(홍콩 전반 총괄)
- 사법부 : [www.judiciary.gov.hk](http://www.judiciary.gov.hk)
- 재정부 : [www.fso.gov.hk](http://www.fso.gov.hk)
- 정무부 : [www.cso.gov.hk](http://www.cso.gov.hk)(행정총괄)
- 관세청 : [www.customs.gov.hk](http://www.customs.gov.hk)
- 국세청 : [www.ird.gov.hk](http://www.ird.gov.hk)
- 교육부 : [www.edb.gov.hk](http://www.edb.gov.hk)
- 환경국 : [www.enb.gov.hk](http://www.enb.gov.hk)
- 민정사무국 : [www.hab.gov.hk](http://www.hab.gov.hk)
- 노동복지부 : [www.lwb.gov.hk](http://www.lwb.gov.hk)
- 홍콩무역발전국 : [www.hktdc.gov.hk](http://www.hktdc.gov.hk)
- 운수주택국 : [www.thb.gov.hk](http://www.thb.gov.hk)
- 발전국 : [www.devb.gov.hk](http://www.devb.gov.hk)(국가경제발전 총괄)
- 지식재산권서 : [www.ipd.gov.hk](http://www.ipd.gov.hk)
- 홍콩투자청 : [www.investhk.gov.hk](http://www.investhk.gov.hk)
- 창신과기서 : [www.itc.gov.hk](http://www.itc.gov.hk)(첨단산업 총괄)
- 감사국 : [www.aud.gov.hk](http://www.aud.gov.hk)(무역총괄)
- 금융관리국 : [www.hkma.gov.hk](http://www.hkma.gov.hk)
- 통계국 : [www.censtatd.gov.hk](http://www.censtatd.gov.hk)
- 이민국 : [www.immd.gov.hk](http://www.immd.gov.hk)
- 해사처 : [www.mardep.gov.hk](http://www.mardep.gov.hk)(물류 총괄)
- 노동처 : [www.labour.gov.hk](http://www.labour.gov.hk)
- 기업주책서 : [www.cr.gov.hk](http://www.cr.gov.hk)(기업등록총괄)



- 토지주책서 : [www.landreg.gov.hk](http://www.landreg.gov.hk)(토지등록총괄)
- 경찰서 : [www.police.gov.hk](http://www.police.gov.hk)

#### □ 홍콩 협회 정보

- 공업 : [www.industryhk.org](http://www.industryhk.org)
- 상업 : <http://www.chamber.org.hk/en/index.aspx>
- 전자 : [www.hkeia.org](http://www.hkeia.org)
- 제조 : [www.cma.org.hk](http://www.cma.org.hk)
- 수출 : <http://www.exporters.org.hk>
- 상업 : <http://www.cgcc.org.hk/en/index.aspx>
- 광학 : <http://www.hkoa.org.hk/hkoa/en/index.htm>
- 환경 : <http://www.bec.org.hk/eng/index.aspx>
- 무역 : <http://www.tid.gov.hk>
- 예술 : <http://www.illustrator.org.hk/>
- 약품 : [www.hkjicim.org](http://www.hkjicim.org)
- 건축 : <http://www.cbminfo.com>
- 완구 : <http://www.toyshk.org/>
- 패션 : <http://www.hkapparel.com.hk/eng/main.htm>
- 영화 : [www.hkfca.org](http://www.hkfca.org)
- 전시 : [www.exhibitions.org.hk](http://www.exhibitions.org.hk)
- 인쇄 : [www.hkprinters.org](http://www.hkprinters.org)
- 주홍콩한국총영사관 : [hkg.mofa.go.kr](http://hkg.mofa.go.kr)

#### □ 한인소식

- 홍콩한인회 : [www.kra.hk](http://www.kra.hk)
- 홍콩한인상공회 : [www.kocham.hk](http://www.kocham.hk)



해외세정전문가 양성교육 연구보고서 (홍콩)

---

- 수요저널 : [www.wednesdayjournal.net](http://www.wednesdayjournal.net)
- 홍콩뉴스(니하오홍콩) : <http://weeklyhk.cafe24.com>

#### □ 기타

- 홍콩날씨 : [www.hko.gov.hk](http://www.hko.gov.hk)
- 홍콩지하철 : [www.mtr.com.hk](http://www.mtr.com.hk)



## \* 참고문헌 (웹사이트)

1. 홍콩 국세청([www.ird.gov.hk](http://www.ird.gov.hk))
2. 통합무역정보서비스([www.tradenavi.or.kr](http://www.tradenavi.or.kr))
3.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조세 교육사업(홍콩), 기획재정부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2015.3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http://www.kotra.or.kr))
5. 외교부([www.mofa.go.kr](http://www.mofa.go.kr))
6. 홍콩무역발전국([www.hktdc.gov.hk](http://www.hktdc.gov.hk))
7. 홍콩무역산업국([www.hid.gov.hk](http://www.hid.gov.hk))
8. 한국조세재정연구원([www.kipf.re.kr](http://www.kipf.re.kr))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www.kiep.go.kr](http://www.kiep.go.kr))
10. 아토즈 홍콩 컨설팅([www.atozhk.com](http://www.atozhk.com))
11. 유니월드서비스([www.uwstar.com](http://www.uwstar.com))
12. 스마트원([http : //hksmtone.com](http://hksmtone.com))
13. 홍콩한인상공회 : [www.kocham.hk](http://www.kocham.hk)
14. Court Pearl Sino Business Consultant.LTD
15. 나이스컨설팅([www.niceconsulting.co.kr](http://www.niceconsulting.co.kr))
16. 비즈앤홍콩([www.biznhongkong.com](http://www.biznhongkong.com))
17. 애니홍콩 컨설팅([www.ANYHKG.com](http://www.ANYHKG.com))



## 해외세정전문가 양성교육 연구보고서 (홍콩)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 : 044 - 204 - 2814

팩스 : 044 - 216 - 6066

원고 작성 및 편집

국세조사관 이보라

국세조사관 이민호

국세조사관 손국환

---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4-2814)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